제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 성과와 시사점

박지민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제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 성과와 시사점

제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 성과와 시사점

총 괄 | 김경호 예산분석실장

기획·조정 | 전용수 사업평가심의관
이은경 공공기관평가과장

작 성 | 박지민 공공기관평가과 예산분석관

지 원 | 강숙자 공공기관평가과 행정실무관
장강희 공공기관평가과 자료분석연구원

본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문 의 : **예산분석실 공공기관평가과** | 02) 6788-3782 | peb5@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보고서는 재생지를 사용하였습니다.

제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 성과와 시사점

2026. 4.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이 보고서는「국회법」제22조의2 및「국회예산정책처법」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2026. 04. 21.)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차 례

CONTENTS

요 약 / 1

Ⅰ. 개 요 / 1

1. 분석의 배경 및 목적 ····· 1
2. 분석의 구성 및 방법 ····· 2

Ⅱ. 사업 개요 및 추진체계 / 5

1. 사업 개요 ····· 5
가. 사업 목적 ····· 5
나. 사업 내용 ····· 6
2. 사업 추진체계 ····· 9
가.「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추진체계 ····· 9
나.「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추진체계 ····· 11

Ⅲ. 공공기관 지방이전 현황 분석 / 13

1. 기관 이전 현황 분석 ····· 13
가. 이전공공기관 지역별 분포 현황 ····· 13
나. 계획 대비 사업 이행 현황 분석 ····· 21
(1) 이전 지연 및 계획 변경 횟수 현황 ····· 21
(2) 이전 비용 변동 현황 및 사업지연 요인 분석 ····· 24
다. 공공기관 청사 신축·매각·임차 현황 ····· 31
(1) 이전 지역 청사 신축·임차 현황 ····· 31
(2) 종전부동산 보유·임차·매각 현황 ····· 36
라. 소결 ····· 42

CONTENTS

2. 이전 지역 주요 변화 분석 ····· 44
가. 공공기관 이전 지역 주요 추이 분석 ····· 44
(1)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이행 현황 ····· 44
(2) 이전지역 인구 및 지역내총생산 현황 ····· 50
나. 이전공공기관 이주 현황 등 ····· 53
(1) 이주지역 본사 현원 현황 ····· 53
(2) 수도권행 셔틀버스 운영 현황 ····· 58
(3) 지방 이전 전후 직원 퇴사 현황 ····· 63
다. 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 이행 현황 ····· 67
(1) 「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상 지역산업 육성 이행 현황 ····· 67
(2) 「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상 지역인재채용 및 육성 현황 ····· 70
(3) 「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 상 지역주민 지원 사업 이행 현황 ····· 77
(4) 「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 상 유관기관 협력 사업 이행 현황 ····· 80
(5) 「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 상 지역생산물품 우선구매 사업 이행 현황 ····· 83
라. 이전공공기관 지방세 납부 현황 ····· 87
(1) 지방세 납부 현황 ····· 87
(2) 공공기관 통폐합 시 이전지역 지방세수 영향 ····· 90
마. 소결 ····· 92
3.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후 관리 현황 ····· 97
가. 이전공공기관 수도권 잔류 현황 ····· 97
나.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후 관리 현황 ····· 106
(1) 지방 이전 이후 지정된 공공기관 현황 ····· 106
(2) 이전공공기관 사후 관리 방안 법령 명시 필요 ····· 111
다. 소결 ····· 113

CONTENTS

Ⅳ. 결론 및 시사점 / 115

1. 이전 지역·이전공공기관 현황 및 시사점 ····· 115
   가. 공공기관 이전 지역 주요 현황 추이 분석 ····· 115
   나. 이전공공기관 주요 현황 분석 ····· 117
      (1) 공공기관 이전 목표 이행률 ····· 117
      (2) 이전공공기관 이주 현황 분석 ····· 118
      (3) 「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상 사업 관리 필요 ····· 119
      (4) 이전공공기관 지방세 납부 현황 ····· 122
2. 향후 개선과제 ····· 123
   가. 이전 단계 고려 사항 ····· 123
      (1) 종전부동산 매각 관련 고려 사항 ····· 123
      (2) 임대차 계약 정리 문제 ····· 125
      (3) 공사 설립법에 본사를 수도권으로 명기한 공공기관 법령 개정 문제 ····· 126
   나. 사후 관리 단계 고려 사항 ····· 128
      (1)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준수 및 사후관리 법령 개선 필요 ····· 128
      (2) 신규지정기관 지방이전 대상기관 편입 검토 ····· 128
      (3) 재직자 퇴사 및 신규채용에 따른 지방인재 비중 확대 ····· 129

요 약

Ⅰ. 개요

1. 분석의 배경 및 목적

❑ 2019년 완료된 공공기관 제1차 지방이전 사업의 당초 계획 대비 추진실적과 이에 따른 사업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최근 국정과제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균형성장 거점 육성'(51번)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에 참고할만한 정책 방안 제시

○ 정부·이전공공기관 등 사업주체의 당초 계획 이행여부를 점검
-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상 지원과제 이행실적을 점검(전입인구, 만족도 등)
-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상 기관이전 및 직원이주 실적을 점검

○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인한 사업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점검
- (지역) 인구, GRDP, 지방세 등 구체적인 사업효과를 조사 · 분석하여 향후 이전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공공기관) 퇴직 증가, 셔틀버스 예산 등 행정비효율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 제시

○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후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과제를 제시
- 이전공공기관 수도권 잔류 현황을 파악하고, 사후 관리 실태를 점검
- 공공기관 이전 이후 사후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공공기관 신규 지정 등에 따른 변동사항을 점검
- 사후관리 법령체계 점검 및 개선 방안 마련

2. 분석의 구성 및 방법

[제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 현황과 개선과제 구성과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분석 내용
Ⅰ. 개요		• 분석의 배경 및 목적 • 분석의 구성 및 방법
Ⅱ. 사업 개요 및 현황		• 사업 목적 및 내용 • 사업 추진 체계
Ⅲ. 공공기관 지방이전 현황 분석	기관 이전 현황 분석	• 이전공공기관 지역별 분포 현황 • 계획 대비 사업 이행 현황 분석 • 공공기관 청사 신축 매각 임차 현황
	이전 지역 주요 변화 분석	• 이전 지역 주요 지표 추이 분석 • 이전공공기관 이주 현황 등 • 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 이행 현황 • 이전공공기관 지방세 납부 현황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후 관리 현황	• 이전공공기관 수도권 잔류 현황 •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후 관리 현황
Ⅳ. 결론 및 시사점	결론 및 시사점	• 공공기관 이전 지역 주요 현황 분석 • 이전공공기관 주요 현황 분석
	향후 개선과제	• 이전 단계 고려 사항 • 사후 관리 단계 고려 사항

Ⅱ. 사업 개요 및 추진체계

1. 사업 개요

❑ 공공기관 제1차 지방이전사업은 수도권 집중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자립형 혁신도시 건설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음

○ 이전대상 공공기관 수는 105개이며, 10개 혁신도시·세종특별자치시·개별이전 지역 등 12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함

2. 사업 추진 체계

가.「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추진체계

❑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성과를 토대로 혁신도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5년 단위로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 시·도지사는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안)을 수립하여 시·군·구청장 및 공공기관 의견을 청취하고 시·도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며, 이를 바탕으로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안)을 토대로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안)을 마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확정

나.「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 추진체계

❑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전공공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지역산업 육성) 연관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전략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 등 지역산업 활성화에 대한 사업

○ (지역인재채용·지역인재육성) 지역인재 채용, 지역대학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장학 사업, 직무체험 및 견학프로그램 운영 등 인재 양성에 대한 사업

○ (지역주민 지원) 지역주민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체육시설 등 생활 SOC 건립, 기관 시설 개방 등에 대한 사업

○ (유관기관 협력) 지방자치단체-기업-대학과의 공동 연구 및 협의회 운영 등 지역발전을 위한 기관 간 협력에 대한 사업

○ (지역생산물품) 이전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Ⅲ. 공공기관 지방이전 현황 분석

1. 기관 이전 현황 분석

가. 이전공공기관 지역별 분포 현황

❑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2010년부터 시작되어 2019년 12월에 105개 공공기관의 이전이 모두 완료

○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77개, 세종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19개, 그 외 개별 이전한 공공기관이 9개[1)]

○ 지역별 공공기관 이전 현황을 살펴보면, 부산 11개, 대구 8개, 광주·전남 13개, 울산 7개, 강원 9개, 충북 8개, 전북 5개, 경북 5개, 경남 10개, 제주 1개, 세종 19개, 개별 이전 9개

- 분야별로 살펴보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예탁결제원 등 해양수산 및 금융산업 분야 공공기관은 부산으로 이전하였고, 한국전력공사 등 전력산업 공공기관은 광주·전남 지역으로 이전함. 한국석유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에너지 및 산업안전 분야 공공기관은 울산으로 이전하였으며, 한국관광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광 및 건강 관련 공공기관은 강원으로, 다수 국책연구기관 등은 세종시로 이전함

[지방 이전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지역	지역별 기관 수
혁신도시 (77)	부산 11개, 대구 8개, 광주·전남 13개, 울산 7개, 강원 9개, 충북 8개, 전북 5개, 경북 5개, 경남 10개, 제주 1개
세종 (19)	19개 기관
개별 (9)	개별 이전 9개 기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 기타공공기관인 재외동포재단은 기관 해산으로 제외함

나. 계획 대비 사업 이행 현황 분석

❑ 제1차 이전공공기관 총 이전비용은 9조 1,549억원이며, 청사 건축비용은 7조 4,762억원(81.7%)이고, 기관이전비용은 7,758억원(8.4%)이며, 임대보증금 등 기타 내역은 9,030억원(9.9%)임

○ 재원별로는 국비가 7,533억원(8.2%)이고, 국비를 제외한 기관 자체 재원이 8조 4,017억원(91.8%)[2)]

○ 기관당 평균 이전비용는 874억원이고, 청사신축비에 713억원, 기관이전비에 75억원, 임대보증금 등 기타 지원에 86억원이 소요

○ 지역별로 보면 13개 기관이 이전하는 광주·전남에서 1조 4,404억원이 소요되며, 이어서 강원 1조 842억원, 개별이전지역 1조 131억원의 순임

[공공기관 지방 이전비용 내역(2025년 기준)]

(단위: 억원, %)

구분	기관수	이전비용 (A)	이전비용 내역(A=B+C+D)			이전 재원 조성 방식 (A=E+F)	
			청사신축비 (B)	기관이전비 (C)	기타(D)	자체 재원 (E)	국비 (F)
합계	105	91,549.7 (100.0)	74,761.7 (81.7)	7,757.8 (8.4)	9,030.2 (9.9)	84,017.3 (91.8)	7,532.4 (8.2)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임
자료: 각 기관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105개 기관의 이전계획이 평균 2.6회 변경되는 과정에서 평균 28.6개월의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총 6,456억원 이전비용(기관당 평균 61.5억원)이 증가됨

○ 이전계획이 변경되는 주요 사유는 이전비용 증액 혹은 감액, 재원조달액수(종전부동산 매각, 자체재원 활용, 차입금 등)의 증가 혹은 감소, 이전 부지면적의 증가 혹은 감소 등으로 구분

- 강원혁신도시의 경우, 기관당 이전계획이 평균 3.8회 변경되고 사업기간은 27.6개월 연장되었으며, 이전비용은 381.7억원 증가

2) 차입금 등 포함

- 경북혁신도시의 경우, 기관당 이전계획이 평균 5.6회 변경되고 사업기간은 52.4개월 연장되었으며, 이전비용은 216.8억원 증가
- 최초 이전계획 대비 최종 이전계획상 이전비용 증감액이 높은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1,487억원 증가), 주택도시보증공사(545억원 증가), 국민건강보험공단(535억원 증가), 한국주택금융공사(395억원 증가), 한국자산관리공사(320억원 증가), 한국전력기술(주)(300억원 증가), 한국중부발전(주) (235억원 증가), 영화진흥위원회(249억원 증가), 한국산업기술시험원(160억원 증가), 국립공원공단(155억원 증가) 등임

[공공기관 이전계획, 이전비용, 사업지연 추이]

(단위: 개, 회, 개월, 억원)

구분	이전 기관수 (A)	평균		이전 비용 증감			
		계획변경횟수 (B)	사업기간연장 (C)	당초(D)	변경(E)	증감 (F=E-D)	평균 (F/A)
합계	105	2.6	28.6	85,339.5	91,795.7	6,456.2	61.5

자료: 각 기관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과정에서 종전부동산 매각 지연, 국비 지원 지연 등으로 신규 청사 건립비 및 이주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이전비용을 차입한 기관은 16개 기관

- 해당 기관 대부분 전체 기관 평균 사업연장 기간 28.6개월보다 사업이 지연됨
- 해당 기관의 총 이전비용은 1조 6,034억원이며 이 중 차입금 규모는 4,735억원(29.5%)이며, 지출한 이자 규모는 343억원(2.1%)임
- 지출이자비용 대부분은 한국교육개발원 151억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68억원, 한국인터넷진흥원 27.3억원, 한국에너지공단 23억원 등에서 발생

다. 공공기관 청사 신축·매각·임차 현황

❑ 총 105개 기관 중 이전한 지역에 청사를 신축한 기관은 총 91개이며 청사를 임차한 기관은 총 14개

○ 청사를 신축한 기관의 청사신축비 전체 평균은 822억원

○ 지역별로 청사 신축비 평균은 광주·전남 1조 958억원, 경북 1,492억원, 전북 1,370억원, 강원 1,086억원, 울산 1,026억원 순임

[이전공공기관 청사 신축·임대 현황]

(단위: 억원, 개)

구분	청사신축기관			청사임대기관	전체 기관수 (E=C+D)
	청사신축비 평균 (A=B/C)	청사신축비(B)	기관수(C)	기관수(D)	
합계	822	74,762	91	14	105

자료: 각 기관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청사규모 산정기준을 초과하거나 기존보다 업무면적이 줄어든 이전공공기관

○ 청사규모 산정기준으로 '업무시설은 1인당 연면적 56.53㎡ 범위내로 산정하되, 다만 자체재원 조달이 확실한 경우 등 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개발계획상 면적으로 산정 가능

- 해당 1인당 연면적 지침을 초과한 기관은 지침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청사면적 증설 및 청사 이용인원 감축이 발생해 지침에 명시된 연면적이 초과될 시, 이전공공기관 관리카드에 해당 부분을 명시하도록 해야 함

○ 정부는 국토교통부 훈령인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지침」을 통하여 '지방이전 후 근무환경이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현재의 수준보다 악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합리적 수준에서 사옥 또는 청사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

- 이전청사 1인당 업무시설 연면적 규모가 10~20m^2 수준인 기관들(주택관리공단(주), 한국부동산원, 한국예탁결제원, 국립공원공단,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은 기존 1인당 업무시설 연면적 수준 정도로 규모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공공기관 지방 이전한 총 105개 이전공공기관 중 기존 종전부동산을 보유한 기관은 총 67개이며, 종전부동산 매각액 및 평가액은 총 16조 8,281억원임

[이전 대상 공공기관 종전부동산 유형]

(단위: 개, 억원)

이전 지역	기관수	본사 소유 기관		본사 임차 기관	
		기관수	종전부동산 매각액(평가액)	기관수	기존 임차료
합계	105	67	168,281	38	898.2

자료: 각 기관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한국교육개발원과 같이 차입금으로 종전부동산 미매각대금[3]을 충당하고 있는 기관의 경우, 매각 지연이 장기화되어 차입금에 대한 이자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이 일부 자체보유자금으로 이전 비용을 충당한 기관은 고유사업에 투자할 재원이 감소하게 되어, 서비스 제공이 미진해질 우려가 있음

○ 3대 연기금 자산으로 편입된 본사 사옥의 임대 수익률은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기금 전체 수익률보다 수익률이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이전 지역 주요 변화 분석

가. 공공기관 이전 지역 주요 추이 분석

❑ 2025년 12월 기준 전체 109개 기관[4]이 혁신도시 및 지역도시로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총 47,908명의 인원이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해당 지역으로 전입한 인구는 234,684명 증가하였음

○ 종합 정주환경만족도는 69.4점으로 목표치인 70점을 소폭 미달

○ 공동주택은 총 87,313호를 건설하여 당초 계획 92,599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음

○ 클러스터 부지는 2024년 기준 계획 대비 81.8%, 입주율은 분양 대비 56.6%로 여전히 정체

3) 미매각금액은 2025년 기준

4) 정부 소관기관 포함

[1차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목표와 성과]

구분		목표치	2018.6	2022	2025.12
입주기업수		1,000개사	693개사	2,963개사	(2024) 4,813개사
고용		20,000명	11,304명	21,441명	-
지역인재 채용률		30%	23.4%	38.3%	-
가족동반이주율(미혼독신포함)		75%	62%	67.7%	71%
정주환경만족도		70점	52점	69점	69.4점
이전공공기관수		110개	110개	110개	109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수		42,220명	38,384명	46,185명	47,908명
주민등록인구		267,869명	182,882명	232,976명	234,684명
산학연 클러스터	계획 대비 분양률	-	62.6%	74.7%	(2024) 81.8%
	분양 대비 입주율	-	32.4%	50.2%	(2024) 56.6%
공동주택 공급		92,599호	74,388호	84,328호	87,313호

주: 목표치는 2022년에 발간한 「제2차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2023~2027)」 내 제시된 목표치이며,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홈페이지 내 2025년 12월 목표치임
자료: 국토교통부, 「제2차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2023~2027)」 및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홈페이지

❑ 공공기관이 이전한 혁신도시 지역 시군구 중 인구가 증가한 5개 지방자치단체(전남 나주, 강원 원주, 충북 진천, 제주 서귀포, 세종특별시)를 제외하고 9개 지방자치단체(시군구 포함)에서 인구는 감소 추세를 보임

○ 2015년 대비 2024년 전국 인구수는 1.44% 증가함

○ 인구가 감소한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 중 70여개 기관이 이주한 2015년 대비 2024년 인구도 감소하였으며, 혁신도시 이주를 완료한 2019년 대비 인구도 감소함

- 부산 영도구(2015년 대비 △17.5%, 2019년 대비 △9.4%), 부산 남구(2015년 대비 △8.3%, 2019년 대비 △6.7%), 부산 해운대구(2015년 대비 △10.5%, 2019년 대비 △6.8%), 대구 동구(2015년 대비 △1%, 2019년 대비 △0.4%), 울산 중구(2015년 대비 △14%, 2019년 대비 △7.1%), 전북 전주시(2015년 대비 △1.3%, 2019년 대비 △1.9%), 전북 완주군(2015년 대비 △

10.8%, 2019년 대비 △4.0%), 경북 김천시(2015년 대비 △1.0%, 2019년 대비 △2.7%), 경남 진주시(2015년 대비 △1.0%, 2019년 대비 △2.3%)

[공공기관 이전지역 시군구별 인구 및 인구증가율]

(단위: 만명, %)

구분	시군구	2015 (A)	2016	2017	2018	2019 (B)	2020	2021	2022	2023	2024 (C)	증가율	
												C/A	C/B
전국	-	5,107	5,127	5,142	5,163	5,178	5,183	5,174	5,169	5,177	5,181	1.44	0.05
부산	영도구	13.0	12.7	12.4	12.1	11.8	11.3	11.3	11.0	10.9	10.7	△17.5	△9.4
부산	남구	28.4	28.0	27.6	28.3	27.9	26.9	26.5	25.8	25.8	26.0	△8.3	△6.7
부산	해운대구	40.9	40.8	39.9	39.6	39.3	39.0	38.6	37.7	37.1	36.6	△10.5	△6.8
대구	동구	34.0	34.2	34.0	34.2	33.7	33.3	33.3	33.3	33.6	33.6	△1.0	△0.4
울산	중구	23.7	23.7	23.3	22.7	21.9	21.4	21.0	20.5	20.4	20.4	△14.0	△7.1
전북	전주시	65.8	65.8	65.7	65.9	66.2	66.7	67.0	66.6	65.8	65.0	△1.3	△1.9
전북	완주군	36.7	36.5	36.2	34.8	34.1	34.3	34.2	33.9	33.3	32.7	△10.8	△4.0
경북	김천시	13.8	14.0	14.1	14.0	14.0	13.9	13.8	13.8	13.7	13.6	△1.0	△2.7
경남	진주시	35.0	35.3	35.3	35.2	35.4	35.2	35.3	35.1	34.8	34.6	△1.0	△2.3

자료: 국가데이터처 KOSIS 통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공공기관이 이전한 혁신도시 지역 시군구별 지역내총생산(GRDP)은 2015~2022년까지 대부분 증가추세를 보이지만, 전국 단위 GRDP 증가율[5](2015년 대비 2022년 33.5%, 2020년 대비 2022년 12.9%)과 비교하였을 때 일부 지자체의 경우 증가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

○ 2015년 대비 2022년 GRDP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지자체는 원주시(30.4%), 전주시(28.8%), 완주군(19.5%)이며, 2020년 대비 2022년 GRDP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지자체는 대구 동구(2.1%), 나주시(12.1%), 원주시(12.3%), 진천군(8%), 전주시(4.8%), 완주군(12.6%), 진주시(10.8%), 제주 서귀포시(11.4%)임

5) 명목지표임

[공공기관 이전지역 시군구별 GRDP 및 증가율]

(단위: 조원, %)

구분	시군구	2015 (A)	2016	2017	2018	2019	2020 (B)	2021	2022 (C)	증가율	
										C/A	C/B
전국	-	1,743	1,835	1,936	2,008	2,043	2,062	2,224	2,328	33.5	12.9
대구	동구	-	-	-	-	-	8.18	8.32	8.36	-	2.1
강원	원주시	8.64	9.12	9.76	10.40	10.57	10.03	10.57	11.26	30.4	12.3
전북	전주시	13.37	14.06	14.93	15.69	16.27	16.43	16.78	17.21	28.8	4.8
전북	완주군	5.00	4.98	5.23	5.20	5.21	5.31	5.71	5.97	19.5	12.6
경남	진주시	-	-	-	-	-	8.34	8.70	9.24	-	10.8
제주	서귀포	-	-	-	-	-	5.60	5.99	6.24	-	11.4

주: 전국 및 세종 데이터는 GRDP(시도) 데이터 내 지역내총생산(시장가격) 명목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그 외 지자체는 GRDP(시군구) 데이터를 활용하였음

자료: 국가데이터처 KOSIS 통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나. 이전공공기관 이주 현황 등

❑ 이전공공기관[6] 기관별 제출 자료에 따르면 전체 계획 인원 41,271명 중 본사에 근무하는 현원은 48,934명(118.6%)임

○ 미혼독신을 포함한 가족동반이주의 경우 이전 인원 기준 전체 71%, 부산 86%, 제주 83.2%, 전북 77.6%, 광주·전남 76.1%, 대구 75.7%, 울산 73.3%, 강원 71.8%, 경남 70.2%, 충북 50.5%, 경북 51.3%임[7]

○ 대부분 현원이 증가하였지만, 현재 본사에 근무하고 있는 현원이 감소한 기관은 다음과 같음

- 감소폭이 가장 큰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한국광물자원공사(550명)과 한국광해관리공단(186명) 합산 이전 계획인원 736명 중 현재 해외 광물자원 개발 등으로 인한 경영 악화로 조직 규모가 축소되어 그 결과 본사 현원이 530명으로 정주 계획인원을 미달

6)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7) 소관 기관 포함한 수치임

- 한국전력기술(주)의 경우 계획인원 2,879명 중 현재 본사에 재직중인 임직원이 2,172명, 기간제근로자 등 229명, 자회사 179명, 총 2,580명으로 299명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계획 대비 인원은 89.6%임
- 한국직업능력연구원(121명 미달), 한국식품연구원(61명 미달), 정보통신정책연구원(33명 미달)은 본사 비정규직 계약 기간 만료 이후 미채용으로 현원이 감소되었다고 언급

[본사 직원 현황(2025년 기준)]

(단위: 개, 명, %)

구분	기관수	계획인원(A)	본사 현원(B)	계획 대비 본사 현원 비율(B/A)
합계	104	41,271	48,934	118.6

자료: 각 기관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한편, 전체 105개 기관 중 기관장이 미이주한 기관은 53개 기관임

○ 이 중 현재 기관장이 공석인 7개 기관을 제외하고 46개 기관의 기관장이 이주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

○ 단신 부임해 관사에 거주하는 경우는 가족 구성원 직장 등 가족 생활권 유지를 위해 단독 부임한 것으로 조사

❑ 전체 105개 기관 중 강원 8개, 충북 8개, 경북 3개, 대구 5개, 경남 9개, 울산 4개, 부산 2개, 전북 4개, 광주·전남 12개, 세종 2개, 개별 4개 총 60개 기관이 수도권행 통근버스를 운영[8)]

○ 전체 지방 이전공공기관 중 수도권행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60개 공공기관의 셔틀버스 예산액 총액은 2010~2025년 누적액이 1,989.9억원

- 경남 356.4억원, 광주·전남 344.6억원, 강원 286.6억원 순으로 예산 투입액이 많음
- 지역별로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기관 대비 예산액이 높은 지역은 세종(기관당 97.4억원), 경북(기관당 88.6억원), 경남(기관당 39.6억원), 강원(기관당 35.8억원) 순임

8) 2026년 상반기 중 수도권행 셔틀버스 운영 중단 예정

○ 수도권행 셔틀버스를 운영했던 이전공공기관 중 수지차 보전기관의 경우 셔틀버스 편성에 따른 추가 지출예산 편성은 국가가 이들 기관의 수도권행 셔틀 운행을 지원한 것임

○ 비수도권 공공기관[9] 중 한국가스기술공사(11.42억원)는 지방이전기관이 아님에도 2011년부터 수도권으로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있음

[수도권행 셔틀버스 예산(2010~2025)]

(단위: 개, 억원, %)

구분	기관수			수도권 셔틀버스 예산액(C)	수도권 셔틀버스 평균 예산액(C/B)
	전체(A)	셔틀 有(B)	비율(B/A)		
합계	104	60	56.7	1,989.9	33.7

자료: 각 기관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총 97개 기관[10]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2025년까지 정원 및 퇴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기관 정원 평균은 기관 이전 전 1,428명에서 기관 이전 후 1,917명으로 증가하였으며, 평균 퇴사자수는 38명에서 60명으로 증가함

○ 퇴사율은 기관 이전 전 2.66%에서 기관 이전 후 3.11%로 증가하여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자발적 퇴사자 비율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시 퇴사자 비율을 관리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기관 이전 전후로 퇴사율이 증가한 지역은 대구(1.98% → 2.34%), 울산(3.44% → 3.81%), 강원(3.68% → 5.38%), 경남(2.61% → 3.6%), 제주(2.87% → 6.08%), 개별(1.46% → 1.87%)

○ 주요 기관별 퇴사 주요 사유는 기관 지방 이전,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 문제, 경력개발·이직, 무기계약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이직 증가,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명예퇴직자 증가, 고령층 명예퇴직, 광산 폐쇄로 인한 조직 규모 축소, 저연차 직원 이직 증 등의 사유로, 주로 이직을 위해 다양한 직군·연령에서 복합적인 이유로 퇴사자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됨

9) 이전공공기관이 아닌 원래 본사가 해당 지역에 위치한 기관을 명칭함

10) 이전 전 데이터는 2010년부터 기관 이전 시점까지의 정원 및 퇴사자 현황이며, 이전 후 데이터는 기관 이전 시점 이후 데이터이다.

[이전공공기관 정원 및 퇴사자 현황]

(단위: 개, 명, %)

구분	기관수	이전 전			이전 후		
		정원 평균 (A)	퇴사자 평균 (B)	퇴사율 (B/A)	정원 평균 (C)	퇴사자 평균 (D)	퇴사율 (D/C)
합계	97	1,428	38	2.66	1,917	60	3.11

주: 전체 퇴사자 중 정년퇴직자는 제외하였음
자료: 각 기관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 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 이행 현황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전공공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이전공공기관은 지역발전 계획과 추진실적 등을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매년 공개함

○ 「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산업육성, 지역인재채용, 지역인재육성, 지역주민지원, 유관기관협력, 지역생산물품 우선 구매 실적을 점검

❑ 지역산업 육성 사업의 사업비 집행률의 경우 2024년 80.7%로 이를 제고하기 위해 역량 있는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역산업 육성 수요 발굴 등이 필요함

○ 지역산업 육성 사업은 이전공공기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 전략산업 육성, 기업유치, 일자리창출 및 중소기업 지원 등 동반성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추진하는 사업임

○ 2023년 광주·전남(74.8%) 울산(70.5%), 강원(87.0%), 충북(94.4%) 경북(98.1%)이 사업비를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하였으며, 2024년엔 광주·전남(22.5%) 울산(88.9%), 강원(10.4%), 경남(89.3%), 부산(56.9%)이 계획 대비 집행률이 저조하며,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전KDN(주) 등 9개 기관은 2년 연속 지역산업 육성 사업비 집행 미달 기관임

○ 주요 사업비 집행 미달사유는 ① 착공 연기 ② 투자시기 조정 ③ 예비타당성 심사 수행 ④ 사업계획 변경·낙찰차액 발생 ⑤ 경영상 이유로 예산 집행 조정 ⑥ 지역업체 참여저조 및 미선정 ⑦ 구매계획 철회 ⑧ 정부 사업비 지출 계획 축소 ⑨ 재설계 및 도시계획확인허가 변경으로 사업지연 ⑩ 관리비 제외로 수치 조정 등임

[이전공공기관 '지역산업 육성' 사업비 집행률 현황]

(단위: 개, 억원, %)

구분	기관수	2023			2024		
		계획 사업비(A)	이행 사업비(B)	집행률 (B/A)	계획 사업비(C)	이행 사업비(D)	집행률 (D/C)
합계	105	10,496.0	13,494.9	128.6	11,472.6	9,257.0	80.7

자료: 국토교통부 각년도 「지역발전 추진실적 및 계획」

❑ 공공기관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지역인재육성 및 채용을 추진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제2항에 의해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채용시험의 실시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 대비 연도별 18~30% 비율 이상이 되도록 채용

❑ 지역인재육성 사업비 집행률의 경우 2024년 98.7%로 일부 지역별·기관별 모집정원 대비 선발인원 미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인재 참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사업은 지역대학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장학사업, 직무체험 및 견학 프로그램 운영 사업 등임

○ 사업비 집행률이 낮은 지역은 2023년 부산(92.3%), 대구(70.6%), 광주·전남(88.3%), 강원(36.5%), 충북(97.5%), 전북(89.4%), 경북(88.7%), 경남(90.7%)이 사업비를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하였으며, 2024년엔 대구(96.2%), 광주·전남(91.2%), 경북(84.7%), 경남(97.4%), 제주(66.9%)이 계획 대비 집행률이 저조하였음. 한국전력공사, 국립공원공단, 한국가스공사, 주택관리공단 등 16개 기관은 2년 연속 지역인재육성 사업비 집행 미달 기관임

○ 주요 사업비 집행 미달 사유는 ① 모집 정원 대비 선발인원 미달 ② 청년인턴 등 중도 퇴사 ③ 계획 변경 ④ 예산 확보 어려움으로 미실시 ⑤ 채용규모 감소에 따른 사업비 감소 등임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육성' 사업비 집행률 현황]

(단위: 개, 억원, %)

구분	기관수	2023			2024		
		계획 사업비(A)	이행 사업비(B)	집행률 (B/A)	계획 사업비(C)	이행 사업비(D)	집행률 (D/C)
합계	105	576.1	686.8	119.2	704.6	695.6	98.7

자료: 국토교통부 각년도 「지역발전 추진실적 및 계획」

❑ 주요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퇴사율은 신규채용 퇴사율에 비해 낮으며, 특정 대학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권역별 주요 공공기관 소재 대학 이전지역인재채용 비중(2018~2024)]

(단위: 개, 명, %)

지역	권역별 주요 공공기관	이전지역인재 채용규모	채용규모 상위대학		
			대학수	규모	비중
부산	한국자산관리공사	178	2	143	80.3
경남	한국토지주택공사	357	2	272	76.2
대구	신용보증기금	239.5	2	170.5	71.2
경북	한국도로공사	357	2	272	76.2
광주 · 전남	한국전력공사	758	2	583	76.9
전북	국민연금공단	326	2	251.5	77.1
충청권	한국가스안전공사	167	4	122	73.1
강원	한국관광공사	53	2	44	83

주: 한국전력공사는 고졸 미포함 채용규모, 고졸 포함시 959명
자료: 각 기관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지역주민지원 사업비 집행률의 경우 2023년 87.4%, 2024년 69.9%로 사업비 집행률을 미달하였으며, 사업이 적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의 협력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지역주민지원 사업은 이전공공기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생활SOC 확충, 공공시설 개방, 봉사활동·물품후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임

○ 2023년 대구(84.8%), 광주·전남(33.2%) 강원(79.0%), 충북(14.4%) 전북(57.1%), 경남(42.6%)이 사업비를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하였으며, 2024년엔 광주·전남(80.7%) 경남(28.4%), 제주(96.0%)가 계획 대비 집행률이 저조하며 국노동연구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6개 기관은 2년 연속 지역주민 지원 사업비 집행 미달 기관임

○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주민지원 사업 주요 사업비 집행 미달 사유는 ① 사업축소·계획 지연 및 변경으로 인한 경비 감소 ② 경영 위기·수익 감소에 따른 예산 감소 ③ 수요 감소 ④ 타 사업으로 대체 등임

[이전공공기관 '지역주민 지원' 사업비 집행률 현황(2023~2024)]

(단위: 개, 억원, %)

구분	기관수	2023			2024		
		계획 사업비(A)	이행 사업비(B)	집행률 (B/A)	계획 사업비(C)	이행 사업비(D)	집행률 (D/C)
합계	105	479	418	87.4	583	408	69.9

자료: 국토교통부 각년도 「지역발전 추진실적 및 계획」

❑ 유관기관 협력 사업의 경우 일부 지역·기관별 사업비 집행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지원자 감소, 수요예측 실패 문제 등 해당 사업 관리 강화 및 참여 활성화가 필요

○ 유관기관 협력 사업은 이전공공기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대학, 기업, 지자체 등과 보유자산을 활용한 공동연구 및 관계기관 협력사업, 기관간 포럼 및 협의체 운영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비 집행이 계획대로 이루어졌지만, 일부 지역 및 공공기관은 목표치를 미달함

○ 2023년 부산(51.4%), 광주·전남(11.2%) 울산(48.4%), 강원(92.0%), 충북(97.7%) 경남(72.6%), 제주(12.3%)가 사업비를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하였으며, 2024년엔 부산(94.8%), 대구(77.0%), 울산(98.8%), 강원(38.3%), 충북(97.2%) 등이 계획 대비 집행률이 저조하며, 국립공원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등 7개 기관은 2년 연속 유관기관 협력 사업비 집행 미달 기관임

○ 일부 기관의 유관기관 협력 사업 주요 사업비 집행 미달 사유는 ① 수요 예측 실패 ② 지원자 감소 ③ 사업 재분류 및 지원대상 축소 ④ 과제 부적정 판정으로 예산 미집행 ⑤ 예산 부족 및 사업 미추진 등임

[이전공공기관 '유관기관 협력' 사업비 집행률 현황]

(단위: 개, 억원, %)

구분	기관수	2023			2024		
		계획 사업비(A)	이행 사업비(B)	집행률 (B/A)	계획 사업비(C)	이행 사업비(D)	집행률 (D/C)
합계	105	515	548	106.5	556	716	128.8

자료: 국토교통부 각년도 「지역발전 추진실적 및 계획」

❑ 지역생산물품 우선구매 사업비 집행률은 2023년 91.9%, 2024년 95.7%로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구매물품의 범위 확대(지역 범위의 확대, 품목 확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지역생산물품 우선구매 사업은 이전공공기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대학, 기업, 지자체 등과 이전공공기관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이전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등 추진하는 사업임

○ 2023년 부산(95.6%), 경북(90.5%), 충북(84.5%), 광주·전남(76.0%)이 사업비를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하였으며, 2024년엔 광주·전남(80.4%) 전북(83.8%), 경남(72.8%), 제주(69.6%)가 계획 대비 집행률이 저조하며 한국전력공사,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등 24개 기관은 2년 연속 지역생산물품 우선구매 사업비 집행 미달 기관임

○ 주요 사업비 집행 미달 사유는 ① 예산 및 수요 감소 ② 지역구매물품 조달의 어려움(기관 특성상 용역 중심 입찰 방식 활용, 경쟁입찰, 한정적인 물품 리스트, 적확한 물품 부재 등) ③ 업무 특수성으로 인해 지역 기술 보유 업체 풀 확보의 어려움 ④ 도전적 목표 설정 ⑤ 지역적 특성(제주도, 충북 오송 등) 상 지역물품 구매의 어려움 등임

[이전공공기관 '지역생산물품 우선구매' 사업비 집행률 현황]

(단위: 개, 억원, %)

구분	기관수	2023			2024		
		계획 사업비(A)	이행 사업비(B)	집행률 (B/A)	계획 사업비(C)	이행 사업비(D)	집행률 (D/C)
합계	105	19,045	17,508	91.9	16,844	16,126	95.7

자료: 국토교통부 각년도 「지역발전 추진실적 및 계획」

라. 이전공공기관 지방세 납부 현황

❑ 공공기관 지방 이전 이후, 이전공공기관이 수도권 지역에 납부하던 지방세 수입이 지방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나타났으며, 이전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 누적 현황(2016~2024)은 총 2조 5,072억원임

○ 경북 지역에 6,664억원이 납부되어 전체 납부세액의 26.6%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광주·전남 6,172억원(24.6%), 경남 3,245억원(12.9%) 순으로 지방세를 납입

- 이는 지방세 납입 규모가 큰 공공기관이 이전한 결과로 경북은 한국수력원자력(주)(2024년 442.6억원), 한국도로공사(2024년 119.7억원), 광주·전남은 한국전력공사(주)(2024년 50.5억원) 및 자회사(한전KPS(주)[2024년 24억원], 한전KDN(주)[2024년 22.7억원] 등) 및 한국농어촌공사(2024년 698억원), 경남은 한국토지주택공사(2024년 109억원) 이전

[이전공공기관 지방세 납부 현황]

(단위: 개, 억원)

구분 (기관수)	2016 (A)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B)	차이 (B-A)	누적합계 (비중)
합계 (104)	2,529	2,626	2,698	2,458	2,682	3,036	3,275	2,914	2,855	326	25,072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광역지자체 13개[11]의 지방세 합계액은 2016년 32.5조원에서 2024년 50조원 규모로 17.5조원 증가한 반면, 이전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 비중은 2016년 0.82%에서 2024년 0.58%로 0.24%p 감소

○ 이전공공기관이 납부하는 지방세가 이전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소폭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추세

- 부산(2016년 0.46%→2024년 0.74%, 0.28%p), 강원(2016년 0.23%→2024년 0.38%, 0.15%p), 충북(2016년 0.51%→2024년 0.59%, 0.08%p), 전북(2016년 0.1%→2024년 0.17%, 0.07%p), 제주(2016년 0.0%→2024년 0.01%, 0.01%p)은 2016년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 비중이 증가
- 대구(2016년 0.6%→2024년 0.38%, △0.22%p), 광주·전남(2016년 1.63%→2024년 1.27%, △0.36%p), 울산(2016년 0.46%→2024년 0.24%, △0.22%p), 경북(2016년 4.04%→2024년 2.02%, △2.02%p), 경남(2016년 0.64%→2024년 0.32%, △0.32%p), 충남(2016년 1.49%→2024년 0.42%, △1.07%p)은 2016년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 비중이 감소

[광역 시·도 지방세 수입 및 이전공공기관 지방세 비중 현황]

(단위: 조원, %, %p)

광역지자체 (이전기관수)	2016 (A)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B)	차이 (B-A)
합계 (104)	32.5 (0.82)	34.3 (0.81)	34.6 (0.79)	37.3 (0.71)	43.3 (0.72)	46.2 (0.7)	50.5 (0.71)	49.1 (0.58)	50.0 (0.58)	17.5 (△0.24)

주: 괄호 안은 이전공공기관 지방세 납부 비중
자료: 국가데이터처 KOSIS 통계 및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11) 부산, 대구, 광주, 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세종, 충남이며, 광주와 전남은 합산한 금액임

3.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후 관리 현황

가. 이전공공기관 수도권 잔류 현황

❑ 본부 혹은 지사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전체 105개 중 56개로 53.3%이며, 105개 기관 전체 정원은 2025년 기준 232,642명으로 이 중 본사 현원이 49,241명으로 정원 대비 21.2% 수준

○ 정원에서 본사 현원을 차감한 인원은 183,401명으로 본사 외 인력 규모 비중은 78.8%로 추정

- 국립공원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적십자사 등은 본사 외에 지사 인력 규모가 큼

[이전공공기관 지역별 인력 규모(2025년 기준)]

(단위: 명, %)

구분	기관수			본사 현원 (C)	정원(D)	[정원-본사 현원] (E=D-C)	정원 대비 비중	
	계 (A)	지사 有(B)	비중 (B/A)				C/D	E/D
합계	105	56	53.3	49,241	232,642	183,401	21.2	78.8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및 각 기관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이전공공기관 중 지방 이전 후에도 기존 수도권 내 지사와 별개로 수도권 내 잔류 인원·시설이 존재하는 기관이 있으며 기관은 전체 105개 기관 중 강원 4개, 충북 1개, 경북 1개, 대구 4개, 경남 7개. 울산 6개, 부산 6개, 전북 1개, 광주 전남 9개, 제주 1개, 세종 5개, 개별 2개 총 47개 기관 지방시대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 수도권 내 잔류인원 및 시설을 운영

○ 이전공공기관 중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잔류인원이 288명으로 본사 현원 대비 102.9%, 정원 대비 31.4% 비중을 차지하며, 한국인터넷진흥원 174명(본사 현원 대비 28.9%, 정원 대비 21.5%), 한국산업인력공단 135명, 한국전력공사는 133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18명(본사 현원 대비 88.7%, 정원 대비 45.4%), 한국자산관리공사 108명 순으로 수도권 내 잔류

[수도권 잔류인원·잔류시설이 존재하는 이전공공기관]

지역	지역별 기관 수
혁신도시 (40)	강원 4개, 충북 1개, 경북 1개, 대구 4개, 경남 7개, 울산 6개, 부산 6개, 전북 1개, 광주·전남 9개, 제주 1개
세종 (5)	5개 기관
개별 (2)	개별 이전 2개 기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후 관리 현황

❑ 지방이전을 완료한 재외동포재단은「재외동포기본법」공포로 2023.6.4. 해산된 후, 재외동포협력센터로 신설되었으며, 재외동포재단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은 재외동포청이 승계하며 이 과정에서 2026년 2월 1일 기준 현원 39명이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음

○ 이 과정에서 자체보유자금 20억원, 국비(14.63억원)와 차입금(14.98억원)을 투입하여 이주한 재외동포재단은 제주 본사를 활용하지 않고 서울사무소에 전원 이주(39명)하여 근무하였음. 법인 해산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재외동포협력센터가 재외동포재단의 업무와 인원을 대부분 승계했다는 점에서 서울로의 이전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 취지에 다소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 개정된 2023년 7월 이후 지정된 신규 공공기관 중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로 인가하는 경우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 2024년 이후 신규지정된 기관 중 일부는 향후 공공기관 이전 대상기관으로 편입 검토 필요

❑ 현행 법체계에는 이전 완료 공공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절차 및 항목에 관한 내용이 부재하여, 그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수립)의 절차와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항목을 준용하여 이전 완료 공공기관을 관리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함

○ 제1차 지방이전계획이 2019년에 완료되었고 사후 관리 단계인 이전공공기관을 지방이전계획 법령으로 관리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전 완료 공공기관의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이전대상 공공기관을 "이전공공기관"으로 규정하면서, 개별 조문에서 "이미 이전한 공공기관"을 전제로 한 내용[12]들을 규정하고 있는 바, 명확한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이전공공기관"에 추후 이전할 공공기관(이전 대상 공공기관)과 이미 이전을 한 공공기관(이전 완료 공공기관)을 구분하여 포함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12) 지역인재채용(제29조의2), 지역발전기여(제29조의3), 우선구매(제29조의5), 지역기업우대(제45조의5), 국공유재산감면(제46조), 이주직원지원(제47조) 등의 규정에서는 "이전공공기관"이 이미 이전한 이후의 활동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임

Ⅳ. 결론 및 시사점

1. 이전 지역·이전공공기관 현황 및 시사점

가. 공공기관 이전 지역 주요 현황 추이 분석

❑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이행률

○ 미혼 독신자를 포함한 가족동반 이주율은 2025년 71%, 정주환경만족도는 69.4점, 주민등록인구는 전입인원 267,869명 목표치 중 2025년 234,684명, 공동주택 공급 목표치 92,599호 중 87,313호로 목표치를 미달

○ 산학연 클러스터[13] 분양률은 2025년 12월 기준 계획 대비 분양률이 81.8%[14]이며 분양 면적 대비 입주율은 56.6%로 추가 입주가 필요한 상황

❑ (인구증가율) 공공기관이 이전한 혁신도시의 인구 증가율을 전국 단위 인구증가율과 비교해보면, 혁신도시 10개 중 6개는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임

❑ (전국 대비 GRDP 증가 추이) 전국 단위 GRDP 증가율[15](2015년 대비 2022년 33.5%, 2020년 대비 2022년 12.9%)과 비교하였을 때 일부 지자체의 경우 전국 단위 증감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지역 내 이전공공기관 지방세 납입 비중) 이전한 광역지자체에 이전한 기관이 납부한 지방세는 2016년 32.5조원에서 2024년 50조원 규모로 17.5조원 증가하였으며, 이전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 비중은 2016년 0.82%에서 2024년 0.58%로 0.24%p 감소함[16]

---

13) 혁신클러스터 용지 = 이전대상 공공기관 용지 +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14) 이전공공기관 부지 포함

15) 명목지표이며 이전공공기관의 경우 2015년 대부분(76개) 이전을 완료하였기 때문에 비교 시점으로 설정함

16) 이전한 광역지자체에 이전한 기관이 납부한 지방세는 광역지자체 13개의 지방세 합계액은 2016년 32.5조원에서 2024년 50조원 규모로 17.5조원 증가함

❑ 혁신도시 중 대구 동구와 경남 진주시의 경우는 인구 감소 추세와 전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GRDP 상승률 추세와 더불어 지역 내 이전공공기관이 납입한 지방세 비중 또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혁신도시 인구 및 GRDP 상승, 지역 내 지방세 납입액 비중 추이(이전공공기관)]

구분		기간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구	혁신도시 인구 감소	2015년 대비 2024년, 2019년 대비 2024년	부산(영도구, 남구, 해운대구), 대구 동구, 울산 중구, 전북 전주시, 완주군, 경북 김천시, 경남 진주시
GRDP	혁신도시 GRDP 상승률 추세 낮음	(전국 대비) 2015년 대비 2022년, 2020년 대비 2022년	대구 동구, 강원 원주, 전북 전주시·완주군, 경남 진주시, 제주 서귀포
지방세	이전공공기관 지방세 납입액 비중 감소	2016년 대비 2024년	대구, 광주 전남, 울산, 경북, 경남, 충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이전공공기관 주요 현황 분석

❑ 공공기관 이전 목표는 달성하였으나, 종전부동산 매각 지연 등으로 이전계획이 평균 2.6회 변경되는 과정에서 평균 28.6개월의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총 6,456억원의 이전비용(기관당 평균 61.5억원) 증가함

○ 이주가 지연될수록 건설공사비 증가로 인한 총사업비가 증가되어 기관 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이전 계획을 신속히 이행할 필요가 있음

❑ 이전공공기관 본사에 근무하고 있는 현원은 당초 계획 대비 초과하였지만, 가족동반이주 이전 목표는 일부 지자체가 미달하였으며, 일부 기관은 기관장이 미이전하였거나 수도권 통근버스를 운영한 적이 있음

○ 이전공공기관은 전체 계획 인원 41,271명 중 본사에 근무하는 현원은 48,934명(117.2%)으로 당초 계획 대비 초과하였지만 가족동반이주 이전 인원 목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미달성함

○ 기관장의 주소지 이전현황을 조사한 결과 기관장이 미이주한 기관은 53개 기관이며, 이 중 현재 기관장이 공석인 7개 기관을 제외하고 46개 기관의 기관장이 이주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

○ 수도권행 셔틀버스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60개 기관이 수도권행 셔틀버스를 운영하거나 운영한 적이 있으며 셔틀버스 예산액 총액은 2010~2025년 누적액이 1,989.9억원이며, 그 중 경남 356.4억원, 광주 전남 344.6억원, 강원 286.6억원 순으로 예산 투입액이 많았음

❑ 「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상 지역활성화 목적에 부합하도록 세부 관리계획별 차질 없이 사업비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며, 기관별 수요 예측 및 세부적인 관리가 필요함

○ 지역산업 육성의 경우 2024년 사업비 집행률은 80.7%이며, 일부 기관의 경우 착공 연기 투자시기 조정, 경영상 이유 및 예산 집행 조정, 지역업체 참여저조 및 미선정 등으로 역량 있는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역산업 육성 수요 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지역인재육성 사업의 경우 사업비 집행률은 2024년 98.7%이며 모집 정원 대비 선발인원 미달, 청년인턴 등 중도 퇴사, 채용규모 감소 등의 사유로 모집 정원 대비 선발인원 미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인재 참여를 좀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지역주민 지원 사업의 경우 사업축소·계획 지연 및 변경으로 인한 경비 감소, 경영 위기·수익 감소에 따른 예산 감소 등의 사유로 사업비 집행률은 2023년 87.4%, 2024년 69.9%로 낮으며, 사업이 적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유관기관 협력 사업비는 계획 대비 초과 집행되었지만, 일부 사업비 미집행 기관을 중심으로 지원자 감소, 수요예측 실패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 필요

○ 지역생산물품 우선구매 사업의 집행률은 2023년 91.9%, 2024년 95.7%이며, 일부 기관의 경우 예산 및 수요 감소, 지역구매물품 조달의 어려움기관 특성상 용역 중심 입찰 방식 활용, 경쟁입찰, 한정적인 물품 리스트, 업무 특수성으로 인해 지역 기술 보유 업체 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비 중 일부를 미집행하였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구매물품의 범위 확대(지역 범위의 확대, 품목 확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전공공기관 지방세 납부 현황

○ 이전공공기관이 이전지역에 납부한 누적 지방세는 총 2조 5,072억원(2016~2024년)임

- 대구, 경북, 울산, 경남, 충남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액은 2016년 대비 2024년 감소하여 이전공공기관이 지역에 납입하는 지방세액이 감소함

2. 향후 개선과제

가. 이전 단계 고려 사항

❑ 종전부동산 매각 관련 고려 사항

○ 종전부동산 미매각 시 차입금과 출연금 등을 통해 이전비용을 마련해야 하며 특히 차입금의 경우 이자비용이 발생하므로, 지방이전계획 수립 시 기관의 종전부동산 매각이 지연되지 않도록 계획 단계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자체재원 없이 종전부동산 매각을 통해 이전비용을 확보해야 하는 기관은 종전부동산이 미매각 되어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함

- 자체재원이 미비한 기관 중 종전부동산 매각이 지연되고 있는 기관에 한해 매각 위탁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하면 이전비용확보가 용이해져 사업 진행속도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확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이 외에도 종전부동산 매각의 경우 제1차 지방이전기관의 사례를 참고하여, 매각이 지연될 시, 다양한 방식의 재원마련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기부채납 후 국비 지원, 연기금 자산 편입, 일시적 차입금 활용 등)

❑ 임대차 계약 정리 문제

○ 공공기관 중 수도권에 본사를 임차한 기관 중 최근 장기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기관의 경우, 계약 만료 시기까지 지방 이전이 어려울 수도 있으며, 계약 종료를 위해 위약금을 제시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본사 임차 기관 중 민간 부문과 장기 계약을 체결한 기관은 이전 대상 공공기관으로 선정될 시 임대차 계약 정리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공사 설립법에 본사를 수도권으로 명기한 공공기관 법령 개정 문제

○ 기관 설립법상 본점 소재지가 수도권으로 명시된 공공기관의 경우 지방 이전을 위해 설립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나. 사후 관리 단계 고려 사항

❑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준수 및 사후관리 법령 개선 필요

○ 이전공공기관 중 수도권 잔류인원·시설이 존재하는 기관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이전공공기관 계획을 수정 가능하며, 잔류인원의 비중이 과도하게 높다면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잔류 인력 규모를 심의·조정할 필요가 있음

○ 현행 법체계에는 이전 완료 공공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절차 및 항목을 규정한 내용이 부재하여, 그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수립)의 절차와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항목을 준용하여 이전 완료 공공기관을 관리함

○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 개정된 2023년 7월 이후 지정된 신규 공공기관 중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로 인가하는 경우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재직자 퇴사 및 신규채용에 따른 지방인재 비중 확대 효과

○ 공공기관 이전 전후 퇴사율은 기관 이전 전 2.66%에서 기관 이전 후 3.11%로 증가하여, 정원 증가 추이보다 퇴사자 증가 추이가 높게 나타남

○ 정년퇴직 및 지방이전 등 다양한 사유로 퇴사한 이전공공기관 정원은 이전지역인재채용을 통해 충원되며, 이전지역인재 퇴사율 또한 주요 공공기관을 기준으로 신규채용인재에 비해 낮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전공공기관의 수도권 인재가 지방인재로 지속적으로 대체됨

○ 반면, 지역 특정 대학의 채용 쏠림 현상과 같은 부(-)의 효과도 발생하므로 채용권역 완화와 같은 지역 대학 쏠림 완화 장치 도입 등을 통해 제도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음

Ⅰ 개 요

1 분석의 배경 및 목적

정부는 수도권 집중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자립형 혁신도시[1] 건설을 목표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을 추진하였다. 2003년 6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방침」 발표를 시작으로 2004년 4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2] 제18조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05년 6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한 기본방향 및 시도별 배치기준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수립하였다. 동 계획에 따르면 2012년까지 공공기관의 이전 완료를 목표로 하였으나, 그동안 빈번한 계획변경 및 이전재원 부족 등으로 2019년 사업이 완료되었다.

「제1차 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2018~2022)」에 따라 혁신도시 기반조성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1차적으로 마무리되었고, 현재 「제2차 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2023~2027)」이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 당초 계획 대비 정부·공공기관의 이전추진 실적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 지역에는 일자리창출 · 세수증대 등 정(+)의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공공기관 내부적 측면에서는 인력수급 불균형 등 부(-)의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지역에 미치는 구체적인 사업효과를 조사·분석하여 향후 이전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공공기관의 행정비효율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

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르면 '혁신도시'란, 지방이전 공공기관 및 산·학·연·관이 서로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최적의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 정주환경을 갖춘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 도시를 의미한다.

2) 이후 2023.6.9.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2 분석의 구성 및 방법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은 산학연 클러스터 형성을 통한 자립형 혁신도시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평가 대상은 이전공공기관 및 혁신도시를 대상으로 하였다. 2005년 6월에 발표된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따르면, 수도권에 소재한 345개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포함) 중 (구)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75개 기관이 이전대상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이후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으로 통폐합되어 2025년 기준으로 이전대상 공공기관 수는 149개이다.

이 중에서 정부소속기관을 제외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103개[3] 및 공공기관 지정해제된 이전공공기관[4]을 평가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이들 기관은 기관 특성 및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부산·대구·광주·전남·울산·강원·충북·전북·경북·경남·제주 등 10개 혁신도시 외에도 세종특별자치시 및 개별이전지역[5]으로 이전하였으므로, 12개 지역을 평가대상으로 하였다.

[평가 대상 기관·지역]

구분	주요 내용	비고
대상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103개 이전공공기관 및 공공기관 지정해제된 이전공공기관	정부소속기관 등 제외
대상 지역	부산·대구·광주·전남·울산·강원·충북·전북·경북·경남·제주 등 10개 혁신도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및 개별이전지역 등 12개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및 개별이전지역 포함

3) 이전 완료 후 법인 청산한 재외동포재단 이후 설립된 재외동포협력센터 포함

4) 한국식품연구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예탁결제원

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① 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특성과 이전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전공공기관과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 외로 개별이전을 인정할 수 있다.

평가내용과 방법으로는, 첫째, 중앙정부 및 이전공공기관 등 사업주체별로 이전계획 대비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였다. 지역별 분포 현황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명시된 계획 대비 사업 이행 현황을 분석하였다. 공공기관·청사 등 이전규모, 이전시기, 이전비용 등에 관한 계획 대비 실적을 점검하고 청사 신축·임대 여부 및 종전 부동산의 매각·임차 현황을 분석하였다.

둘째, 지방이전 이후 이전지역의 주요 변화를 분석하였다. 먼저 혁신도시 지역 내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 추진 이후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검증하였다(전입 인구, 기관 이전 여부, 주택 공급 호수, 생활 SOC, 주거만족도 등). 다음으로 지방 이전 이후 이전공공기관 본사 현원 및 셔틀버스 운영기관 실태 파악, 기관장 전입 여부 및 직원 퇴사율 등을 파악하였다. 또한 「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에 따라 이전공공기관들이 지역산업육성, 지역인재채용, 지역인재육성, 지역주민지원, 유관기관협력, 지역물품구매 목표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분석하였고, 이전공공기관 지방세 규모를 분석하여 이전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파악하였다.

셋째,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후관리 현황을 정리하였다. 또한 지방이전 이후 신규 편입된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문제에 관해 분석하였으며, 이전 이후 사후관리에 관한 법령 및 체계에 관해 분석하였다.

이러한 현황 및 분석을 토대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인구와 지역 경제 등에 파급효과가 있는지 분석하였으며, 이전공공기관이 전반적인 정부 계획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하였다. 또한 추후 국정과제를 수행 시 이전단계에 고려할 사항과 사후 관리 단계에 고려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제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 현황과 개선과제 구성과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분석 내용
Ⅰ. 개요		• 분석의 배경 및 목적 • 분석의 구성 및 방법
Ⅱ. 사업 개요 및 현황		• 사업 목적 및 내용 • 사업 추진 체계
Ⅲ. 공공기관 지방이전현황 분석	기관 이전 현황 분석	• 이전공공기관 지역별 분포 현황 • 계획 대비 사업 이행 현황 분석 • 공공기관 청사 신축 매각 임차 현황
	이전 지역 주요 변화 분석	• 이전 지역 주요 지표 추이 분석 • 이전공공기관 이주 현황 등 • 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 이행 현황 • 이전공공기관 지방세 납부 현황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후 관리 현황	• 이전공공기관 수도권 잔류 현황 •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후 관리 현황
Ⅳ. 결론 및 시사점	결론 및 시사점	• 공공기관 이전 지역 주요 현황 분석 • 이전공공기관 주요 현황 분석
	향후 개선과제	• 이전 단계 고려 사항 • 사후 관리 단계 고려 사항

II 사업 개요 및 추진체계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공공기관 제1차 지방이전 사업은 경제발전과정에서 초래된 지역간 불균형 발전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을 완화하고 자립형 지방화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는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기능적 특성과 지역전략산업을 연계하여 지역특성화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혁신도시 및 지방도시의 경쟁력과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6]을 단계적으로 지방 이전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였고 2019년 제1차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되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5조에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지원계획 수립,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의 수립, 혁신도시의 지정 ·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

---

6)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공공기관 중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1. 중앙행정기관
2. 수도권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기관
3.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및 수도권 안의 폐기물 매립지에 있는 기관
4. 수도권에 있는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 지역문화복지시설, 의료시설 등으로서 수도권 주민의 문화생활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기관
5. 수도권에 있는 문화유적지, 묘지, 매립지, 남북한 간 출입장소, 방송시설, 철도역, 공항 및 그 관련 시설 등을 관리하는 기관
6. 구성원 간의 상호부조, 복리 증진, 권익 향상 또는 업무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7. 그 밖에 기관의 성격 및 업무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에 두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정하는 기관

[사업목적 및 법적 근거]

구분	주요 내용
사업 목적	수도권 인구집중을 완화하고 혁신도시 활성화를 통해 자립형 지방화의 계기를 마련 이전공공기관의 기능적 특성과 지역전략산업을 연계하여 지역 특성화 발전을 촉진하여 혁신·지방도시의 경쟁력과 활력을 제고함
법적 근거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5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①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대상공공기관"이라 한다)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하 "혁신도시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지원계획 수립,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의 수립, 혁신도시의 지정 ·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

자료: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및 국회법률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사업 내용

공공기관 제1차 지방이전 사업은 서울·경기·인천에 소재한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 재배치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2005)」에 따르면,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포함) 중 (구)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75개 기관이 이전대상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이 중에서 정부소속기관을 제외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104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였다. 기관 유형별로 보면, 공기업 15개, 준정부기관 44개, 기타 공공기관 44개이며, 공공기관 이전 후 공공기관 지정 해제된 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식품연구원이다.[7] 이전 기관수는 2026년 공공기관 지정 기준으로 보면 전체 342개 공공기관 중 30.7%에 해당한다.

각 기관은 서울·경기·인천 및 대전을 제외한 10개 혁신도시·세종특별자치시·개별이전지역 등 12개 지역에 형평성 원칙에 따라 시도별 지역발전 정도를 감안하여 적정하게 배치되었다. 산업별 기능군과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공공기관의 지방

7)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이전 대상 기관이지만 공직유관단체

이전이 지역발전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과 각 기관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치하였다.

혁신도시별 이전공공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부산 11개, 대구 8개, 광주·전남 13개, 울산 7개, 강원 9개, 충북 8개, 전북 5개, 경북 5개, 경남 10개, 제주 1개, 세종 19개, 개별 10개이다.[8)]

[혁신도시별 공공기관 이전 현황]

(단위: 개)

구분	기능군	이전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부산 (11)	영화진흥 해양수산 금융산업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공공기관 지정 해제) 한국예탁결제원		
대구 (8)	가스산업 산업진흥 교육학습	한국가스공사 한국부동산원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광주 전남 (13)	전력산업	한국전력공사(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인터넷진흥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전KDN(주), 한전KPS(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울산 (7)	산업안전 에너지산업	한국석유공사 한국동서발전(주)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강원 (9)	광업진흥 건강생명 관광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도로교통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공원공단, 한국관광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적십자사
충북 (8)	인력개발 과학기술 정보통신	-	한국소비자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고용정보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전북 (5)	국민연금 식품연구	-	국민연금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공공기관 지정 해제) 한국식품연구원		
경북 (5)	도로교통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기술(주)	한국교통안전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 (10)	주택건설 산업기술 중소기업	한국남동발전(주) 한국토지주택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주택관리공단(주)
제주 (1)	국세관리 국제교류	-	공무원연금공단	

8) 공공기관 이전 이후 공공기관 지정 해제된 기관 포함

(단위: 개)

구분	기능군	이전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세종 (19)	국책연구기관 등	-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국토연구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공공기관 지정 해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개별 (10)		한국수력원자력(주)(경주), 한국서부발전(주)(태안), 한국중부발전(주)(보령)	한국장학재단(대구), 한국원자력환경공단(경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익산), 재외동포협력센터(제주), 한국국제교류재단(제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오송), 한국보건복지인재원(오송)
합계 (106)	-	15	44	44
		(공공기관 지정 해제) 3개 기관		

자료: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홈페이지(innocity.molit.go.kr) 및 보도자료(2019.12.25.)를 바탕으로 재작성

제1차 혁신도시 지정 이후 대전·충남[9] 지역은 2020년 혁신도시로 지정되었으며, 충남혁신도시는 2025년 말 개발이 완료되었으며 대전혁신도시는 2026년 5월 현재 조성 중이다. 이 중 대전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제1항 예외 조항에 따라 혁신도시 외로 개별이전하는 방식으로 이전하였다. 정부 부처 중 기상청과 방위사업청은 대전으로 1단계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도 현재 대전으로 일부 이전을 완료한 상태로, 2026~2027년 중에 지방 이전을 최종 마무리할 예정이다.[10] 따라서 본 보고서는 이전이 완전히 완료된 '제1차 이전공공기관'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으며, 현재 이전이 진행 중인 위 3개 기관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9) 충남 내포신도시의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이전한 공공기관은 없음

1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 ①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특성과 이전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전공공기관과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 외로 개별이전을 인정할 수 있다.

2 사업 추진체계

가.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추진체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11]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성과를 토대로 혁신도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5년 단위로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계획 수립절차는 다음과 같다. 시·도지사는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안)을 수립하여 시·군·구청장 및 공공기관 의견을 청취하고 시·도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며, 이를 바탕으로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안)을 토대로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안)을 마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확정한다.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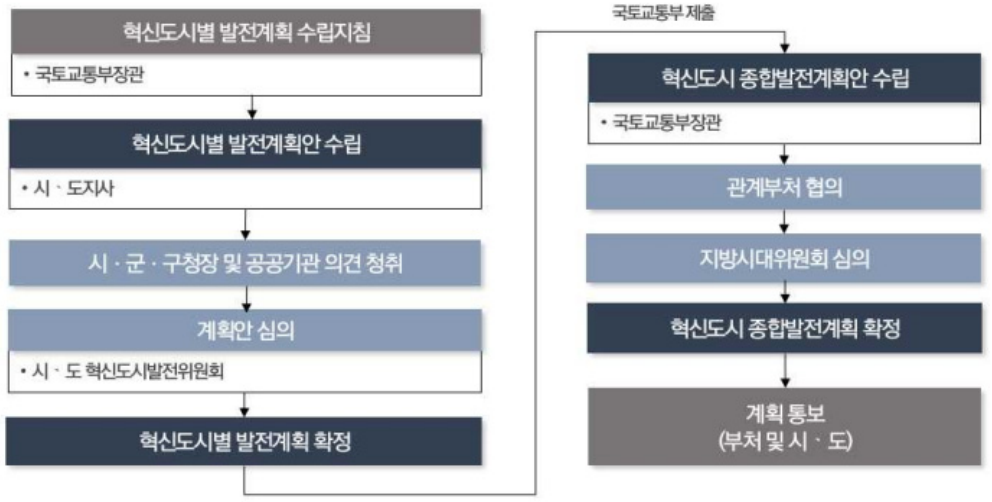

자료: 제2차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2023~2027) p.4. 그림 인용

1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 2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도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른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을 기초로 하여 5년마다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혁신도시를 국가균형발전거점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전략, 혁신도시의 문화·교육·복지·보건의료 등 정주환경 조성,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이전공공기관 연계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인재의 양성, 혁신도시의 스마트도시 구축에 관한 사항, 구도심 등 인근지역과의 상생발전,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관계 기관의 역할분담, 사업 간 연계, 재원조달 및 사업관리에 관한 계획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해당 계획에서 정부-지방자치단체-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상 과업을 분담하고 있으며, 이 중 이전공공기관은 기관별 지역발전계획 수립, 지역특화 발전 지원, 신기술 및 신사업 혁신도시 우선 적용, 지역인재 양성 및 채용 확대, 지역사회공헌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상 정부-지방자치단체-이전공공기관 역할]

구분		주요 역할
정부	지방시대위원회	•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부처별 지원정책 통합체계 마련, 예산편성 의견 제시 등 부처 간 협의·조정 기능 수행
	국토교통부	•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집행, 혁신도시 발전정책 추진 및 부처별 역할 분담 방안 등 총괄기획 기능 수행
	관계 부처	• 혁신도시 산학연 유치 및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정주환경 개선, 스마트시티 구축, 지역인재 양성 등 소관업무 지원
지방자치단체		•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립·운영, 부문별 정책 집행, 산학연 투자유치, 입주기관 지원, 상생발전 지원 등
이전공공기관		• **이전공공기관별 지역발전계획 수립, 지역특화 발전 지원, 신기술 및 신사업 혁신도시 우선 적용, 지역인재 양성 및 채용 확대, 지역사회공헌 등**

자료: 제1차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2018~2022) p.81. 표 인용

나.「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 추진체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12]에 따르면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전공공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전공공기관은 지역발전 계획과 추진실적 등을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매년 공개하고 있다. 대상기관은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을 완료한 150개 이전공공기관으로, 이 중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102개이며, 그 외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이다.

「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 전략 산업 육성, 기업유치, 일자리창출 및 중소기업 지원 등 동반성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추진하며, 지역인재 채용 및 산학협력사업을 포함한 지역인재 육성을 지원한

1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의3(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① 이전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매년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산업 육성,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및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
2. 지역인재 채용 및 산학협력사업을 포함한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3. 혁신도시 주민 지원을 위한 지역공헌사업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 이전공공기관, 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이전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과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통보받은 계획과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이전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5(이전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추진실적의 통보) ①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3(이전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이전지역의 범위 등) ① 법 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범위는 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이 속하는 광역시·도·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로 한다. 다만, 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혁신도시를 공동으로 건설한 광역시 및 도를 하나의 권역으로 하여 해당 권역을 이전지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범위 및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또한, 혁신도시 주민 지원을 위한 지역공헌사업을 추진하며, 지방자치단체, 이전공공기관, 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 간 협력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전공공기관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이전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지역산업 육성	• 연관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전략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 등 지역산업 활성화에 대한 사업
지역인재채용·지역인재육성	• 지역인재 채용, 지역대학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장학 사업, 직무체험 및 견학프로그램 운영 등 인재 양성에 대한 사업
지역주민 지원	• 지역주민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체육시설 등 생활SOC 건립, 기관 시설 개방 등에 대한 사업
유관기관 협력	• 지방자치단체-기업-대학과의 공동 연구 및 협의회 운영 등 지역발전을 위한 기관 간 협력에 대한 사업
지역생산물품 우선구매	• 이전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자료: 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

Ⅲ 공공기관 지방이전 현황 분석

1 기관 이전 현황 분석

가. 이전공공기관 지역별 분포 현황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2010년부터 시작되어 2019년 12월에 105개 공공기관의 이전이 모두 완료되었다.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77개, 세종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19개, 그 외 개별 이전한 공공기관이 9개[13]이다.

이전공공기관의 시도별 배치는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수도권과 대전청사 및 대덕연구단지가 있는 대전을 제외한 12개 광역시도에 차등적으로 이루어졌다. 공공기관 이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유사한 영역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을 동일 기능군으로 분류하고, 해당 기능군별로 함께 이전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각 혁신도시들은 지역별 중점 기능군의 분류에 따라 해당 기능군에 속하는 공공기관들이 이전 배치되었다. 다만,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능군의 구분과 무관하게 배치된 경우도 존재한다.[14]

지역별 공공기관 이전 현황을 살펴보면, 부산 11개, 대구 8개, 광주·전남 13개, 울산 7개, 강원 9개, 충북 8개, 전북 5개, 경북 5개, 경남 10개, 제주 1개, 세종 19개, 개별 이전 10개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예탁결제원 등 해양수산 및 금융산업 분야 공공기관은 부산으로 이전하였고, 한국전력공사 등 전력산업 공공기관은 광주·전남 지역으로 이전하였다. 한국석유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에너지 및 산업안전 분야 공공기관은 울산으로 이전하였으며, 한국관광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광 및 건강 관련 공공기관은 강원으로, 다수 국책연구기관 등은 세종시로 이전하였다.

---

13) 기타공공기관인 재외동포재단은 기관 해산으로 제외함

14) 고영우,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조직에 미친 영향 분석」, 2021, p.107

[지역별 공공기관 지방이전 현황]

(단위: 개)

구분	지역	기관명	
혁신도시(77)	강원(9)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한적십자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도로교통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공원공단	
	충북(8)	한국소비자원, 한국고용정보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경북(5)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전력기술(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8)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사학진흥재단, 신용보증기금, 한국가스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경남(10)	국방기술품질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주택관리공단(주), 국토안전관리원	
	울산(7)	에너지경제연구원,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부산(11)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남부발전(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전북(5)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국민연금공단,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식품연구원	
	광주·전남(13)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전력공사, 한전KDN(주), 한전KPS(주), 한국전력거래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제주(1)	공무원연금공단	
세종시(19)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국토연구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개별 이전(9)		오송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기타	한국원자력환경공단(경주), 한국중부발전(주)(보령), 한국수력원자력(주)(경주), 한국서부발전(주)(태안),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익산), 한국국제교류재단(제주), 한국장학재단(대구)

주: 1. 한국예탁결제원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경우 각각 2022년, 2024년에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됨

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2023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명칭이 변경됨

자료: 각 기관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2010년 이후 기관별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 연도별 공공기관 지방이전 현황을 보면 2010년부터 일부 공공기관들의 개별 이전이 시작되었고, 혁신도시로의 이전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2014~2015년에는 총 76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하여 가장 많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이루어졌다. 기관별 지방 이전 전후 직원 퇴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기관별 지방 이전 시점을 아래 표에 따라 구분하였다.

[연도별 공공기관 지방이전 현황]

(단위: 개)

연도	이전 기관명			개수
	혁신도시(77)	세종시(19)	개별이전(10)	
2010	-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오송), 한국보건복지인재원(오송)	2
2011	-	-	한국원자력환경공단(경주)	1
2013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부동산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개발연구원	-	8
2014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전KPS(주), 한국전력거래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농어촌공사, 한전KDN(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경제연구원,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한석탄공사, 대한적십자사, 한국관광공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남동발전(주), 국방기술품질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	53

(단위: 개)

연도	이전 기관명			개수
	혁신도시(77)	세종시(19)	개별이전(10)	
2015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광해광업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도로교통공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국민연금공단,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전력기술(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저작권위원회, 공무원연금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한국중부발전(주)(보령), 한국서부발전(주)(태안), 한국장학재단(대구)	23
2016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주택관리공단(주),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한국수력원자력(주)(경주)	5
2017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인터넷진흥원, 국립공원공단,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식품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	국토연구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익산)	9
2018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재외동포재단(제주), 한국국제교류재단(제주)	3
2019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에너지공단	-	-	2
합계				106

주: 1. 한국예탁결제원은 2022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식품연구원의 경우 2024년에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됨
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2023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명칭이 변경됨
3. 재외동포재단은 법인 청산

자료: 각 기관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19년 1차 이전 결과를 반영한 2026년 1월 현재, 공공기관운영법 상 342개 공공기관의 지역별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본점 소재지 기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공공기관이 128개로 가장 많으며, 경기도 26개,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공공기관 25개, 대전 소재 공공기관이 23개 순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공공기관 분포 현황]

(단위: 개)

구분	지역	기관명	개수
서울 (128)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공항공사, 해양환경공단	4
	준정부기관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우체국물류지원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예금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재정정보원	10
	기타 공공기관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우체국시설관리단,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주)공영홈쇼핑, 건설근로자공제회,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립중앙의료원, 국립항공박물관, 국제방송교류재단, 노사발전재단,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동북아역사재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서민금융진흥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세종학당재단, 시청자미디어재단, 식품안전정보원, 아동권리보장원, 예술의전당,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단법인 국악방송,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재단법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재외동포협력센터, 무역안보관리원, 전쟁기념사업회, 정부법무공단,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중소기업은행,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통일연구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국방연구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국가유산진흥원,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발명진흥회,한국벤처투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산업은행,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투자공사,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환경보전원, 한식진흥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스포츠윤리센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앙사회서비스원, 전국재해구호협회, 양육비이행관리원, 한국스포츠레저(주), (재)한국통계진흥원	114
인천 (8)	공기업	인천국제공항공사	1
	준정부기관	한국환경공단	1
	기타 공공기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항만공사, 재단법인 건설기술교육원,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항공안전기술원, 국립인천해양박물관	6
경기 (26)	공기업	한국마사회, 한국지역난방공사	2
	준정부기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3

(단위: 개)

구분	지역	기관명	개수
	기타 공공기관	88관광개발(주), 국립암센터, 국방전직교육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재단법인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원산지정보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잡월드, 한국학중앙연구원, 공간정보산업진흥원, 국립농업박물관	21
대전 (23)	공기업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공사	4
	준정부기관	국가철도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연구재단	4
	기타 공공기관	국방과학연구소, 기초과학연구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충남대학교병원, 코레일테크(주),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특허기술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특허정보원,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한국통계정보원, 한국관세정보원	15
세종 (25)	준정부기관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3
	기타 공공기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재)축산환경관리원,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22
광주 (3)	기타 공공기관	국립광주과학관, 전남대학교병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3
울산 (9)	공기업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석유공사**	2
	준정부기관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에너지공단**	4
	기타 공공기관	**에너지경제연구원,** 울산항만공사,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3
대구 (15)	공기업	**한국가스공사, 한국부동산원**	2
	준정부기관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5
	기타 공공기관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국립대구과학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물기술인증원	8
부산 (21)	공기업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남부발전(주)**	2
	준정부기관	**기술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3
	기타 공공기관	(재)APEC기후센터,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부산과학관, 국립해양박물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부산대학교병원, 부산항만공사,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진흥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16
강원 (12)	공기업	(주)강원랜드, **한국광해광업공단**	2
	준정부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6

(단위: 개)

구분	지역	기관명	개수
	기타 공공기관	**대한석탄공사,**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대한적십자사**	4
충북 (14)	준정부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소비자원**	3
	기타 공공기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치산기술협회	11
충남 (6)	공기업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2
	준정부기관	국립생태원	1
	기타 공공기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독립기념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3
전북 (10)	준정부기관	**국민연금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3
	기타 공공기관	새만금개발공사, 전북대학교병원, 태권도진흥재단,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7
전남 (16)	공기업	**한국전력공사, 한전KDN(주), 한전KPS(주)**	3
	준정부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력거래소**	5
	기타 공공기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전MCS(주)	8
경북 (10)	공기업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기술(주)**	3
	준정부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3
	기타 공공기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해양과학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한의약진흥원	4
경남 (12)	공기업	**한국남동발전(주), 한국토지주택공사**	2
	준정부기관	**국토안전관리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3
	기타 공공기관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국방기술품질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주택관리공단(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저작권위원회**	7
제주 (4)	공기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
	준정부기관	**공무원연금공단**	1
	기타 공공기관	제주대학교병원, **한국국제교류재단**	2
합계			342

주: 1. 본점 소재지는 2026년 기준
2. 굵은 글씨는 1차 이전공공기관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1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2010~2019) 이후 2022년 7월 국정과제에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정책이 포함됨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1차 공공기관 이전의 성과평가 및 갈등 최소화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2023년 11월부터 시작하였으며, 2025년 10월에 완료하였다.

또한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는 국정과제로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이 국정과제로 수립되었다.[15] 2025년 하반기 이전 대상 공공기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추진체계를 구축한 뒤, 2027년 이후 청사 임차 및 공동청사 건설을 통해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이후 이전기관 종사자 정착 지원 등을 통해 지역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정책 추진 현황]

○ ('22.7) 120대 국정과제에 공공기관 추가 이전 포함 ○ ('23.1~7) 지자체·노조 등 의견 수렴 및 갈등상황 모니터링 ○ ('23.8~9) 연구용역 계획 수립 및 용역 발주 ○ ('23.11~25.10)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연구 용역 완료 ○ ('25.6) 123대 국정과제에 공공기관 2차 이전 포함(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균형성장 거점 육성(51번)) ○ ('25.9~) 2차 공공기관 이전 실행지원 용역 발주

자료: 국토교통부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중 공공기관 이전 관련 내용]

구분	내용
국정 목표	3.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추진전략	1.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국정과제	51.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균형성장 거점 육성(국토부 · 산업부)
주요내용	○ (2차 공공기관 이전) 이전 절차에 신속 착수하고, 지역 정주여건도 개선 - 이전 대상 공공기관 전수조사 즉시 실시('25.下), 추진체계 신속 구축 - 연구 · 공론화 거쳐 공공기관 이전 원칙 · 일정 등 로드맵 수립('26) - 청사 임차 · 공동청사 건설 등을 통해 신속하게 공공기관 지방 이전('27~) - 이전기관 종사자 조기 정착을 위해 교통 · 교육 · 의료 · 정주 패키지 지원, 연구개발 캠퍼스 · 기업 유치 등을 통해 지역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

자료: 국정기획위원회,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2025.8.

15)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2025.8.)에는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을 위한 국정과제로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균형성장 거점 육성(51번)'이 포함되어 있다.

나. 계획 대비 사업 이행 현황 분석

(1) 이전 지연 및 계획 변경 횟수 현황

공공기관 지방이전 비용은 청사 건축비(임차비를 포함한다)와 이주직원 지원비용으로 구분된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방이전계획에 사무소 신축비 등 이전비용 지원에 대한 사항을 수립해야 하며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지침」에 근거하여, 기본적으로 청사신축비용을 포함한 이전재원 수립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비용 관련 법령 (2025년 기준)]

구분	관련 법령
사무소 신축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이전지원계획의 수립) ①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이전하여 오는 이전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해당 이전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사항을 포함하는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지침」 제1장 총칙 제3절 지방이전계획의 주요내용 1-3-3. 이전비용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 사무소 부지매입비·신축비·임차비,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대책에 따른 비용 등 이전비용 산정 제2장 계획수립의 기본원칙 2-3. 재원조달방안을 고려하여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주직원 지원비용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이전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등) ①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이주직원에 대하여 이사비용 및 이주수당의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구분	관련 법령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대책) ①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1. 이주직원에 대한 실비수준의 이사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 2. 이주직원에 대한 한시적인 이주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자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105개 기관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총 이전비용은 9조 1,549억원이었다. 내역별로 살펴보면 청사 건축비용은 7조 4,762억원(81.7%)이고, 기관이전비용은 7,758억원(8.4%)이며, 임대보증금 등 기타 내역은 9,030억원(9.9%)이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7,533억원(8.2%)이고, 국비를 제외한 기관 자체재원이 8조 4,017억원(91.8%)[16]이었다. 기관당 평균 이전비용는 874억원이고, 청사신축비에 713억원, 기관이전비에 75억원, 임대보증금 등 기타 지원에 86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13개 기관이 이전하는 광주·전남에서 1조 4,404억원이 소요되었으며, 이어서 강원 1조 842억원, 개별이전지역 1조 131억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비용 내역(2025년 기준)]

(단위: 억원, %)

구분	기관수	이전비용 (A)	이전비용 내역 (A=B+C+D)			이전 재원 조성 방식 (A=E+F)	
			청사신축비 (B)	기관이전비 (C)	기타(D)	자체 재원 (E)	국비 (F)
합계	105	91,549.7 (100.0)	74,761.7 (81.7)	7,757.8 (8.4)	9,030.2 (9.9)	84,017.3 (91.8)	7,532.4 (8.2)
부산	11	8,749	6,233	1,743.7	772.3	8,282	467
대구	8	7,710.52	6,015	742.2	953.3	7,390	320.5
광주전남	13	14,403.9	10,957.6	1,705.4	1,740.6	14,303.4	100.5
울산	7	8,400	7,183	356	861	7,023	1,378
강원	9	10,842.1	9,772.4	561.7	508	10,549.1	293
충북	8	5,064.3	4,525.6	443.8	94.9	4,612.5	451.8
전북	5	5,780	5,478	127	175	5,684	96

16) 차입금 등 포함

(단위: 억원, %)

구분	기관수	이전비용 (A)	이전비용 내역 (A=B+C+D)			이전 재원 조성 방식 (A=E+F)	
			청사신축비 (B)	기관이전비 (C)	기타(D)	자체 재원 (E)	국비 (F)
경북	5	7,819.6	7,458	177.6	184	7,819.4	0.2
경남	10	8,277.5	7,587.5	224.5	465.5	7,275.2	1,002.1
제주	1	479	449	30	-	479	-
세종	19	3,892.6	3,232.36	316.6	343.6	2,147.3	1,745.3
개별	9	10,131.2	5,870.2	1,329.3	2,931.8	8,452.4	1,678.9
(기관 당 평균)		874.2	713.4	74.8	86.0	802.5	71.7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임
자료: 각 기관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지역별로 이전비용이 가장 많이 소요된 기관은 한국수력원자력(경주, 개별이전) 4,632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경남) 4,322억원, 한국전력기술(주)(경북) 3,614억원, 한국전력공사(광주·전남) 3,580억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강원) 3,381억원, 한국도로공사(경북) 3,363억원, 한국가스공사(대구) 2,739억원, 한국석유공사(울산) 2,146억원, 한국식품연구원(전북) 2,129억원, 한국개발연구원(세종) 1,502억원, 한국자산관리공사(부산) 1,406억원 한국소비자원(충북) 991억원, 공무원연금공단(제주) 479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이전 비용 상위 기관(2025년 기준)]

(단위: 억원)

기관명	기존 소재지	이전 소재지	이전비용
한국수력원자력	서울	개별(경주)	4,63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	경남	4,322
한국전력기술(주)	경기	경북	3,614
한국전력공사	서울	광주·전남	3,58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	강원	3,381
한국도로공사	경기	경북	3,363
한국가스공사	경기	대구	2,739
한국석유공사	경기	울산	2,146
한국식품연구원	경기	전북	2,129
한국개발연구원	서울	세종	1,502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	부산	1,406
한국소비자원	서울	충북	991
공무원연금공단	서울	제주	479

자료: 각 기관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지역별로 이전비용이 가장 적게 소요된 기관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세종) 16억원, 영상물등급위원회(부산) 19억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전북) 64억원, 한국국제교류재단(제주 개별이전) 80억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경북) 124억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광주·전남) 150억원, 주택관리공단(주)(경남) 201억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강원) 212억원, 사학진흥재단(대구) 280억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충북) 354억원, 에너지경제연구원(울산) 36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이전 비용 하위 기관(2025년 기준)]

(단위: 억원)

기관명	기존	이전	이전비용
에너지경제연구원	경기	울산	36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서울	충북	354
사학진흥재단	서울	대구	28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서울	강원	212
주택관리공단(주)	경기	경남	20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	광주·전남	150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	경북	124
한국국제교류재단	서울	개별(제주)	80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서울	전북	64
영상물등급위원회	서울	부산	19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서울	세종	16

자료: 각 기관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이전 비용 변동 현황 및 사업지연 요인 분석

이전공공기관은「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조[17]에 따라, 이

17)「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조(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①이전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이전의 규모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이전시기에 관한 사항 3. 이전비용의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이전계획은 수도권에 있는 이전공공기관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 및 그 기능의 수행을 위한 조직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③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지방이전계획을 검토·조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

전 규모와 범위, 이전시기, 이전비용의 조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지방이전계획 수립·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105개 이전기관으로부터 계획변경횟수 ·사업기간 연장내역 ·이전비용 증감내역 ·변경사유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105개 기관의 이전계획이 평균 2.6회 변경되는 과정에서 평균 28.6개월의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기관당 평균 61.5억원(총 6,456억원)의 이전비용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강원혁신도시의 경우, 기관당 이전계획이 평균 3.8회 변경되고 사업기간은 27.6개월 연장되었으며, 이전비용은 총 381.7억원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18] 이어서 경북혁신도시의 경우, 기관당 이전계획이 평균 5.6회 변경되고 사업기간은 52.4개월 연장되었으며, 이전비용은 총 216.8억원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19]

[공공기관 이전계획, 이전비용, 사업지연 추이]

(단위: 개, 회, 개월, 억원)

구분	이전 기관수 (A)	평균		이전 비용 증감			
		계획변경횟수 (B)	사업기간연장 (C)	당초 (D)	변경 (E)	증감 (F=E-D)	평균 (F/A)
합계	105	2.6	28.6	85,339.5	91,795.7	6,456.2	61.5
부산	11	3.3	16.0	7,800.0	8,749	949.0	86.3
대구	8	2.4	12.8	7,860.0	7,956.5	96.5	12.1
광주전남	13	2.4	34.5	14,444.0	14,403.9	△40.1	△3.1
울산	7	2.6	33.3	8,159.0	8,400.0	241.0	34.4
강원	9	3.8	27.6	7,407.0	10,842.1	3,435.1	381.7
충북	8	2.0	37.3	4,500.0	5,064.3	564.3	70.5
전북	5	3.8	52.6	4,754.0	5,780	1,026.0	205.2
경북	5	5.6	52.4	6,735.6	7,819.6	1,084.0	216.8
경남	10	2.7	41.5	8,390.0	8,277.5	△112.5	△11.3
제주	1	0	0.0	525.0	479.0	△46.0	△46.0
세종	19	1.8	17.9	5,164.9	3,892.6	△1,272.3	△67.0
개별	9	1.0	23.9	9,600.0	10,131.2	531.2	59.0

자료: 각 기관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8) 강원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광해광업공단 등에서 이전인력과 건축면적이 증가하여 이전비용이 증가되었다

19) 경북의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부지매입 및 청사건축비가 증가되고, 한국전력기술의 이전인원 증가로 인해 이전규모와 이전비용이 증가되었다.

이전계획이 변경되는 주요 사유는 이전비용 증액 혹은 감액, 재원조달액수(종전부동산 매각, 자체재원 활용, 차입금 등)의 증가 혹은 감소, 이전 부지면적의 증가 혹은 감소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역별 이전계획변경이 잦은 기관을 살펴보면, 국민연금공단(전북) 10회, 국민건강보험공단(강원) 7회, 한국전력기술(주) (경북) 7회, 영화진흥위원회(부산) 6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광주·전남) 6회, 한국사학진흥재단(대구)가 5회, 한국소비자원(충북) 5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경남) 5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세종) 4회, 에너지경제연구원(울산) 4회, 한국국제교류재단(개별, 제주) 3회 등이다.

이 중 6회 이상 계획이 변경된 기관의 주요 계획 변경 사유는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공단은 기존 계획 대비 청사면적 확대에 따른 이전비용 조정, 어린이집 준공, 연금개혁집중지원단 세종시 운영의 사유 등으로 10차례 계획이 변경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친환경공사비 추가 반영에 따른 건축비용 증액, 부출입구 추가 조성에 따른 부지면적 증가, 직원사택 규모 조정 등으로 7차례 기존 계획을 변경하였다. 한국전력기술(주)은 부지매입비 감축, 청사건축비 증액 등 이전비용 조정, 이전시설 면적 증가 등으로 기존 계획을 7차례 변경하였다. 영화진흥위원회의 경우 촬영소 부지면적 축소, 공사비 증액, 설계 변경, 종전부동산 매각액[20] 이자 증가분을 반영하여 계획이 지속적으로 변경되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공연예술센터, 국립예술자료원과 기관 통합, 이전비용 및 종전부동산 매각액 변경, 이전인원변경 등의 사유로 계획이 6회 변경되었다.

20) 2013.9 1차 매각분(165.3억원), 2018.1 2차 매각 완료(1,265.3억원)에 따른 이자 수익

[공공기관 이전계획 변경 횟수가 잦은 기관]

(단위: 회, 억원, m^2)

기관명	위치	계획변경횟수	주요 계획 변경 사항		
			구분	최초 승인	최종 승인
국민연금공단	전북	10	이전비용	1,364	1,858
			재원조달액수	1,364	1,858
			이전시설규모	32,313	72,578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원	7	이전비용	1,494	2,029
			재원조달액수	1,494	2,029
			이전시설규모	57,717	99,041.94
한국전력기술(주)	경북	7	이전비용	3,314	3,614
			재원조달액수	3,314	3,614
			이전시설규모	124,810	145,818
영화진흥위원회	부산	6	이전비용	1,207.3	1,456.2
			재원조달액수	1,355.5	1,456.2
			이전시설규모	29,933	22,01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광주 전남	6	이전비용	216.9	150
			재원조달액수	821.2	297.9
			이전시설규모	4,114.8	4,388.8
한국소비자원	충북	5	이전비용	1,057	991
			재원조달액수	934	1,270
			이전시설규모	36,197	30,850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경남	5	이전비용	190	350
			재원조달액수	362	350
			이전시설규모	7,500	13,973
한국사학진흥재단	대구	5	이전비용	226.4	280.01
			재원조달액수	218.98	205.53
			이전시설규모	4,141	6,571
에너지경제연구원	울산	4	이전비용	360	360
			재원조달액수	360	360
			이전시설규모	8,990	8,99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종	4	이전비용	393	420
			재원조달액수	393	420
			이전시설규모	11,298	16,006
한국국제교류재단	개별	3	이전비용	92.36	80.34
			재원조달액수	92.36	80.34
			이전시설규모	3,448.3	3,750.2

주: 이전시설규모는 업무시설, 특수시설, 기타시설을 포함한 총 연면적
자료: 각 기관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정부와 이전기관 등은 수차례 이상 계획변경을 통해 사업내용을 협의 · 조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어 공사비 상승, 차입금 이자 증가 등으로 사업비용이 증가된 것은 기관의 재무건전성 및 국가 재정건전성 확보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개별 기관별로 살펴보면, 최초 이전계획 대비 최종 이전계획상 이전비용 증감액이 높은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1,487억원 증가), 주택도시보증공사(545억원 증가), 국민건강보험공단(535억원 증가), 한국주택금융공사(395억원 증가), 한국자산관리공사(320억원 증가), 한국전력기술(주)(300억원 증가), 한국중부발전(주)(235억원 증가), 영화진흥위원회(249억원 증가), 한국산업기술시험원(160억원 증가), 국립공원공단(155억원 증가)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지연 및 이전비용 증가사유를 살펴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우, 당초 계획된 이전인력에 비해 정원이 증가[21]함에 따라 제2청사가 증축되어, 시공일정이 추가되어 사업비가 증가되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청사 분양대금 증가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친환경공사비 및 직원 숙소 추가 반영 등으로 비용이 증가하였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전공공기관 문현금융단지 통합개발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하였으며, 한국전력기술(주)은 이전인원변동으로 인한 이전규모 및 이전비용이 증가하였다.[22]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직접공사비 상승 등으로 분양대금이 증가하였으며, 한국중부발전(주)은 지방이전계획 승인지연, 비혁신도시 이전으로 입지선정과 인허가가 지연되어 사업이 지연되고 건설 계획시점과 착공시점 차이로 비용이 증가하였다. 영화진흥위원회는 부지 내 암반 노출에 따른 설계 변경 및 표준공사비 단가 증가 및 신재생에너지 시공비에 따른 공사비 상승 등의 사유로 비용이 증가하였으며,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이전시설 면적 조정, 이주직원숙소지원, 국립공원공단은 임차에서 신축으로 변경되어 사업비가 증가하였다.

---

21) 추가 이전 인원 증가로 제2사옥을 건립하였으며, 2019년 서울사무소에 있는 자동차보험센터, 공공심사부 등이 추가 이전함

22) 최초 승인시 이전인원은 2,094명이었으나(2010), 5차승인 시점(2015년) 이전 인원은 2,879명으로 책정되었다. 이후 원자력정책변동에 따라 원전사업 규모 축소로 협력업체 인원 채용이 감소하여 2025년 3월 기준 본사 상주 인원은 2,580명임

[주요 공공기관별 사업지연 및 이전비용 증가 현황]

(단위: 억원, %)

기관	위치	이전 비용 증감				사업지연 및 이전비용 증감 사유
		최초 (A)	최종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원	1,894	3,381	1,487	78.5	이전인력 증가에 따라 청사규모 증가 및 시공일정 추가로 사업비 증가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	522	1,067	545	104.4	지방이전계획 승인지연, 문현지구 개발계획 지연, 종전부동산 매각 지연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청사 분양대금 증가 등으로 인해 이전비용이 증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원	1,494	2,029	535	35.8	친환경공사비 및 직원 숙소 추가 반영 등으로 비용 증가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산	541	936	395	73.0	이전공공기관 문현금융단지 통합개발 등으로 인한 사업비(분양금액) 증가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	1,086	1,406	320	29.5	직접공사비 상승 등으로 분양대금 증가
한국전력기술(주)	경북	3,314	3,614	300	9.1	이전인원 변동으로 인한 이전규모 및 이전비용 증가 (~2016)
한국중부발전(주)	개별	1,067	1,302	235	22.0	지방이전계획 승인지연, 비혁신도시 이전으로 입지선정과 인허가가 지연되어 사업이 지연되고 건설 계획시점과 착공시점 차이로 비용 증가
영화진흥위원회	부산	1,207	1,456	249	20.6	부지 내 암반 노출에 따른 설계 변경 및 표준공사비 단가 증가 및 신재생에너지 시공비에 따른 공사비 상승 등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경남	190	350	160	84.2	이전시설 면적 조정, 이주직원숙소지원(`19) 등에 따른 비용 증가
국립공원공단	강원	123	278	155	126.0	정부출연 예산 연차별 확보 지연 등으로 사업 지연되고, 임차에서 신축으로 변경되어 사업비 증가

자료: 각 기관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한편,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과정에서 종전부동산 매각 지연, 국비 지원 지연 등으로 신규 청사 건립비 및 이주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이전비용을 차입한 기관은 16개 기관으로 해당기관은 대부분 전체 기관 평균 사업연장 기간 28.6개월보다 더 많이 사업이 지연되었다.

해당 기관의 총 이전비용은 1조 6,034억원이며 이 중 차입금 규모는 4,735억원(29.5%)이며, 지출한 이자 규모는 343억원(2.1%)이다. 지출이자비용 대부분은 한국교육개발원 151억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68억원, 한국인터넷진흥원 27.3억원, 한국에너지공단 23억원 등에서 발생하였으며 해당 기관들의 경우 종전부동산 매각 지연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가 발생하였다. 특히, 한국교육개발원은 현재 종전부동산이 미매각되어 이자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해당 이자비용은 기관 부채로 편입되거나(한국교육개발원), 일부는 정부 출연금 등의 이차보전 형태(한국해양과학기술원)로 충당하고 있다.

[이전공공기관 이전비용 대비 차입금 및 지출이자 현황]

(단위: 개월, 억원, %)

기관명	지역	사업기간 연장	총이전 비용(A)	차입금 금액(B)	지출이자 (C)	비중	
						(B/A)	(C/A)
한국교육개발원	충북	50	797	652	151.0	81.8	18.9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산	60	1,496	901	68.0	60.2	4.5
한국인터넷진흥원	광주전남	55	533	473	27.3	88.7	5.1
한국에너지공단	울산	113	1,588	448	23.0	28.2	1.4
에너지경제연구원	울산	27	360	271	16.0	75.3	4.4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광주전남	49	172	147	15.3	85.5	8.9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충북	30	562	149	9.2	26.5	1.6
한국전력기술(주)	경북	32	3,614	460	8.0	12.7	0.2
한국광해광업공단	강원	-	1,547	429	7.6	27.7	0.5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경남	27	360	81	7.4	22.5	2.1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개별	12	933	25	4.0	2.7	0.4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북	20	775	214	2.9	27.6	0.4
한국도로교통공단	강원	44	1,014	263	2.2	25.9	0.2
한국법제연구원	세종	25	158	22	1.0	13.9	0.6
한국전력거래소	광주전남	0	1,960	170	0.3	8.7	0.0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세종	9	165	30	0.2	18.2	0.1
16개 기관 합계		-	16,034	4,735	343.0	29.5	2.1

주: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통합된 한국광물자원공사 차입금 기준이며, 사업기간연장의 경우 2021년 통합되어 제외하였음

자료: 각 기관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 공공기관 청사 신축·매각·임차 현황

(1) 이전 지역 청사 신축·임차 현황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지침」에 따르면 사무소의 신축 또는 임차 관련 사항[23]은 지방이전계획 수립 내역에 포함되며, 이전공공기관의 장을 통해 국토교통부에 제출된다. 지방 이전한 총 105개 공공기관 중 이전한 지역에 청사를 신축한 기관은 총 91개이며 청사를 임차한 기관은 총 14개이다. 청사를 신축한 기관의 청사신축비 전체 평균은 822억원이다. 지역별로 청사 신축비 평균은 경북 1,492억원, 전북 1,370억원, 강원 1,086억원, 울산 1,026억원 순이다.

[이전공공기관 청사 신축·임대 현황]

(단위: 억원, 개)

구분	청사신축기관			청사임대기관	전체 기관수 (E=C+D)
	청사신축비 평균 (A=B/C)	청사신축비(B)	기관수(C)	기관수(D)	
합계	822	74,762	91	14	105
부산	693	6,233	9	2	11
대구	752	6,015	8	0	8
광주전남	843	10,958	13	0	13
울산	1,026	7,183	7	0	7
강원	1,086	9,772	9	0	9
충북	566	4,526	8	0	8
전북	1,370	5,478	4	1	5
경북	1,492	7,458	5	0	5
경남	759	7,588	10	0	10
제주	449	449	1	0	1
세종	323	3,232	10	9	19
개별	839	5,870	7	2	9

자료: 각 기관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3) 제1장 총칙 제3절 지방이전계획의 주요내용
1-3-4. 그 밖에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다음과 같은 사항
- 사무소의 신축 또는 임차계획

지역별로 청사신축비용이 가장 많이 소요된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경남) 4,220억원, 한국전력기술(주)(경북) 3,583억원, 한국도로공사(경북) 3,194억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강원) 3,122억원, 한국전력공사(광주·전남) 2,770억원, 한국수력원자력(경주, 개별이전) 2,530억원, 한국식품연구원(전북) 2,103억원, 한국석유공사(울산) 2,097억원, 한국가스공사(대구) 1,768억원, 한국개발연구원(세종) 1,383억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부산) 1,217억원, 한국소비자원(충북) 751억원, 공무원연금공단(제주) 449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청사신축비용 상위 기관(2025년 기준)]

(단위: 억원, 명, m^2)

기관명	기존	이전	이전비용	이전직원수(현원)	청사규모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	경남	4,220	1,571	135,686
한국전력기술(주)	경기	경북	3,583	2,213	145,818
한국도로공사	경기	경북	3,194	1,124	110,45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	강원	3,122	3,037	114,144
한국전력공사	서울	광주·전남	2,770	1,693	98,630
한국수력원자력	서울	개별(경주)	2,530	1,606	77,582
한국식품연구원	경기	전북	2,103	312	53,488
한국석유공사	경기	울산	2,097	914	64,923
한국가스공사	경기	대구	1,768	815	81,142
한국개발연구원	서울	세종	1,383	768	44,982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울	부산	1,217	778	30,289
한국소비자원	서울	충북	751	399	30,850
공무원연금공단	서울	제주	449	322	14,674

자료: 각 기관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이전공공기관 중 청사를 임대하고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세종시로 이전한 연구원 중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7개 연구원의 경우 세종국책연구단지 내 업무공간을 임차하고 있으며, 연간 임대료 수준은 2025년 기준(관리비 포함) 한국직업능력연구원 34.0억원, 한국교통연구원 32.2억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8.4억원, 산업연구원 30.1억원, 한국환경연구원 26.1억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5.7억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13.4억원 등이다.[24)]

24) 해당 기관 중 종전부동산 보유 기관은 없음

[이전공공기관 청사 임대 현황(2025)]

(단위: 억원, m^2)

기관	위치	임대보증금	업무시설 임대면적	2025년 임대료(연)
영상물등급위원회	부산	0.3	1,639	1.9
게임물관리위원회	부산	0.3	4,327	3.2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전북	64	2,839	3.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종	4.8	7,010	13.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세종	-	13,833	28.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	-	5,932	12.26
산업연구원	세종	-	14,666	30.1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세종	-	16,346	34.0
한국환경연구원	세종	-	12,708	26.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종	-	12,535	25.7
한국교통연구원	세종	-	15,700	32.2
한국국제교류재단	개별	-	3,858	0.3
한국보건복지인재원[1)]	개별	3	6,742(925)	1.2

주: 1) 본사 기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오송 본관은 무상임차이고 그 외 925m^2 면적 임대료가 1.2억원)
자료: 각 기관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지침」에서는 청사규모 산정기준으로 '업무시설은 1인당 연면적 56.53㎡ 범위내로 산정하되, 다만 자체재원 조달이 확실한 경우 등 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개발계획상 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예외를 인정하였다.

최종 승인 시점에 지침 기준을 준수한 기관 중 현재는 지침 기준을 초과한 기관은 다음과 같다. 한국서부발전(주)은 업무시설 면적 증가(17,986m2→19,082m2), 청사 이용 인원 감소(319명→318명)로 1인당 업무시설 연면적이 지침 기준을 초과하였으며, 한국식품연구원은 업무시설 면적은 감소하였지만(25,228m2→24,070m2), 청사 이용 인원이 급감하여(505명→312명) 결과적으로 1인당 업무시설 연면적이 지침 기준을 초과하였다.[25)] 해당 기관은 청사면적 증설 및 청사 이용인원 감축이 발생해 지침에 명시된 연면적이 초과될 시, 이전공공기관 관리카드에 해당 부분을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

25) 대한석탄공사의 경우 최종승인 시점에 비해 현재 탄광 폐쇄로 인한 조직 규모 축소로 인해 1인당 업무시설 연면적이 증가하였음

[업무시설 1인당 평균 연면적 변화 추이]

(단위: m^2, 억원)

구분	최종승인	이전청사	이전비용 조달재원
대한석탄공사	56.4	85.8	자체(205)+국고(15)
한국서부발전(주)	56.4	60.0	자체
한국식품연구원	50.0	77.1	종전부동산 매각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56.5	63.7	자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90.7	90.7	종전부동산 매각

주: 1. 각 지역에 이전한 기관의 평균값임
2. '최종 승인'은 국토교통부로 승인받은 최종 지방이전계획상 1인당 업무시설 연면적임
3. '이전 청사'는 실제 이전한 이전청사의 1인당 업무시설 연면적임

자료: 각 기관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기본원칙으로 '이전기관의 업무효율성이 저하되지 않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을 정하였다. 정부는 국토교통부 훈령인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지침」을 통하여 '지방이전 후 근무환경이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현재의 수준보다 악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합리적 수준에서 사옥 또는 청사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였다. 아래 기관들은 기존 청사에 비해 이전 청사 업무시설 규모가 축소된 기관이며, 특히 이전 청사 1인당 업무시설 연면적 규모가 10~20m^2 수준인 기관들(주택관리공단(주), 한국부동산원, 한국예탁결제원, 국립공원공단,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은 기존 1인당 업무시설 연면적 수준 정도로 규모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업무시설 1인당 평균 연면적 변화 추이]

(단위: m^2, %)

구분	기존청사(A)	이전청사(B)	증감	
			B-A	(B-A)/A
한국도로교통공단	93.3	40.0	△53.3	△57.1
영상물등급위원회	80.8	31.6	△49.2	△60.9
게임물관리위원회	70.0	31.5	△38.5	△55.0
한국교육학술정보원	69.6	35.6	△33.9	△48.8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81.8	50.3	△31.4	△38.4
한국콘텐츠진흥원	56.5	30.7	△25.8	△45.7
한국소비자원	106.0	81.0	△25.0	△23.6
근로복지공단	42.5	20.5	△22.0	△51.7
한국사학진흥재단	57.4	36.1	△21.3	△37.1
한국산업기술시험원	71.0	50.0	△21.0	△29.6
한국보건복지인재원	51.5	31.7	△19.8	△38.4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39.7	21.6	△18.1	△45.6
한국에너지공단	67.1	49.0	△18.1	△27.0
한국부동산원	28.0	13.0	△15.0	△53.6
주택관리공단(주)	25.4	12.0	△13.4	△52.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40.7	30.9	△9.8	△24.1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25.0	15.7	△9.3	△37.2
공무원연금공단	54.3	45.6	△8.7	△16.0
한국전력공사	56.5	48.1	△8.5	△15.0
한전KDN(주)	33.9	25.6	△8.3	△24.6
한국예탁결제원	26.0	18.0	△8.0	△30.8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1.4	24.0	△7.4	△23.6
신용보증기금	23.7	17.8	△5.9	△24.9
한국국제교류재단	42.2	36.8	△5.5	△12.9
산업연구원	56.0	50.7	△5.3	△9.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59.6	54.5	△5.0	△8.4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33.3	25.6	△7.7	△23.1
국립공원공단	15.9	11.0	△4.8	△30.5
한국저작권위원회	15.8	11.8	△4.1	△25.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60.5	56.5	△4.0	△6.6
한국산업인력공단	48.0	44.1	△3.9	△8.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3.7	11.0	△2.7	△19.8
한국가스공사	54.5	52.2	△2.3	△4.1

주: 1. 각 지역에 이전한 기관의 평균값임
2. '기존 청사'는 기존 청사의 1인당 업무시설 연면적임
3. '이전 청사'는 실제 이전한 이전청사의 1인당 업무시설 연면적임

자료: 각 기관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종전부동산 보유·임차·매각 현황

종전부동산이란 이전공공기관이 수도권에 소유하고 있는 청사 등의 부지 및 건축물 등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3조[26]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이 수립하여 제출한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을 승인하고, 이전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위 처리계획에 따라 종전부동산을 매각하도록 하고 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한 총 105개 이전공공기관 중 기존 종전부동산을 보유한 기관은 총 67개이며 지방 이전 전에 수도권에 본사를 임차하여 정주한 기관은 총 38개이다. 정부는 종전부동산 매각을 통해 지방 이전 비용을 충당하였으며, 종전부동산 매각액 및 평가액은 총 16조 8,281억원이다. 본사 임차 기관의 임차료 총액은 898.2억원이다.[27]

[이전 대상 공공기관 종전부동산 유형]

(단위: 개, 억원)

이전 지역	기관수	본사 소유 기관		본사 임차 기관	
		기관수	종전부동산 매각액(평가액)	기관수	기존 임차료
합계	105	67	168,281	38	898.2
부산	11	5	3,795	6	346
대구	8	8	7,797	0	-
광주전남	13	12	114,651	1	0
울산	7	5	3,359	2	34
강원	9	7	5,908	2	0
충북	8	6	3,889	2	268
전북	5	4	6,278	1	0
경북	5	5	4,368	0	-
경남	10	6	9,850	4	29.7
제주	1	1	6,340	0	-
세종	19	6	1,931	13	86.5
개별	9	2	115	7	134

주: 1. 미매각 종전부동산 평가액 포함
2. 임차료가 0원인 기관은 국가 및 공공기관 등에 임차료 없이 무상으로 정주하였음
3. 임차료는 임대보증금, 관리비, 임차료 포함

자료: 각 기관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26) 제43조(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①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이전비용의 조달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종전부동산의 매각시기 및 방법
2. 종전부동산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지 못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 및 활용방안

27) 임차료는 임대보증금, 관리비, 임차료 포함

지방 이전한 공공기관 중 종전부동산 매각 액수가 큰 기관은 다음과 같다. 한국전력공사는 삼성동 본사 부지를 10조 5,500억원에 매각하였으며, 한국도로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는 경기도 본사 건물을 각각 3,016억원, 2,614억원에 매각하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본사 중 경기도 분당 정자 사옥만 2,421억원에 매각하였으며, 한국부동산원 2,328억원, 한국식품연구원 2,129억원, 한국산업인력공단 1,765억원, 한국가스공사 1,348억원, 한국소비자원 1,270억원, 영화진흥위원회 1,265억원, 국민건강보험공단 1,191억원, 국토연구원 710억원의 금액으로 매각 완료하였다.

[지역별 종전부동산 매각대금 상위 기관]

(단위: 억원, 천m^2)

기관명	기존	이전	종전부동산 매각금액	종전부동산 규모
한국전력공사	서울	광주·전남	105,500	97.26
한국도로공사	경기	경북	3,016	25
한국농어촌공사	경기	광주·전남	2,614	2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	경남	정자 사옥: 2,421	80
한국부동산원	서울	대구	2,328	19.56
한국식품연구원	경기	전북	2,129	112.8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	울산	1,765	22
한국가스공사	경기	대구	1,348	51.81
한국소비자원	서울	충북	1,270	30.16
영화진흥위원회	서울	부산	1,265	52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	강원	1,191	33.7
국토연구원	서울	세종	710	20

자료: 각 기관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종전부동산이 미매각된 기관 중 일부는 연기금 자산으로 편입되었다. 공무원연금공단(미매각 6,340억원)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미매각 3,286억원), 국민연금공단(미매각 2,320억원)은 연기금에 해당 종전부동산이 자산으로 편입되어 수익부동산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미매각 종전부동산이 전용되어 활용되고 있는데, 한국관광공사의 종전부동산은(미매각 1,649억원) 문화창조벤처복합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신용보증기금의 종전부동산은(미매각 849억원) 청년혁신타운, 대한법률

구조공단의 종전부동산은 지사(서울중앙지부)로 활용되고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미매각 668억원)은 종전부동산을 고용노동부에 기부채납하였으며 한국교육개발원(미매각 1,005억원)은 수십차례 매각 유찰 후 종전부동산을 공실로 유지하고 있다.

[종전부동산 미매각 현황]

(단위: 천m^2, 억원)

기관명	기존	이전	면적		미매각금액 (공시지가)
			부지	건물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	경남	38	72	오리 사옥: 5,801
공무원연금공단	서울	제주	12	45	6,340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서울	광주·전남	10	42	3,286
국민연금공단	서울	전북	8	12	2,320
신용보증기금	서울	대구	3	36	849
한국관광공사	서울	강원	2.8	26.6	1,649 (감정평가액)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천	울산	52	36	668
한국교육개발원	서울	충북	60	12	1,005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	경북	0.62	2.39	237

자료: 각 기관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종전부동산 미매각 사유]

기관	미매각 사유
한국토지주택공사	오리 사옥 : 최초 매각공고('10년) 후 16차례 유찰되었으며, 노후계획도시정비 관련 오리역세권 복합개발을 통한 매각방안 추진 중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기금 자산으로 기금운용 수익 창출에 활용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단 종전부동산은 사립학교교직원 부담금으로 적립한 기금의 자산(수익형 부동산)으로서 기금운용 수익 창출과 교직원 복지시설 제공을 위한 핵심 자산임에 따라 매각대상에서 제외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기금 자산으로 기금운용 수익 창출에 활용
신용보증기금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에서 신용보증기금 사옥을 활용한 '마포청년혁신타운' 조성방안이 정부안으로 공식 결정되어 신용보증기금의 종전부동산이 매각대상에서 제외
한국관광공사	국토교통부 기획총괄과-2160(2015.04.03)호 의거 문화창조벤처 복합공간으로 운영 중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에 기부채납
한국교육개발원	매각부지 중 일부가 토지규제대상지역(개발제한, 도시계획시설, 토지거허가구역, 비오톱1등급)으로 지정되어 매각 공고 후 42차례 유찰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 중앙지부(대한법률구조공단)로 활용

자료: 각 기관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이들 기관에서는 종전부동산 미매각으로 인한 부족분을 차입금, 자체보유자금, 국비, 다른 종전부동산 매각의 형태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차입금으로 부족분을 충당하였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광주 지부 등 다른 종전부동산을 매각하여 이전비용을 전액 충당하였으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은 연기금으로 이전비용을 전액 충당하였다. 그 외 한국관광공사, 신용보증기금,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자체보유자금으로 충당하고 있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국비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이들 기관 중 한국교육개발원과 같이 차입금으로 종전부동산 미매각대금[28]을 충당하고 있는 기관의 경우, 매각 지연이 장기화되어 차입금에 대한 이자부담이 가

28) 미매각금액은 2025년 기준

중되고 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이 일부 자체보유자금으로 이전 비용을 충당한 기관은 고유사업에 투자할 재원이 감소하게 되어, 서비스 제공이 미진해질 우려가 있다.

[종전부동산 미매각금액으로 인한 부족분 충당 현황]

(단위: 억원, %)

기관명	지역	총이전비용	미매각금액	비용충당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4,322	5,801	다른 종전부동산 매각(2,421억원+자체보유자금
공무원연금공단	제주	479	6,340	다른 종전부동산 매각(479억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광주·전남	298	3,286	자체보유자금(사학연금기금)
국민연금공단	전북	1,858	2,320	자체보유자금(국민연금기금)
신용보증기금	대구	1,165	849	자체보유자금
한국관광공사	강원	919	1,649	자체보유자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울산	1420.4	668	국비
한국교육개발원	충북	797.2	1,005	차입금(차입금 652억원 이자비용 151억원)
대한법률구조공단	경북	141.4	237	자체보유자금

자료: 각 기관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한편, 공무원연금공단의 경우 총 이전비용 479억원을 기금 자산으로 지불하고 본사 사옥(2016년 기준 3,542억원)은 2015년 기금 자산으로 편입하였으며 이 중 서울상록회관(구. 본사 사옥) 면적의 78%를 임대하여 수익창출 하고 있으며 2026.1월말 기준 임대면적은 34,642.53㎡, 공단 서울지부 사무공간 등으로 9,748.11㎡을 활용하고 있다. 본사 임대면적 수익률이 기금 전체 수익률과 대체투자수익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으며, 기금운용수익 창출을 위해 본사 건물을 기금 산하로 편입하였기 때문에 수익률을 좀 더 개선할 필요가 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총 이전비용 298억원을 기금 자산으로 지불하고 본사 사옥(2016년 기준 1,647억원)은 2014년 기금 자산으로 편입하였다. 현재 본사

사옥(TP타워) 전체가 리츠 출자방식을 통한 간접 투자로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수익률이 타 기관에 비해 높지만 기금 전체 수익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국민연금공단은 총 이전비용 1,858억원을 기금 자산으로 지불하고 본사 사옥(2016년 기준 1,445억원)은 2015년 기금 자산으로 편입하였다. 2026.3월 현재 공단 고유업무를 위한 부서(송파지사)와 장애심사업무를 위한 특수부서(장애심사센터) 등이 활용(6,845.9㎡)되고 있으며 건물 전체 연면적(12,277.88㎡) 중 고유업무 공간을 제외한 일부(5,431.98㎡)는 임대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이는 전액 국민연금기금으로 적립되어 국민연금기금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다만 연기금 자산으로 편입된 본사 사옥의 임대 수익률은 기금 전체 수익률과 대체투자수익률과 비교하였을 때 수익률이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연기금 수익률(종전부동산 포함)]

(단위: %)

기관	수익률	2021	2022	2023	2024	2025
공무원연금공단	기금	8.1	△4.4	9.3	6.3	12.7
	대체투자	18.5	10.2	7.2	4.6	1.4
	종전부동산	1.6	1.6	1.8	1.9	1.9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기금	11.95	△7.75	13.46	11.63	18.93
	대체투자	25.03	8.28	6.43	14.24	7.82
	종전부동산	10.90	10.60	10.30	10.70	15.30
국민연금공단	기금	10.8	△8.2	13.6	15.0	18.8
	대체투자	23.8	8.9	5.8	17.1	8.0
	종전부동산(A)	0.54	0.56	0.53	0.57	0.76
	종전부동산(B)	1.41	1.53	1.20	1.29	1.72

주: 1. 공무원연금공단 본사 사옥 임대수익률 = (임대수익/본사 사옥 평가액)×100, 임대면적 기준
2.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기금수익률, 대체투자(부동산 등) 수익률은 시간가중수익률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종전부동산 수익률은 사학연금 본사 사옥을 재건축한 TP타워는 리츠 출자에 의한 간접투자방식으로 리츠사에 30년에 걸쳐 위탁 운용하는 사업이며, 본 수익률은 CoC(Cash on Cash, 연간순이익/투자원본) 수익률임
3. 국민연금공단 종전부동산 수익률은 본사 매출액(임대료, 관리비 등)에서 본사 사옥평가액을 나눈 값으로, 종전부동산(A)는 전체 면적을 고려한 수익률이며, 종전부동산(B)는 전체 면적 중 자체 사용면적을 제외한 임대면적만을 고려한 수익률임

자료: 각 기관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라. 소결

제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으로 105개 기관이 2019년까지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각 지역별로 기능군에 맞춰 이전하였다. 지역별로 부산(영화진흥, 해양수산, 금융산업) 11개, 대구(가스산업, 산업진흥, 교육학습) 8개, 광주·전남(전력산업) 13개, 울산(산업안전, 에너지산업) 7개, 강원(광업진흥, 건강생명, 관광) 9개, 충북(인력개발, 과학기술, 정보통신) 8개, 전북(국민연금, 식품연구) 5개, 경북(도로교통) 5개, 경남(주택건설, 산업기술, 중소기업) 10개, 제주(국세관리, 국제교류) 1개, 세종(국책연구기관 등) 19개, 개별 이전 10개 기관이 이전 완료하였다. 기관당 평균 이전비용는 874억원이고, 청사신축비에 713억원, 기관이전비에 74.8억원, 임대보증금 등 기타 지원에 86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추후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종전부동산 매각 지연에 따른 기관의 차입금 이자 증가로 인한 기관 부채 증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획 단계에서 종전부동산 매각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과정에서 종전부동산 매각 지연, 국비 지원 지연 등으로 신규 청사 건립비 및 이주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이전비용을 차입한 기관은 16개이며 총 이전비용은 1조 6,034억원이며 차입금 규모는 4,735억원이며, 이자 비용은 343억원 발생하였다. 이 중 한국교육개발원은 현재 종전부동산이 미매각되었으며 총 151억원의 이자비용이 발생하였으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68억원의 이자비용이 발생하였다. 종전부동산 미매각 시 차입금과 출연금 등을 통해 이전비용을 마련해야 하며 특히 차입금의 경우 이자비용이 발생하므로, 지방이전계획 수립 시 기관의 종전부동산 매각이 지연되지 않도록 계획 단계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정부지원예산으로 청사를 건립한 이전공공기관의 경우, 업무시설 연면적은 지침 기준(1인당 연면적 56.53㎡)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지침」에서는 청사규모 산정기준으로 '업무시설은 1인당 연면적 56.53㎡ 범위내로 산정하되, 자체재원 조달이 확실한 경우 등 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개발계획상 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예외를 인정하였다. 따라서 해당 기관은 지침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청사면적 증설 및 청사 이용인원 감축이 발생해 지침에 명시된 연면적이 초과될 시, 이전공공기관 관리카드에 해당 부분을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3대 연기금의 경우 연기금에 편입된 본사 사옥 임대수익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의 경우 본사 건물을 연기금 자산으로 편입하여, 임차 수익을 연기금 수익으로 산입하고 있다. 따라서 연기금 수익률 혹은 대체투자 수익률에 맞춰 편입된 본사 임차 수익률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나 2021~2025년 3대 연기금 본사 임대수익률은 기금 수익률에 비해 낮으며, 대체투자수익률과 비교해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낮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일부 기관은 편입된 본사 건물 일부를 고유업무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연기금 수익 증대를 위해 연기금 자산으로 편입한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임대수익을 좀 더 개선할 필요가 있다.

2 이전 지역 주요 변화 분석

가. 공공기관 이전 지역 주요 추이 분석

(1)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이행 현황

혁신도시 조성 추진 계획과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은 2003년부터 관련 논의가 시작되어 2005년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이전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혁신도시 조성계획과 이전공공기관 계획은 병행 추진되었으며, 2007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후 2012년 조성된 혁신도시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추진되었으며 1단계 이전을 완료한 2017년 말 관련 법령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하여 공공기관 이전을 포함한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관리 법령 체계를 마련하였다. 이후 2018년 이후 수도권에 잔류한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시즌 2 추진방안이 발표되었으며, 혁신도시 조성 및 관리 정책을 담당하는 혁신도시추진단(국토교통부)이 출범하였으며 2019년 말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완료되었다.

[혁신도시 조성 추진경과]

일자	구분	주요 내용
2003년 6월	정책구상 발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논의 시작
2004년 8월	이전원칙 설정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기본원칙 및 추진방향 발표
2005년 6월	이전공공기관 확정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 - 혁신도시정책 본격 추진
2005년 8월	전담조직 설치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現 국토교통부) 설치
2005년 12월	입지선정 완료	10개 혁신도시 입지선정 완료 (시 · 도별 입지선정위원회)
2007년 1월	제도적 기반 구축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2007년 4월	혁신도시 지구지정	10개 혁신도시 지구지정 완료
2007년 5월	개발계획 수립	혁신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수립 (2008.12. 완료)
2007년 9월	기반조성 착공	혁신도시별 부지조성 공사 착공
2007년 12월	지방이전계획 승인	이전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 승인 시작
2009년 6월	발전방안 수립	'혁신도시 발전방안' 수립

일자	구분	주요 내용
2012년 1월	지방이전 개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혁신도시 이전) 개시
2017년 12월	법 개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 ('18.3.27. 시행)
2018년 2월	시즌2 발표	'혁신도시 시즌2 추진방안' 발표(관계부처 합동)
2018년 3월	추진단 출범	'혁신도시발전추진단' 출범
2019년 11월	지역인재 광역화 등	대전·충청권 지역인재 광역화, 지역인재 기이전 소급적용을 위한 '혁신도시법' 개정 ('20.5.27. 시행)
2019년 12월	지방이전 완료	공공기관 지방이전 완료
2020년 2월	거점화 전략	혁신도시 지역경제 거점화 전략 마련
2020년 4월	혁신도시 지정 기반 마련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신청 기반 마련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시도에서 지정 신청 가능)
2020년 10월	혁신도시 추가지정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2021년 1월	중기부 이전고시	기상청 대전이전 추진 - 중기부의 세종시 이전으로 기상청 재배치
2021년 10월	기상청 등 이전고시	기상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특허전략 개발원을 대전 이전공공기관으로 지정
2022년 8월	방위사업청 이전고시	방위사업청을 대전 이전공공기관으로 지정
2023년 5월	한국산업은행 이전고시	한국산업은행을 부산 이전공공기관으로 지정
2023년 12월	기상청 등 1단계 이전 완료	기상청, 방위사업청 등 5개 공공기관 1단계 이전 완료

자료: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홈페이지

혁신도시 조성 추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전체 109개 기관[29]이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총 47,908명의 인원이 이전을 완료하였다. 전입 세대 수는 95,339세대 증가하였으며, 전입 인원은 234,684명 증가하였다. 미혼독신을 포함한 가족동반이주의 경우 이전 인원 기준 부산 86%, 제주 83.2%, 전북 77.6%, 광주·전남 76.1%, 대구 75.7%, 울산 73.3%, 강원 71.8%, 경남 70.2%, 충북 50.5%, 경북 51.3%이며, 편의시설은 7,713개[30]이다.

29) 소관기관 포함 110개 기관이 이전 완료하였으며, 재외동포재단이 해산하여 109개 기관임

30) 병(의)원, 약국, 마트 및 편의점, 학원, 음식점, 문화시설, 은행 등

[혁신도시 정주 현황(2025년 12월 기준)]

(단위: 개, 명, 세대, %, 점)

구분	기관수	이전 인원	전입한 주민등록인구		직원이주현황	편의시설
			전입 세대	전입 인원		
합계	109	47,908	95,339	234,684	71.0	7,733
부산	13	4,086	2,440	7,281	86.0	1,271
대구	10	3,788	8,201	16,714	75.7	705
광주전남	16	7,871	16,613	39,451	76.1	1,064
울산	9	4,134	7,464	19,410	73.3	355
강원	11	7,271	12,241	29,437	71.8	862
충북	11	3,785	12,905	31,821	50.5	906
전북	12	5,995	11,173	29,004	77.6	969
경북	10	5,129	9,588	23,436	51.3	644
경남	11	4,988	12,877	33,734	70.2	917
제주	6	861	1,837	4,396	83.2	40

주: 1. 세종은 혁신도시가 아니어서 관련 자료가 없음
2. 직원이주현황은 미혼독신을 포함한 가족동반이주율

자료: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홈페이지

한편, 혁신도시별로 당초 계획한 정주여건이 실제로 적정히 완료되었는지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은 총 87,313호를 건설하여 당초 계획 92,599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지자체별로 광주 전남(17,920호 중 15,634호 조성), 충북(15,470호 중 13,238호 조성), 경북(9,630호 중 8,862호 조성)이 해당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초·중·고는 경북(7개소 중 6개소), 경남(7개소 중 6개소), 유치원은 대구(5개소 중 4개소), 어린이집은 부산(25개소 중 20개소), 대구(21개소 중 18개소), 광주·전남(53개소 중 50개소), 강원 (23개소 중 21개소), 전북(30개소 중 24개소), 경남(27개소 중 22개소)가 목표를 미달하였다.[31]

31) 민간 및 직장어린이집 설치계획은 민간사업자의 인·허가 접수에 따라 유동적임

[혁신도시 정주여건 세부 현황(2025년 12월 기준)]

(단위: 호, 개소)

구분	공동주택			학교(초중고)			유치원			어린이집 (국공립·민간·직장)		
	계획	현황	달성 여부	계획	현황	달성 여부	계획	현황	달성 여부	계획	현황	달성 여부
합계	92,599	87,313	x	62	60	x	45	44	x	258	242	x
부산	2,304	2,304	o	1	1	o	2	2	o	25	20	x
대구	7,322	7,322	o	5	5	o	5	4	x	21	18	x
광주전남	17,920	15,634	x	10	10	o	8	8	o	53	50	x
울산	6,048	6,048	o	7	7	o	3	3	o	19	20	o
강원	10,462	10,462	o	4	4	o	5	5	o	23	21	x
충북	15,470	13,238	x	8	8	o	4	4	o	26	33	o
전북	9,236	9,236	o	5	5	o	6	6	o	30	24	x
경북	9,630	8,862	x	7	6	x	6	6	o	26	26	o
경남	12,293	12,293	o	7	6	x	5	5	o	27	22	x
제주	1,914	1,914	o	8	8	o	1	1	o	8	8	o

주: 세종은 혁신도시가 아니어서 관련 자료가 없음
자료: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홈페이지

혁신도시별 기업입주는 연평균 38.1%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2018년 693개소에서, 2024년 4,813개소로 기업입주가 증가하였다. 광주·전남은 2024년 1,171개소로 가장 많은 기업들이 입주하였으며 충북(연평균 73.9%), 제주(연평균 70%)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업 입주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혁신도시별 기업입주 분포(2018~2024)]

(단위: 개소,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 증감율
합계	693	1,425	1,633	2,047	2,963	3,765	4,813	38.1
부산	117	187	167	176	191	240	254	13.8
대구	110	148	146	151	156	151	157	6.1
광주전남	173	278	310	447	736	986	1,171	37.5
울산	34	45	78	147	257	392	450	53.8
강원	40	48	50	63	106	338	491	51.9
충북	24	55	75	87	108	118	664	73.9
전북	2	190	198	235	257	260	272	7.4
경북	23	40	61	75	78	107	128	33.1
경남	170	434	491	509	486	493	500	19.7
제주	0	0	87	157	588	680	726	70.0

주: 1. 세종은 혁신도시가 아니어서 관련 자료가 없음
2. 전북은 2019년, 제주는 2020년부터 연평균 증감율을 계산하였음

자료: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홈페이지

산학연 클러스터는 공공기관과 연계된 기업·대학·연구소가 상호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역혁신을 일으키도록 조성된 용지[32]로 2,946천m^2으로 혁신도시 전체의 6.6% 규모이다. 클러스터 부지는 2024년 기준 계획 대비 81.8%, 입주율은 분양 면적 대비 56.6%로 여전히 정체이다.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는 국토교통부 '시설 입지 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건축물 용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분양률 및 입주율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2) 혁신클러스터 용지 = 이전대상 공공기관 용지 +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혁신도시별 산학연 클러스터 분양 및 입주현황(2024)]

(단위: 개, m^2, %)

구분	필지수	면적	필지 분양	
			계획 대비 분양률	분양 면적 대비 입주율
합계	457	2,946	81.8	56.6
대구	148	858	82.5	88.1
광주전남	84	415	92.1	43.4
울산	13	141	83.0	55.6
강원	13	112	100	45.6
충북	68	543	62.4	37.2
전북	18	227	89.9	58.3
경북	46	283	64.0	39.8
경남	40	216	100	40.7
제주	27	151	100	34.5

주: 1. 세종은 혁신도시가 아니어서 관련 자료가 없음
2. 부산은 산학연 클러스터 미조성(기존에 개발된 도심지역을 혁신도시로 지정)
자료: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홈페이지

격년 단위로 수행하는 혁신도시 정주여건 만족도 조사[33]에 따르면, 종합 정주여건은 69.4점으로 목표치인 70점을 소폭 미달하였다.[34] 주거환경은 74.8점으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교통환경이 62.3점으로 만족도가 낮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보육·교육환경(66.3점)은 목표한 생활 SOC 조성 목표(초·중·고, 유치원, 어린이집 등)를 거의 달성했음에도 좀 더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편의·의료서비스 환경(68.2점) 또한 시설 접근성은 증가하였지만(편의시설 2018년 5,988개소 → 2024년 7,733개소) 실제 체감 편의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여가활

33) 2024년 혁신도시 정주여건 만족도 조사는 1. 전국 혁신도시 거주자 대상 정주여건 만족도 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주요 관심사항 및 개선사항을 파악하고, 2. 정주여건 주요 통계(인구, 주택, 학교, 편의시설 등) 시계열 자료 분석을 통한 정주인프라 개선과 만족도의 상관관계 파악을 위해 수행되고 있임. 전국 혁신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00표본을 대상으로 이주환경, 주거환경, 편의서비스 환경, 의료복지서비스 환경, 교통환경, 보육·교육환경, 여가활동환경, 전반적 만족도 등을 조사함

34) 「제2차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2023~2027)」 내 목표치임

동환경(65.4점)의 경우 준공 완료한 지자체별 복합혁신센터[35] 도입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10개 혁신도시 중 정주요건 만족도를 달성한 지역은 부산, 울산, 경남, 강원 등 4개 지역이며, 5개 범주 중 4개 이상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지역은 대구, 광주·전남, 충북, 경북, 제주 등 5개 지역이다.

[혁신도시 정주여건 만족도(2024년 조사)]

(단위: 점)

구분	정주여건 (종합)	주거환경	편의·의료서비스 환경	교통환경	보육·교육 환경	여가활동 환경
전국	69.4	74.8	68.2	62.3	66.3	65.4
부산	75.2	77.7	75.1	72.1	71.7	72.0
대구	67.5	72.8	67.4	63.0	61.6	62.4
광주전남	66.2	70.4	64.3	58.5	63.9	60.1
울산	71.3	77.3	70.2	63.3	70.4	66.0
강원	71.5	76.9	70.5	61.3	66.8	66.1
충북	66.6	73.3	64.4	58.2	65.2	62.9
전북	69.4	75.8	70.3	61.1	67.3	66.4
경북	69.2	79.3	66.1	63.7	64.9	66.2
경남	72.5	79.6	72.8	67.2	69.7	69.1
제주	67.2	71.3	61.4	58.0	62.2	67.4

주: 세종은 혁신도시가 아니어서 관련 자료가 없음
자료: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홈페이지

(2) 이전지역 인구 및 지역내총생산 현황

2015년 대비 2024년 전국 인구수는 1.44% 증가하였으며, 공공기관이 이전한 혁신도시 지역 시군구별 중 인구가 증가한 5개 지방자치단체(전남 나주, 강원 원주, 충북 진천, 제주 서귀포, 세종특별시)를 제외하고 9개 지방자치단체(시군구 포함)에서 인구는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인구가 감소한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 중 70여개

35) 정주인프라(문화, 체육, 복지)와 창업지원공간을 융합한 복합혁신센터 11개소(혁신도시별 1개소, 증축 1개소 포함) 건립

기관이 이주한 2015년 대비 2024년 인구도 감소하였으며, 혁신도시 이주를 완료한 2019년 대비 인구도 감소하였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부산 영도구(2015년 대비 △17.5%, 2019년 대비 △9.4%), 부산 남구(2015년 대비 △8.3%, 2019년 대비 △6.7%), 부산 해운대구(2015년 대비 △10.5%, 2019년 대비 △6.8%), 대구 동구(2015년 대비 △1%, 2019년 대비 △0.4%), 울산 중구(2015년 대비 △14%, 2019년 대비 △7.1%), 전북 전주시(2015년 대비 △1.3%, 2019년 대비 △1.9%), 전북 완주군(2015년 대비 △10.8%, 2019년 대비 △4.0%), 경북 김천시(2015년 대비 △1.0%, 2019년 대비 △2.7%), 경남 진주시(2015년 대비 △1.0%, 2019년 대비 △2.3%)이다. 혁신도시(시군구 및 세종 포함[36]) 전체 증가율은 2015년 대비 전국 인구증가율을 상회하였지만(3.2%), 2019년 혁신도시 이전이 완료된 이후 인구는 소폭 감소하여(△0.6%)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인구 전입 추세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이전지역 시군구별 인구 및 인구증가율]

(단위: 만명, %)

구분	시군구	2015 (A)	2016	2017	2018	2019 (B)	2020	2021	2022	2023	2024 (C)	증가율	
												C/A	C/B
전국	-	5,107	5,127	5,142	5,163	5,178	5,183	5,174	5,169	5,177	5,181	1.44	0.05
부산	영도구	13.0	12.7	12.4	12.1	11.8	11.3	11.3	11.0	10.9	10.7	△17.5	△9.4
부산	남구	28.4	28.0	27.6	28.3	27.9	26.9	26.5	25.8	25.8	26.0	△8.3	△6.7
부산	해운대구	40.9	40.8	39.9	39.6	39.3	39.0	38.6	37.7	37.1	36.6	△10.5	△6.8
대구	동구	34.0	34.2	34.0	34.2	33.7	33.3	33.3	33.3	33.6	33.6	△1.0	△0.4
광주 전남	나주	9.3	9.8	10.6	11.0	11.2	11.3	11.5	11.5	11.7	11.8	27.5	5.3
울산	중구	23.7	23.7	23.3	22.7	21.9	21.4	21.0	20.5	20.4	20.4	△14.0	△7.1
강원	원주시	33.1	33.7	34.1	34.4	34.9	35.2	35.7	36.2	36.5	36.6	10.5	4.7
충북	진천군	7.1	7.4	7.9	8.4	8.8	9.0	9.2	9.3	9.4	9.7	35.7	10.3
전북	전주시	65.8	65.8	65.7	65.9	66.2	66.7	67.0	66.6	65.8	65.0	△1.3	△1.9
전북	완주군	36.7	36.5	36.2	34.8	34.1	34.3	34.2	33.9	33.3	32.7	△10.8	△4.0
경북	김천시	13.8	14.0	14.1	14.0	14.0	13.9	13.8	13.8	13.7	13.6	△1.0	△2.7
경남	진주시	35.0	35.3	35.3	35.2	35.4	35.2	35.3	35.1	34.8	34.6	△1.0	△2.3
제주	서귀포	15.4	16.1	16.9	17.5	17.7	17.9	17.9	18.1	18.1	18.1	17.6	2.0
세종	-	20.4	24.3	27.7	31.2	33.8	35.4	36.6	38.3	38.6	39.0	91.2	15.4
합계		376.4	382.2	385.8	389.4	390.8	390.8	392.0	390.9	389.9	388.3	3.2	△0.6

자료: 국가데이터처 KOSIS 통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36) 세종은 혁신도시가 아님

공공기관이 이전한 혁신도시 지역 시군구별 지역내총생산(GRDP)은 2015~2022년까지 증가추세를 보였다. 다만 전국 단위 GRDP 증가율[37](2015년 대비 2022년 33.5%, 2020년 대비 2022년 12.9%)과 비교하였을 때 일부 지자체의 경우 증감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70여개 기관이 이전한 2015년 대비 2022년 GRDP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지자체는 원주시(30.4%), 전주시(28.8%), 완주군(19.5%)이며, 혁신도시 이주를 완료한 2020년 대비 2022년 GRDP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지자체는 대구 동구(2.1%), 나주시(12.1%), 원주시(12.3%), 진천군(8%), 전주시(4.8%), 완주군(12.6%), 진주시(10.8%), 제주 서귀포시(11.4%)이다.

[공공기관 이전지역 시군구별 GRDP 및 증가율]

(단위: 조원, %)

구분	시군구	2015 (A)	2016	2017	2018	2019	2020 (B)	2021	2022 (C)	증가율	
										C/A	C/B
전국	-	1,743	1,835	1,936	2,008	2,043	2,062	2,224	2,328	33.5	12.9
부산	영도구	2.07	2.39	2.53	2.89	2.71	2.94	2.99	3.52	69.4	19.6
부산	남구	5.68	5.47	5.82	5.78	5.66	6.28	8.19	8.76	54.2	39.5
부산	해운대구	7.52	7.98	8.92	9.59	10.30	9.84	10.47	11.10	47.7	12.8
대구	동구	-	-	-	-	-	8.18	8.32	8.36	-	2.1
광주전남	나주	3.84	3.98	4.24	4.21	4.57	4.85	5.19	5.44	41.8	12.1
울산	중구	-	-	-	-	-	3.61	3.65	4.28	-	18.4
강원	원주시	8.64	9.12	9.76	10.40	10.57	10.03	10.57	11.26	30.4	12.3
충북	진천군	5.91	6.52	7.16	7.60	7.73	8.23	8.58	8.90	50.5	8.0
전북	전주시	13.37	14.06	14.93	15.69	16.27	16.43	16.78	17.21	28.8	4.8
전북	완주군	5.00	4.98	5.23	5.20	5.21	5.31	5.71	5.97	19.5	12.6
경북	김천시	-	-	-	-	-	5.64	5.85	6.49	-	15.0
경남	진주시	-	-	-	-	-	8.34	8.70	9.24	-	10.8
제주	서귀포	-	-	-	-	-	5.60	5.99	6.24	-	11.4
세종	-	9.96	10.96	11.94	12.43	13.37	14.01	15.46	16.06	61.2	14.6

주: 1. 전국 및 세종 데이터는 GRDP(시도) 데이터 내 지역내총생산(시장가격) 명목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그 외 지자체는 GRDP(시군구) 데이터를 활용하였음
2. 일부 지자체는 2020년부터 데이터가 존재하여 가용 가능한 데이터 활용
자료: 국가데이터처 KOSIS 통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37) 명목지표임

나. 이전공공기관 이주 현황 등

(1) 이주지역 본사 현원 현황

이전공공기관은「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라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이전대상 직원수를 포함한 이전의 규모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있다. 각 기관별 제출 자료에 따르면 전체 계획 인원 41,271명 중 본사에 근무하는 현원은 48,934명(117.2%)으로 당초 계획을 초과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중 경북(92.3%)을 제외하고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계획 대비 초과하였다. 계획 대비 현원 규모가 초과된 이유는 계획 수립 이후 이주 지역 내 기관 증원 영향 등에 기인한다.[38]

[본사 직원 현황(2025년 기준)]

(단위: 명, %)

구분	기관수	계획인원(A)	본사 현원(B)	계획 대비 본사 현원 비율(B/A)
합계	104	41,271	48,934	118.6
부산	10	3,045	3,799	106.4
대구	8	3,178	3,550	111.7
광주전남	13	5,959	6,984	117.2
울산	7	2,887	4,121	142.7
강원	9	5,877	7,037	119.7
충북	8	2,655	3,264	122.9
전북	5	2,315	2,572	111.1
경북	5	4,369	4,032	92.3
경남	10	4,223	5,081	120.3
제주	1	276	322	116.7
세종	19	3,787	4,197	110.8
개별	9	2,700	3,975	148.4

주: 1. 각 지역으로 이전한 기관 인원과 신규채용인원을 합한 것으로(정부 소속기관 등은 미포함) 본사 현원 기준이라 이전인원보다 많을 수 있음
2. 계획인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된 지방이전계획상 목표인원임
3. 부산 해양수산개발원은 자료미제출

자료: 각 기관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8) 소관기관을 포함한 자료에 따르면, 미혼독신을 포함한 가족동반이주의 경우 이전 인원 기준 부산 86%, 제주 83.2%, 전북 77.6%, 광주·전남 76.1%, 대구 75.7%, 울산 73.3%, 강원 71.8%, 경남 70.2%, 충북 50.5%, 경북 51.3%임

이전공공기관 중 최종승인 단계에서 이전하기로 확정된 계획 인원 대비 현재 본사에 근무하고 있는 현원이 감소한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감소폭이 가장 큰 한국전력기술(주)의 경우 임직원이 2,172명, 기간제근로자 등 229명, 자회사 179명, 총 2,580명으로 299명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계획 대비 인원은 89.6%이다. 한국전력기술(주)에 따르면, 원전 사업 규모가 축소되면서 원자로설계개발본부 및 협력업체 인원 감소 영향으로 계획 대비 정주율이 100%에 미달하였다고 언급하였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한국광물자원공사(550명)과 한국광해관리공단(186명) 합산 이전 계획 인원 736명 중 현재 해외 광물자원 개발 등으로 인한 경영 악화로 조직 규모가 축소되어 그 결과 본사 현원이 530명으로 정주 계획인원을 미달하였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121명 미달), 한국식품연구원(61명 미달), 정보통신정책연구원(33명 미달)은 본사 비정규직 계약 기간 만료 이후 미채용으로 현원이 감소되었다고 언급하였다.

[계획 이전 인원 대비 본사 근무 현원이 감소한 주요 기관]

(단위: 명, %)

기관명	지역	계획 인원 (A)	본사 현원 (B)	차이 (B-A)	계획 대비 본사현원 비율 (B/A)	계획 대비 본사 현원 비율 저조 사유
한국전력기술(주)	경북	2,879	2,580	△299	89.6	원전사업 규모 축소로 원자로설계개발본부, 협력업체 인원 채용 감소
한국광해광업공단	강원	736	530	△206	72.0	경영 악화로 조직 규모 축소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세종	331	210	△121	63.4	비정규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탁연구사업 규모 감소) 지방으로 이전하기 전과 대비해서 이전 후 '수탁연구사업 규모 감소'에 따른 1년 이내 계약 연구보조원(RA) 채용 인원 감소 (비정규직 인원 상한 제한 관리) 비정규직 과다 운용을 제한하는 정부 및 국회의 정책 방향에 부응하여 '연간 연구보조원 인원 상한 관리제' 도입 실시
한국식품연구원	전북	505	444	△61	87.9	본사 비정규직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현원 감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충북	217	184	△33	84.8	비정규직 계약기간 만료 등

자료: 각 기관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이전공공기관 중 최종승인 단계에서 이전하기로 확정된 계획 인원 대비 현재 본사에 근무하고 있는 현원이 증가한 주요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968명 증가), 근로복지공단(705명 증가), 한국수력원자력(주)(618명 증가), 주택도시보증공사(261명 증가), 한국고용정보원(252명 증가), 한국국토정보공사(206명 증가), 한국교통안전공단(201명 증가), 한국토지주택공사(188명 증가), 한국가스공사(167명 증가), 한국전력거래소(159명 증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105명 증가), 공무원연금공단(46명 증가) 등이다. 대부분 과업 증가에 따른 조직규모 증가 등으로 인해 현원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계획 이전 인원 대비 본사 근무 현원이 증가한 주요 기관]

(단위: 명, %)

기관명	지역	계획 인원 (A)	본사 현원 (B)	차이 (B-A)	계획 대비 본사 현원 비율 (B/A)	계획 대비 본사 현원 비율 초과 사유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원	1,301	2,269	968	174.4	본사 조직 규모 증가로 제2청사 증설 등 이주인원 증가
근로복지공단	울산	400	1,105	705	276.3	조직 규모 증가
한국수력원자력㈜	개별	1,100	1,718	618	156.2	원전 국내건설 및 해외수출 등 다수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본사 인력규모 증가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	286	547	261	191.3	신입직원 채용 증가로 인한 본사 조직 규모 증가 BIFC 사무실 2개층 추가 매입(2018.8) 및 BIFCⅡ 사무실 2개 층 추가 매입(2026.1)
한국고용정보원	충북	280	532	252	190.0	사업 확장 등 사업규모 확대에 따른 조직규모 증가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	228	434	206	190.4	사업확장 등 본사 조직 및 규모 증가 공간정보 및 정보화 사업 증가, 이전 당시 4실 2단 9부에서 6실 24처 1센터로 운영부서 증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북	318	519	201	163.2	공단의 사업규모 확대에 따른 이전인원 증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1,660	1,848	188	111.3	사업확장(3기 신도시, 임대주택 물량확대 등)에 따른 조직규모 증가

(단위: 명, %)

기관명	지역	계획 인원 (A)	본사 현원 (B)	차이 (B-A)	계획 대비 본사 현원 비율 (B/A)	계획 대비 본사 현원 비율 초과 사유
한국가스공사	대구	848	1,015	167	119.7	정부정책 이행 및 안전·안정적 천연가스 수급체계 구축 및 공급사업을 위한 수소 등 신규사업 추진, 수급안정성 확보를 위한 해외사업 강화 및 안전관리체계 고도화 인력 반영
한국전력거래소	광주 전남	305	464	159	152.0	본사이전 당시보다 조직·정원 규모가 증가하여 이주인원 증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종	239	344	105	143.9	2014년 이전 이후 사업확대 (정부투자분석센터, 인구정책 평가센터 신설 등)에 따른 현원 증가 2019년 시설관리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현원 증가
공무원연금공단	제주	276	322	46	116.7	본사 조직 규모 증가로 이주인원 증가

자료: 각 기관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05개 이전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방이전사업의 시행·지원 주체인 기관장[39]의 주소지 이전현황을 조사하였다. 전체 105개 기관 중 기관장이 미이주한 기관은 53개 기관이다. 이 중 현재 기관장이 공석인 7개 기관을 제외하고 46개 기관의 기관장이 이주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40] 미이전 사유는 임기 3년으로 한시직이어서 현실적으로 거주지 이주에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단신 부임해 관사에 거주하는 경우는 가족 구성원 직장 등 가족 생활권 유지를 위해 단독 부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9) 제4조(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①이전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이전의 규모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이전시기에 관한 사항 3. 이전비용의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이전계획은 수도권에 있는 이전공공기관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 및 그 기능의 수행을 위한 조직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③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7조(이전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등) ①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이주직원에 대하여 이사비용 및 이주수당의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40) 한국남동발전(주)는 직무 대행이 진주로 이주

[이전공공기관 중 기관장 주소지 이전현황 기관 현황]

(단위: 개, 명)

구분	지역 (미이주)	기관장 이주	기관장 미이주
혁신 도시	강원 (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도로교통공단	대한적십자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관광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공원공단
	충북 (4)	한국고용정보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소비자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경북 (3)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전력기술(주)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기관장 부재)
	대구 (5)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부동산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경남 (7)	국방기술품질원,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남동발전(주)(기관장 부재),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주택관리공단(주), 한국토지주택공사(기관장 부재)
	울산 (3)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에너지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 (1)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남부발전(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자료미제출)
	전북 (2)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국민연금공단	한국식품연구원(관사 거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기관장 부재)
	광주 전남 (10)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전KPS(주)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전력공사, 한전KDN(주), 한국전력거래소(기관장 부재), 한국인터넷진흥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콘텐츠진흥원(기관장 부재)
	제주	공무원연금공단	-
세종시 (9)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토연구원(기관장 부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관사 거주), 한국법제연구원(관사 거주), 과학기술정책연구원(관사 거주), 산업연구원(관사 거주)
개별 이전 (9)	오송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기타 (3)	한국수력원자력(주)(경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익산), 한국국제교류재단(제주), 한국장학재단(대구)	한국원자력환경공단(경주), 한국중부발전(주)(보령), 한국서부발전(주)(태안)

자료: 각 기관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수도권행 셔틀버스 운영 현황

105개 이전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수도권행 셔틀버스 현황을 조사하였다. 전체 105개 기관 중 강원 8개, 충북 8개, 경북 3개, 대구 5개, 경남 9개. 울산 4개, 부산 2개, 전북 4개, 광주 전남 12개, 세종 1개, 개별 4개 총 60개 기관이 수도권행 셔틀버스를 운영하거나 운영한 적이 있었다. 이전 기관 중 강원도 혁신도시로 이주한 9개 기관 중 8개 기관이 셔틀을 운영하고 있으며, 충북은 이전공공기관 8개 기관이 합동으로 셔틀을 운영하고 있다. 광주 전남은 13개 기관 중 12개 기관이 이용하고 있으며 세종시의 경우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2015~2021년까지 셔틀버스를 운영하였으며, 세종시로 이전한 일부 연구원(한국법제연구원 등)이 함께 이용하였다.

[이전공공기관 중 수도권행 셔틀버스를 운영한 기관]

(단위: 개)

구분	지역 (셔틀有)	셔틀버스 운행 有	셔틀버스 운행 無
혁신 도시	강원 (8)	대한적십자사('14), 한국관광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공원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14~'18),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도로교통공단	대한석탄공사
	충북 (8)	한국고용정보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소비자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경북 (3)	한국전력기술(주),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 (5)	한국부동산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15~'19),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산업기술평가원('14~'21)	신용보증기금,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사학진흥재단,
	경남 (9)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세라믹기술원('15), 한국저작권위원회('15~'22),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방기술품질원,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주택관리공단(주)
	울산 (4)	한국석유공사,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15~'1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동서발전(주)

(단위: 개)

구분	지역(셔틀有)	셔틀버스 운행 有	셔틀버스 운행 無
	부산(2)	한국자산관리공사('14~'17), 한국남부발전(주)('14~'16),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자료미제출)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예탁결제원,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전북(4)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16), 한국전기안전공사, 국민연금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 전남(12)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전KPS(주),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전력공사, 한전KDN(주),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제주	-	공무원연금공단
세종시(1)		경제·인문사회연구회('15~'2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토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개별 이전	오송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기타(4)	한국수력원자력(주)(경주), 한국장학재단(대구)('15~'17), 한국중부발전(주)(보령), 한국서부발전(주)(태안)('15)	한국원자력환경공단(경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익산), 한국국제교류재단(제주)

주: 기간이 명시된 기관을 제외한 기관은 2025년까지 운영함
자료: 각 기관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전체 지방 이전공공기관 중 수도권행 셔틀버스를 운영하거나 운영한 적 있는 60개 공공기관의 셔틀버스 예산액 총액은 2010~2025년 누적액이 1,989.9억원이며, 그 중 경남 356.4억원, 광주 전남 344.6억원, 강원 286.6억원 순으로 예산 투입액이 많았다. 지역별로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평균 예산액이 높은 지역은 세종(기관당 97.4억원)[41], 경북(기관당 88.6억원), 경남(기관당 39.6억원), 강원(기관당

41) 세종의 경우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일부 연구원이 수도권발 셔틀버스를 함께 이용하였음

35.8억원) 순이며 충청북도의 경우 이전한 모든 기관이 수도권행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다.[42)]

[수도권행 셔틀버스 예산(2010~2025)]

(단위: 개, 억원, %)

구분	기관수				수도권행 셔틀버스 예산액(C)	평균 예산액 (C/B)
	전체(A)	셔틀 有(B)	셔틀 無	비율(B/A)		
합계	104	60	44	56.7	1,989.9	33.7
부산	10	2	8	20.0	17.4	8.7
대구	8	5	3	62.5	112.3	22.5
광주전남	13	12	1	92.3	344.6	28.7
울산	7	4	3	57.1	101.5	25.4
강원	9	8	1	88.9	286.6	35.8
충북	8	8	0	100.0	224.9	28.1
전북	5	4	1	80.0	81.0	20.3
경북	5	3	2	60.0	265.9	88.6
경남	10	9	1	90.0	356.4	39.6
제주	1	-	0	-	-	-
세종	19	1	18	5.3	97.4	97.4
개별	9	4	5	44.4	101.9	25.5

주: 한국해양수산개발원(부산)은 자료미제출
자료: 각 기관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기관별 수도권행 셔틀버스 지출 예산액 상위 기관은 다음과 같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전체 264.5억원, 연평균 24억원의 예산을 지출하였다. 한국전력기술(주)은 11년 간 전체, 149.3억원, 연평균 13.6억원 지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년간 전체 114억원, 연평균 10.4억원 지출, 한전KDN(주)은 11년간 전체 102.6억원, 연평균 9.3억원을 지출하였다.

42) 2026년 상반기 중 수도권행 셔틀버스 운영 중단 예정임

[지역별 수도권행 셔틀버스 운영 기관(20억원 초과)]

(단위: 년, 억원)

기관명	기관 유형	지역	셔틀버스 운영기간	지출 예산액	
				전체	연평균
한국토지주택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경남	2015~2025	264.5	24.0
한국전력기술(주)	준시장형 공기업	경북	2015~2025	149.3	13.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강원	2015~2025	114.0	10.4
한전KDN(주)	준시장형 공기업	광주전남	2015~2025	102.6	9.3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타공공기관	세종	2015~2025	97.4	8.9
한국도로공사	시장형 공기업	경북	2015~2025	89.2	8.1
한국가스공사	시장형 공기업	대구	2016~2025	80.9	8.1
한국수력원자력(주)	시장형 공기업	개별(경주)	2016~2025	80.7	8.1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강원	2016~2025	77.7	7.8
한국전력공사	시장형 공기업	광주전남	2014~2025	65.3	5.4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광주전남	2016~2025	56.4	5.6
한국교육개발원	기타공공기관	충북	2017~2025	51.2	5.7
국민연금공단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전북	2015~2025	51.1	4.6
한국석유공사	시장형 공기업	울산	2014~2025	49.7	4.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울산	2014~2025	41.2	3.4
한국가스안전공사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충북	2013~2025	38.2	2.9
한국관광공사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강원	2015~2025	32.7	3.0
한국교통안전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경북	2014~2025	27.4	2.3
한국소비자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충북	2015~2025	27.4	2.5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기타공공기관	충북	2018~2025	26.6	3.3
한전KPS(주)	준시장형 공기업	광주전남	2015~2025	26.4	2.4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타공공기관	충북	2015~2025	26.2	2.4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기타공공기관	충북	2020~2025	22.5	3.8
한국도로교통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강원	2015~2025	20.6	1.9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광주전남	2014~2025	20.5	1.7

자료: 각 기관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수도권행 셔틀버스를 운영했던 이전공공기관 중 아래 수지차 보전기관[43]의 경우 셔틀버스 편성에 따른 추가 지출예산 편성은 국가가 이들 기관의 수도권행 셔틀 운행을 지원한 셈이다.

43) 수지차 보전방식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이하 "수지차 보전기관"이라 함)은 정부 예산 절감을 위하여 기관의 지출 예산 총액에서 기관 운영으로 발생하는 자체수입예산을 차감한 나머지 부분을 출연·보조금으로 지원받는 기관을 의미한다.

[지방 이전한 수지차 보전기관의 수도권행 셔틀버스 운영 예산(2010~2025)]

(단위: 억원)

기관	수지차 보전기관 (셔틀버스 예산, 운영기간)
문화체육관광부(1)	한국저작권위원회(5.3, '15~'22)
환경부(1)	국립공원공단(19.9, '17~'25)
국토교통부(2)	국토안전관리원(18.5, '16~'25), 한국교통안전공단(27.4, '16~'25)
산업통상자원부(2)	한국가스안전공사(38.2, '13~'25), 한국에너지공단(7.3, '19~'21,'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2)	정보통신산업진흥원(26.2, '15~'25),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3, '15~'19)
공정거래위원회(1)	한국소비자원(27.4, '15~'25)
경찰청(1)	한국도로교통공단(20.6, '15~'25)

주: 셔틀버스 예산은 2010~2025년 누적액

한편, 비수도권 공공기관[44] 중 한국가스기술공사(11.42억원)는 지방이전기관이 아님에도 2011년부터 수도권행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었다. 해당 기관은 셔틀버스 운영 관련, 비수도권 공공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비수도권 공공기관 수도권행 셔틀버스 운영 예산]

(단위: 년, 억원)

기관명	기관 유형	지역	셔틀버스 운영기간	지출 예산액
한국가스기술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대전	2011~2025	11.42

자료: 각 기관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44) 이전공공기관이 아닌 원래 본사가 해당 지역에 위치한 기관을 명칭함

(3) 지방 이전 전후 직원 퇴사 현황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2010년 이후 기관별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 연도별 공공기관 지방이전 현황을 보면 2010년부터 일부 공공기관들의 개별 이전이 시작되었고, 혁신도시로의 이전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2014~2015년에는 총 76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하여 가장 많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이루어졌다.

[연도별 공공기관 지방이전 현황]

(단위: 개)

연도	2010	2011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개수	2	1	8	53	23	5	9	3	2	106

주: 1. 한국예탁결제원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경우 각각 2022년, 2024년에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됨
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2023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명칭이 변경됨
자료: 각 기관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지방이전이 완료된 총 106개 기관 중 자료를 미제출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법인이 청산된 재외동포협력재단 및 데이터 소실 등으로 자료가 누락된 기관[45]을 제외한 총 97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2025년까지 정원 및 퇴사자 현황을 분석하였다.[46] 전체 기관 연간 정원 평균[47]은 기관 이전 전 1,428명에서 기관 이전 후 1,917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연간 평균 퇴사자수[48]는 38명에서 60명으로 늘었다. 퇴사율은 기관 이전 전 2.66%에서 기관 이전 후 3.11%로 증가하여, 정원 증가 추이보다 퇴사자 증가 추이가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즉,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자발적 퇴사자 비율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향후 공공기관 지방

45) 해양과학기술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광해광업공단,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예탁결제원이며 산업연구원은 추후 자료 제출[이전 전-정원평균(161명), 퇴사자 평균(4.25명), 퇴사율(0.03%) / 이전 후-정원 평균(191명), 퇴사자 평균(2.35명), 퇴사율(0.01%)], 한국예탁결제원 추후 자료 제출[이전 전-정원평균(456명), 퇴사자 평균(6명), 퇴사율(1.32%) / 이전 후-정원 평균(674명), 퇴사자 평균(52명), 퇴사율(7.72%)]

46) 이전 전 데이터는 2010년부터 기관 이전 시점까지의 정원 및 퇴사자 현황이며, 이전 후 데이터는 기관 이전 시점 이후 데이터이다.

47) 이전 전 혹은 이전 후 전체 정원 합산 규모를 해당 연도로 나눈 값(ex: 이전 전 4개년, 합산 정원 200명, 정원 평균 50명)

48) 이전 전 혹은 이전 후 전체 퇴사자수 합산 규모를 해당 연도로 나눈 값(ex: 이전 후 4개년, 합산 퇴사자 40명, 평균 퇴사자 10명)

이전 추진 시 퇴사자 비율을 관리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관 이전 전후로 퇴사율이 증가한 지역은 대구(1.98% → 2.34%), 울산(3.44% → 3.81%), 강원(3.68% → 5.38%), 경남(2.61% → 3.6%), 제주(2.87% → 6.08%), 개별(1.46% → 1.87%)이다. 특히 강원과 제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퇴사율이 전체 이전공공기관 퇴사율 증가분보다 높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전공공기관 지역별 정원 및 퇴사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기관수	이전 전			이전 후			퇴사율 차이 (F-C)
		연간 정원 평균 (A)	연간 퇴사자 평균 (B)	퇴사율 (C=B/A)	연간 정원 평균 (D)	연간 퇴사자 평균 (E)	퇴사율 (F=E/D)	
합계	97	1,428	38	2.66	1,917	60	3.11	0.45
부산	8	556	14	2.47	760	15	1.99	△0.48
대구	8	920	18	1.98	1,202	28	2.34	0.36
광주전남	13	2,345	41	1.75	3,426	58	1.69	△0.06
울산	7	1,539	53	3.44	2,525	96	3.81	0.37
강원	8	3,218	119	3.68	4,461	240	5.38	1.7
충북	7	319	11	3.56	525	18	3.51	△0.05
전북	5	2,987	89	2.99	3,163	75	2.36	△0.63
경북	5	1,817	43	2.39	2,646	62	2.35	△0.04
경남	10	1,296	34	2.61	1,951	70	3.60	0.99
제주	1	516	15	2.87	548	33	6.08	3.21
세종	16	134	14	10.74	215	17	8.02	△2.72
개별	9	2,130	31	1.46	1,924	36	1.87	0.41

주: 전체 퇴사자 중 정년퇴직자는 제외하였음
자료: 각 기관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공공기관 유형별 퇴사자 비율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을 제외하고 모든 유형에서 상승하였다. 시장형 공기업은 퇴사자 비율이 1.12%에서 1.17%로 소폭 상승했으며, 준시장형 공기업은 1.86%에서 2.6%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3.8%에서 4.42%, 기타공공기관은 5.72%에서 5.82%로 상승하였다. 정부출연기관(한국식품연구원)은 2.63%에서 2.8%로 퇴사자 비율이 상승하였다.

[이전공공기관 지역별 정원 및 퇴사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기관수	이전 전			이전 후			퇴사율 차이 (F-C)
		연간 정원 평균 (A)	연간 퇴사자 평균 (B)	퇴사율 (C=B/A)	연간 정원 평균 (D)	연간 퇴사자 평균 (E)	퇴사율 (F=E/D)	
합계	97	1,428	38	2.66	1,917	60	3.11	0.45
시장형 공기업	10	5,028	57	1.12	6,098	71	1.17	0.05
준시장형 공기업	6	2,850	53	1.86	3,559	93	2.60	0.74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6	1,752	49	2.80	2,329	61	2.62	△0.18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30	1,577	60	3.80	2,381	105	4.42	0.62
기타공공기관	44	258	15	5.72	391	23	5.82	0.1
정부출연기관	1	228	6	2.63	317	9	2.80	0.17

주: 전체 퇴사자 중 정년퇴직자는 제외하였음
자료: 각 기관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이전공공기관 중 이전 전후로 퇴사율이 증가한 주요 기관 중 평균 퇴사자수가 증가한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경남, 150명↑), 대한적십자사(강원, 101명↑), 한국농어촌공사(광주·전남, 78명↑), 한전KPS(주)(광주·전남, 71명), 국민건강보험공단(강원, 67명↑) 등이며, 퇴사율이 증가한 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부산, 6.4%p↑), 영상물등급위원회(부산, 3.87%p↑), 과학기술정책연구원(세종, 3.64%p↑),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세종, 3.47%p↑), 공무원연금공단(제주, 3.21%p↑),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광주·전남 3.09%p↑) 등이다. 또한 한국예탁결제원, 대한적십자사와 한국도로교통공단, 영상물등급위원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연구원,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세라믹기술원은 전체 기관 퇴사율(3.11%) 평균보다 퇴사율이 높다.

퇴사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다. 기관 지방 이전,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 문제, 경력개발·이직, 무기계약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이직 증가,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명예퇴직자 증가, 고령층 명예퇴직, 광산 폐쇄로 인한 조직 규모 축소, 저연차 직원 이직 증가 등이며, 주로 이직을 위해 다양한 직군·연령에서 복합적인 이유로 퇴사자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전공공기관 퇴사자 증가 주요 기관]

(단위: 명, %)

기관명	이전 지역	이전 연도 (N)	이전 전(2010 ~ N)			이전 후(N+1 ~ 2025)			퇴사자 차이 (E-B)
			정원 평균 (A)	퇴사자 평균 (B)	퇴사율 (C=B/A)	정원 평균 (D)	퇴사자 평균 (E)	퇴사율 (F=E/D)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2015	6,238	97	1.56	8,581	247	2.9	150
대한적십자사	강원	2014	3,301	157	4.67	4,090	258	6.31	101
한국농어촌공사	광주 전남	2014	5,607	65	1.17	6,268	144	2.3	78
한전KPS(주)		2014	4,747	62	1.30	6,390	133	2.1	71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원	2015	12,324	136	1.10	15,605	203	1.3	67
한국수력원자력(주)	개별	2016	9,854	70	0.71	12,637	124	0.98	53.6
한국도로교통공단	강원	2015	1,890	68	3.60	2,890	120	4.15	51.8
한전KDN(주)	전남	2014	1,801	30	1.66	2,747	71	2.59	41.5
신용보증기금	대구	2014	2,251	36	1.58	2,742	57	2.07	21

주: 전체 퇴사자 중 정년퇴직자는 제외하였음

자료: 각 기관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이전공공기관 퇴사율 증가 주요 기관]

(단위: 명, %, %p)

기관명	이전 지역	이전 연도 (N)	이전 전(2010 ~ N)			이전 후(N+1 ~ 2025)			퇴사율 차이 (F-C)
			정원 평균 (A)	퇴사자 평균 (B)	퇴사율 (C=B/A)	정원 평균 (D)	퇴사자 평균 (E)	퇴사율 (F=E/D)	
한국예탁결제원	부산	2014	456	6	1.32	674	52	7.72	6.4
영상물등급위원회	부산	2013	32	1	3.91	45	4	7.78	3.87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세종	2014	82	1	1.22	144	7	4.86	3.64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	세종	2015	73	3	3.88	161	12	7.36	3.47
공무원연금공단	제주	2015	516	15	2.87	548	33	6.08	3.2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광주 전남	2014	194	7	3.81	226	16	6.90	3.09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북	2014	1,154	21	1.82	1,624	57	3.52	1.70
대한석탄공사	강원	2014	1,368	13	0.98	843	21	2.54	1.56
한국세라믹기술원	경남	2015	113	3	2.65	211	8	3.79	1.14
축산물품질평가원	세종	2015	269	5	1.8	389	11	2.93	1.13

주: 전체 퇴사자 중 정년퇴직자는 제외하였음

자료: 각 기관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 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 이행 현황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49]에 따르면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전공공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전공공기관은 지역발전 계획과 추진실적 등을 매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매년 공개하고 있다.

(1) 「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상 지역산업 육성 이행 현황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이전공공기관은 지역산업 육성,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및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매년 지역발전

4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3(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① 이전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매년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산업 육성,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및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
2. 지역인재 채용 및 산학협력사업을 포함한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3. 혁신도시 주민 지원을 위한 지역공헌사업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 이전공공기관, 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이전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과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통보받은 계획과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이전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5(이전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추진실적의 통보) ①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3(이전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이전지역의 범위 등) ① 법 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범위는 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이 속하는 광역시·도·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로 한다. 다만, 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혁신도시를 공동으로 건설한 광역시 및 도를 하나의 권역으로 하여 해당 권역을 이전지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범위 및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50]

지역산업 육성 사업은 이전공공기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 전략 산업 육성, 기업유치, 일자리창출 및 중소기업 지원 등 동반성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추진하는 사업이다.

2023년 대구지역 기업 창업경진대회(한국가스공사), 원도심 역사문화공간 보존사업(한국부동산원), 사회적기업 제품 상설 전시공간운영(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24년 해양지식포럼 개최(한국해양수산개발원), 빛가람에너지밸리 ICT&보안컨퍼런스(한전KDN), 2024 국제 종자박람회(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5년은 한수원·경주상생협력기금(한국수력원자력(주) 등), 동해가스전 CCS 사업(한국석유공사), 혁신도시 소외상권 활성화 지원(한국광해광업공단), 통영 폐조선소 도시개발사업(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 상 '지역산업 육성'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지역산업 육성	• 연관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전략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 등 지역산업 활성화에 대한 사업

자료: 국토교통부 「지역발전 추진실적 및 계획」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은 매년 이전공공기관 지역산업 육성 사업에 대한 계획과 이에 따른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홈페이지 이행계획 및 실적 자료에 따르면, 매년 지역산업 육성 사업 사업비 집행 실적을 공표하고 있으며, 사업비 집행률의 경우 2023년 128.6%, 2024년 80.7%로 2024년 '지역산업 육성' 사업비 집행률을 미달하였다. 지역산업 육성 사업비 집행률을 미달한 지역은 다음과 같다. 2023년 광주·전남(74.8%) 울산(70.5%), 강원(87.0%), 충북(94.4%) 경북(98.1%)이 사업비를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하였으며, 2024년엔 광주·전남(22.5%) 울산(88.9%), 강원(10.4%), 경남(89.3%)이 계획 대비 집행률이 저조하였다.

5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3(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① 이전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매년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산업 육성,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및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

[이전공공기관 '지역산업 육성' 사업비 집행률 현황]

(단위: 개, 억원, %)

구분	기관수	2023			2024		
		계획 사업비(A)	이행 사업비(B)	집행률 (B/A)	계획 사업비(C)	이행 사업비(D)	집행률 (D/C)
합계	105	10,496.0	13,494.9	128.6	11,472.6	9,257.0	80.7
부산	11	164.0	171.3	104.5	573.4	326.3	56.9
대구	8	529.8	2,068.9	390.5	781.6	1,784.4	228.3
광주전남	13	2,892.6	2,164.3	74.8	2,174.8	488.9	22.5
울산	7	400.9	282.7	70.5	750.6	667.3	88.9
강원	9	705.4	613.7	87.0	587.9	61.1	10.4
충북	8	345.0	325.5	94.4	43.0	51.6	120.1
전북	5	290.8	414.6	142.6	76.4	87.3	114.2
경북	5	383.1	375.9	98.1	32.6	35.2	108.2
경남	10	4,295.6	6,588.5	153.4	5,974.8	5,337.8	89.3
제주	1	0.0	0.9	-	0.0	0.1	-
세종	19	14.9	15.1	101.2	1.6	1.9	120.2
개별	9	474.0	473.4	99.9	475.9	415.2	87.2

자료: 국토교통부 각년도 「지역발전 추진실적 및 계획」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전KDN(주) 등 9개 기관은 2년 연속 '지역산업 육성' 사업비 집행 미달 기관으로 해당 기관은 '지역산업 육성' 계획 이행 목표 달성을 위해 해당 계획을 재점검하고 이행 목표 추진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2년 연속 '지역산업 육성' 사업비 집행 미달 기관]

(단위: 억원, %)

기관명	2023			2024		
	계획 사업비(A)	이행 사업비(B)	집행률 (B/A)	계획 사업비(C)	이행 사업비(D)	집행률 (D/C)
한국도로교통공단	22	16	72.7	24	11	45.8
한국석유공사	139.59	2.99	2.1	667.28	589.4	88.3
한국농어촌공사	393.8	393.72	99.9	369.51	368.45	99.7
한전KDN(주)	2.93	0.83	28.3	3.6	1.59	44.2
한국가스공사	32.96	18.694	56.7	19.91	8.16	41.0
한국국토정보공사	36.0	31.6	87.8	52.2	41.2	78.9
한국전력공사	973.07	908.56	93.4	973.3	44.78	4.6
한국수력원자력(주)	115.71	112.856	97.5	246.7	99.99	40.5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4.15	4.1	98.8	2.4	1	41.7

자료: 국토교통부 각년도 「지역발전 추진실적 및 계획」

사업비 집행 미달사유는 착공 연기, 투자시기 조정, 예비타당성 심사 수행, 사업계획 변경·낙찰차액 발생, 경영상 이유로 예산 집행 조정, 지역업체 참여저조 및 미선정, 구매계획 철회, 정부 사업비 지출 계획 축소, 재설계 및 도시계획확인허가 변경으로 사업지연 관리비 제외로 수치 조정 등이다. 일부 기관의 경우 역량 있는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역산업 육성 수요 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상 지역인재채용 및 육성 현황

① 이전지역인재 채용 현황

공공기관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역인재육성 및 채용을 추진하고 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은 이전 지역 소재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 및 졸업 대상자를 채용하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졸업 및 졸업 대상자를 채용한다.[51]

[이전지역인재와 비수도권 지역인재채용 간 비교]

채용 형태	채용 대상 기관	지역인재 대상	근거 법률
이전 지역인재	이전지역 공공기관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비수도권 지역인재	비수도권 공공기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자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5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하 이 조에서 "기업"이라 한다)은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인력 및 특수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비율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간 상이하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제2항에 의해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채용시험의 실시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 대비 연도별로 18~30% 비율 이상이 되도록 채용해야 한다.[5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53]에 규정된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2022년 이후 30% 이상을 채용해야 하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이전공공기관을 제외한 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연차별 18~30%로 의무화하고 있다.

[「혁신도시법」 상 지역인재 채용비율]

(단위: %)

2018년 이전 이전한 공공기관		2019년 이후 이전한 공공기관	
해당연도	비율	해당연도	비율
2018년	18	1년차	18
2019년	21	2년차	21
2020년	24	3년차	24
2021년	27	4년차	27
2022년 이후	30	5년차	30

자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

5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별표1에 비율이 명시되어 있음

5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이전공공기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법 제2조제1호의 공공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다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이전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등은 제외한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2.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3. 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개별이전이 인정된 중앙행정기관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은 매년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채용에 대한 계획과 이에 따른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홈페이지 이행계획 및 실적 자료에 따르면, 매년 지역산업 육성 사업 이행건수와 채용인원 실적을 공표하고 있으며, '지역인재채용인원의 경우 2023년 101.7%, 2024년 156.7%로 실적을 모두 달성하였다.[54] '지역인재채용' 채용인원 목표를 미달한 지역은 다음과 같다. 2023년 대구(76.5%), 광주·전남(85.5%) 충북(20%), 경북(77.9%), 세종(6.7%)이 채용인원을 미달하였으며, 2024년엔 충북(86.4%) 경북(83.2%)이 채용인원을 미달하였다.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채용' 채용인원 현황]

(단위: 개, 명, %)

구분	기관수	2023			2024		
		계획 인원(A)	채용인원(B)	집행률 (B/A)	계획 인원(C)	채용인원(D)	집행률 (D/C)
합계	105	727	739	101.7	628	984	156.7
부산	11	55	70	127.3	47	96	204.3
대구	8	68	52	76.5	55	71	129.1
광주전남	13	165	141	85.5	149	285	191.3
울산	7	36	42	116.7	43	46	107.0
강원	9	91	145	159.3	97	132	136.1
충북	8	20	4	20.0	22	19	86.4
전북	5	28	32	114.3	5	36	720.0
경북	5	95	74	77.9	95	79	83.2
경남	10	43	91	211.6	42	108	257.1
제주	1	6	7	116.7	6	8	133.3
세종	19	15	1	6.7	2	4	200.0
개별	9	105	80	76.2	65	100	153.8

자료: 국토교통부 각년도 「지역발전 추진실적 및 계획」

② 지역인재육성 현황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이전공공기관은 지역인재육성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매년 지역인재육성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

54) 기관별 법령상 채용 목표인 30% 채용 목표는 달성하였으며, 지역 이전 기관의 채용인원 목표는 일부 달성하지 못함

여야 한다.[55] 지역인재육성 사업은 이전공공기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 전략 산업 육성, 기업유치, 일자리창출 및 중소기업 지원 등 동반성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추진하는 사업이다.

2023년 체험형 인턴 운영(한국남부발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지역인재 장학금 지원사업(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진로체험프로그램(한전KDN), 울산소재 초중등 미래에너지 교육(한국석유공사), 2024년 체험형 인턴 운영(한국남부발전(주),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해양과학기술 전문인력 양성(한국해양과학기술원), 대학생 홍보대사(국민연금공단)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5년은 IT인재 육성지원(주택도시보증공사), 체험형 인턴·청년인턴십(한국가스공사)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 상 '지역인재육성'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지역인재육성	• 지역대학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장학 사업, 직무체험 및 견학프로그램 운영 등 인재 양성에 대한 사업

자료: 국토교통부 「지역발전 추진실적 및 계획」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은 매년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육성 사업에 대한 계획과 이에 따른 이행 실적을 점검 및 공표하고 있다. 홈페이지 이행계획 및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역인재육성 사업비 집행률의 경우 2024년 98.7%로 사업비 집행 목표를 미달하였다. 사업비 집행률을 미달한 지역은 다음과 같다. 2023년에는 부산(92.3%), 대구(70.6%), 광주·전남(88.3%), 강원(36.5%), 충북(97.5%), 전북(89.4%), 경북(88.7%), 경남(90.7%)이 사업비를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하였으며, 2024년엔 대구(96.2%), 광주·전남(91.2%), 경북(84.7%), 경남(97.4%), 제주(66.9%)는 계획 대비 집행률이 저조하였다.

5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3(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① 이전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매년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산업 육성,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및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육성' 사업비 집행률 현황]

(단위: 개, 억원, %)

구분	기관수	2023			2024		
		계획 사업비(A)	이행 사업비(B)	집행률 (B/A)	계획 사업비(C)	이행 사업비(D)	집행률 (D/C)
합계	105	576.1	686.8	119.2	704.6	695.6	98.7
부산	11	58.1	53.7	92.3	58.3	62.9	107.9
대구	8	13.3	9.4	70.6	14.8	14.3	96.2
광주전남	13	76.1	67.3	88.3	52.6	48.0	91.2
울산	7	12.2	19.0	156.1	19.9	20.8	104.5
강원	9	4.4	1.6	36.5	1.6	2.6	160.8
충북	8	9.7	9.5	97.5	13.0	13.3	102.6
전북	5	3.3	3.0	89.4	4.4	5.1	116.9
경북	5	46.6	41.4	88.7	60.0	50.8	84.7
경남	10	24.5	22.2	90.7	20.6	20.1	97.4
제주	1	0.1	0.1	100.0	0.2	0.1	66.9
세종	19	6.9	11.4	163.7	8.1	13.6	168.7
개별	9	320.9	448.2	139.7	451.1	444.0	98.4

자료: 국토교통부 각년도 「지역발전 추진실적 및 계획」

또한 한국전력공사, 국립공원공단, 한국가스공사, 주택관리공단 등 16개 기관은 2년 연속 지역인재육성 사업비 집행이 저조한바, 해당 기관은 지역인재육성 계획 이행 목표 달성을 위해 해당 계획을 재점검하고 이행 목표 추진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2년 연속 '지역인재육성' 사업비 집행 미달 기관]

(단위: 억원, %)

기관명	2023			2024		
	계획 사업비(A)	이행 사업비(B)	집행률 (B/A)	계획 사업비(C)	이행 사업비(D)	집행률 (D/C)
국립공원공단	0.1	0	0.0	0.1	0	0.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0.045	0.01	11.1	0.045	0.01	11.1
주택관리공단	0.82	0.48	58.5	0.90	0.29	32.2
한국가스공사	2.67	1.16	43.3	5.52	2.35	42.6
한국전력공사	44.50	27.20	61.1	27.80	13.58	48.8

(단위: 억원, %)

기관명	2023			2024		
	계획 사업비(A)	이행 사업비(B)	집행률 (B/A)	계획 사업비(C)	이행 사업비(D)	집행률 (D/C)
한국고용정보원	5.57	4.63	83.1	5.56	3.64	65.5
한국교통안전공단	46.30	41.04	88.6	59.72	40.82	68.4
한국인터넷진흥원	12.15	12.09	99.5	7	5	71.4
한국전기안전공사	1.91	1.45	79	2.55	2	76.9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2	1.75	87.5	2.22	1.86	83.8
한국부동산원	2.0	1.9	93.1	2.52	2.30	91.3
한국광해광업공단	0.42	0.16	39.3	0.22	0.21	95.0
주택도시보증공사	4.54	3.09	68.1	3.34	3.18	95.2
한국소비자원	2.49	2.01	80.9	2.49	2.41	96.7
한국토지주택공사	6.73	5.7	84.7	5.72	5.55	97.0
한국전력거래소	0.75	0.63	84.0	0.69	0.67	97.1

자료: 국토교통부 각년도 「지역발전 추진실적 및 계획」

지역인재육성 사업은 지역 오픈캠퍼스 등 지역 대학과 연동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비 집행 미달 사유는 ① 모집 정원 대비 선발인원 미달 ② 청년 인턴 등 중도 퇴사 ③ 계획 변경 ④ 예산 확보 어려움으로 미실시 ⑤ 채용규모 감소에 따른 사업비 감소 등이며, 반면 해당 기관 중 내부 자원을 활용해 비용을 절감한 기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도 존재한다. 지역인재육성 사업의 경우 모집 정원 대비 선발인원 미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인재 참여를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③ 주요 이전공공기관 이전지역인재 퇴사율 및 특정 대학 쏠림 문제

주요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퇴사율은 전체 채용인재 퇴사율에 비해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다. 2018~2024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채용한 지역인재 대비 퇴사한 지역인재 비중은 14.0%로, 전체 채용인재 대비 퇴사한 채용인재 비중인 22.9%에 비해 8.9%p 낮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채용한 지역인재 대비 퇴사한 지역인재 비중은 5.3%로, 전체 채용인재 대비 퇴사한 채용인재 비중인 13.8%에 비해

8.5%p 낮다. 신용보증기금에서 채용한 지역인재 대비 퇴사한 지역인재 비중은 2.9%로, 전체 채용인재 대비 퇴사한 채용인재 비중인 8.4%에 비해 5.5%p 낮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채용한 지역인재 대비 퇴사한 지역인재 비중은 11.2%로, 전체 채용인재 대비 퇴사한 채용인재 비중인 15.1%에 비해 3.9%p 낮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채용한 지역인재 대비 퇴사한 지역인재 비중은 2.5%로, 전체 채용인재 대비 퇴사한 채용인재 비중인 5.8%에 비해 3.3%p 낮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채용한 지역인재 대비 퇴사한 지역인재 비중은 8.6%로, 전체 채용인재 대비 퇴사한 채용인재 비중인 14.4%에 비해 5.8%p 낮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채용한 지역인재 대비 퇴사한 지역인재 비중은 6.3%로, 전체 채용인재 대비 퇴사한 채용인재 비중인 10.8%에 비해 4.5%p 낮다.

[권역별 주요 공공기관 소재 대학 이전지역인재 퇴사율 비중(2018~2024)]

(단위: 명, %)

지역	권역별 주요 공공기관	전체 채용 인재 (A)	채용 지역 인재 (B)	2018~2024 채용한 인재				
				퇴사한 채용 인재 (C)	퇴사한 지역 인재 (D)	퇴사율		
						비중 (E=C/A)	비중 (F=D/B)	차이 (E-F)
부산	한국자산관리공사	568	178	130	25	22.9	14.0	8.9
경남	한국토지주택공사	2,232	357	307	19	13.8	5.3	8.5
대구	신용보증기금	1,090.5	239.5	92	7	8.4	2.9	5.5
경북	한국도로공사	1,765	357	267	40	15.1	11.2	3.9
광주 · 전남	한국전력공사	7,494	959	433	24	5.8	2.5	3.3
전북	국민연금공단	2,285	326	328	28	14.4	8.6	5.8
충청권	한국가스안전공사	628	174	68	11	10.8	6.3	4.5

자료: 각 기관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주요 공공기관 지역인재채용과정을 살펴보면, 특정 대학 출신의 지역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다음 표에 따르면, 주요 공공기관 이전지역인재 채용 중 상위 2~4개 대학의 채용 비중이 전체 71.2~83%이다. 개별

기관별로 살펴보면 한국자산관리공사 80.3%, 한국토지주택공사 76.2%, 신용보증기금 71.2%, 한국도로공사 76.2%, 한국전력공사 76.9%, 국민연금공단 77.1%, 한국가스안전공사 73.1%, 한국관광공사 81%로 특정 대학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권역별 주요 공공기관 소재 대학 이전지역인재채용 비중(2018~2024)]

(단위: 개, 명, %)

지역	권역별 주요 공공기관	이전지역인재 채용규모	채용규모 상위대학		
			대학수	규모	비중
부산	한국자산관리공사	178	2	143	80.3
경남	한국토지주택공사	357	2	272	76.2
대구	신용보증기금	239.5	2	170.5	71.2
경북	한국도로공사	357	2	272	76.2
광주 · 전남	한국전력공사	758	2	583	76.9
전북	국민연금공단	326	2	251.5	77.1
충청권	한국가스안전공사	167	4	122	73.1
강원	한국관광공사	53	2	43	81

주: 한국전력공사는 고졸 미포함 채용규모, 고졸 포함시 959명
자료: 각 기관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3) 「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 상 지역주민 지원 사업 이행 현황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 주민 지원을 위한 지역공헌사업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과 협의하여 매년 지역주민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56]

지역주민지원 사업은 이전공공기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생활SOC 확충, 공공시설 개방, 봉사활동·물품후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2023년 수산물

5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3(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① 이전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과 협의하여 매년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혁신도시 주민 지원을 위한 지역공헌사업에 관한 사항

소비촉진 및 봉사(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HUG스테이션사업(주택도시보증공사), 안전보건공감 도서관운영(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24년 부산 아동 응급의료서비스 지원(주택도시보증공사), 보호대상아동 통합 지원(한국자산관리공사), 열효율 개선사업(한국가스공사)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5년은 부산경제활성화 지원(한국자산관리공사), 청소년영상물바로보기(영상물등급위원회), 열효율개선사업(한국가스공사), 대구지역 취약계층 후원(한국부동산원), 지역사회 도서기증(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 상 '지역주민 지원'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지역주민 지원	• 지역주민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체육시설 등 생활SOC 건립, 기관 시설 개방 등에 대한 사업

자료: 국토교통부 「지역발전 추진실적 및 계획」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은 매년 이전공공기관 지역주민 지원 사업에 대한 계획과 이에 따른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홈페이지 이행계획 및 실적 자료에 따르면, 매년 지역산업 육성 사업 사업비 집행 실적을 공표하고 있으며, 사업비 집행률의 경우 2023년 87.4%, 2024년 69.9%로 사업비 집행률을 2년 연속 미달하였다. 지역생산물품 우선구매 유형과 비교하였을 때 사업비 집행 규모는 2023년 418억원, 2024년 408억원으로 다소 저조하다.

지역주민 지원 사업비 집행률을 미달한 지역은 다음과 같다. 2023년 대구(84.8%), 광주·전남(33.2%) 강원(79.0%), 충북(14.4%) 전북(57.1%), 경남(42.6%)이 사업비를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하였으며, 2024년엔 광주·전남(80.7%) 경남(28.4%), 제주(96.0%)가 계획 대비 집행률이 저조하였다.

[이전공공기관 '지역주민 지원' 사업비 집행률 현황(2023~2024)]

(단위: 개, 억원, %)

구분	기관수	2023			2024		
		계획 사업비(A)	이행 사업비(B)	집행률 (B/A)	계획 사업비(C)	이행 사업비(D)	집행률 (D/C)
합계	105	479	418	87.4	583	408	69.9
부산	11	35	56	159.8	32	33	104.6
대구	8	37	32	84.8	35	37	105.0
광주전남	13	123	41	33.2	77	62	80.7
울산	7	14	37	270.1	12	39	333.3
강원	9	13	10	79.0	12	16	128.6
충북	8	19	3	14.4	2	3	127.8
전북	5	11	6	57.1	8	9	118.6
경북	5	23	43	188.4	30	35	117.0
경남	10	108	46	42.6	284	81	28.4
제주	1	1	1	109.8	1	1	96.0
세종	19	2	3	187.0	2	3	106.6
개별	9	92	140	151.6	87	88	101.2

자료: 국토교통부 각년도「지역발전 추진실적 및 계획」

또한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57] 등 16개 기관은 2년 연속 지역주민 지원 사업비 집행 미달 기관으로 나타났는바, 해당 기관은 지역주민 지원 계획 이행 목표 달성을 위해 해당 계획을 재점검하고 이행 목표 추진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57)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역주민을 위한 SOC시설을 지원하였으며, 사업특성상 관계기관 의견수렴, 설계용역·공사 발주 등 행정절차로 인한 사업일정 지연으로 사업비 집행이 순연됨

[2년 연속 '지역주민 지원' 사업비 집행 미달 기관]

(단위: 억원, %)

기관명	2023			2024		
	계획 사업비(A)	이행 사업비(B)	집행률 (B/A)	계획 사업비(C)	이행 사업비(D)	집행률 (D/C)
한국노동연구원	0.06	0.03	50.0	0.04	0.01	17.5
한국국토정보공사	2.98	1.72	57.7	1.79	0.36	20.7
한국토지주택공사	97.51	34.99	35.9	267.96	66.35	24.8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48	1.45	98.0	6.67	3.81	57.1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4.76	3.15	66.2	5.93	3.54	59.7
한국직업능력연구원	0.17	0.13	77.6	0.12	0.09	70.8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0.169	0.13	76.9	0.14	0.10	71.4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0.07	0.05	67.2	0.06	0.05	73.4
한전KDN(주)	3.86	3.37	87.3	2.76	2.18	78.9
대한법률구조공단	0.15	0.11	70.9	0.15	0.13	86.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38	1.58	46.6	4.23	3.67	86.7
대한석탄공사	0.44	0.28	64.5	0.49	0.46	93.9
한국원자력환경공단	1.68	1.39	82.4	1.68	1.61	95.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0.07	0.06	85.7	0.07	0.07	97.1
한국농업기술진흥원	0.23	0.22	97.8	0.22	0.22	97.8
한전KPS(주)	11.30	4.74	41.9	4.89	4.79	98.0

자료: 국토교통부 각년도 「지역발전 추진실적 및 계획」

지역주민지원 사업 주요 사업비 집행 미달 사유는 ① 사업축소·계획 지연 및 변경으로 인한 경비 감소 ② 경영 위기·수익 감소에 따른 예산 감소 ③ 수요 감소 ④ 타 사업으로 대체 등이며, 반면 해당 기관 중 내부 자원을 활용해 비용을 절감한 기관(한국보건사회연구원)도 존재한다. 일부 기관의 경우 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과정 등을 고려하여 사업이 적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4) 「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 상 유관기관 협력 사업 이행 현황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이전공공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이전공공기관, 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 간 협력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매

년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58]

유관기관 협력 사업은 이전공공기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대학, 기업, 지자체 등과 보유자산을 활용한 공동연구 및 관계기관 협력사업, 기관간 포럼 및 협의체운영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2023년에 꿀벌 귀환 캠페인, 든든한끼(한국농어촌공사), 찾아가는 안전보건 VR체험(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24년 범죄피해자 지원사업(한국부동산원), 공동기술개발 협력(한전KPS(주)), 녹색경제 협동연구(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의 사업이 이행되었으며, 2025년은 주택시장 점검 협의체 운영(주택도시보증공사), 공공기관 합동 사회공헌활동(한국부동산원 등), 기업자율형 창업 프로그램(한국동서발전(주)), 청년 창업 및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한국중부발전(주))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 상 '유관기관 협력'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유관기관 협력	• 지방자치단체-기업-대학과의 공동 연구 및 협의회 운영 등 지역발전을 위한 기관 간 협력에 대한 사업

자료: 국토교통부 「지역발전 추진실적 및 계획」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은, 매년 이전공공기관 유관기관 협력 사업에 대한 계획과 이에 따른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홈페이지 이행계획 및 실적 자료에 따르면, 매년 유관기관 협력 사업비 집행 실적을 공표하고 있으며, 유관기관 협력 사업비 집행률의 경우 2023년 106.5%, 2024년 128.8%로 사업비 집행률을 달성하였다. 다만 지역생산물품 우선구매 유형과 비교하였을 때 사업비 집행 규모는 2023년 548억원, 2024년 716억원으로 다소 저조하다.

유관기관 협력 사업비 집행률을 미달한 지역은 연도별 지역별 편차가 큰데, 2023년 부산(51.4%), 광주·전남(11.2%) 울산(48.4%), 강원(92.0%), 충북(97.7%)

5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3(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① 이전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매년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 이전공공기관, 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 간 협력에 관한 사항

경남(72.6%), 제주(12.3%)이 사업비를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하였으며, 2024년엔 부산(94.8%), 대구(77.0%), 울산(98.8%), 강원(38.3%), 충북(97.2%) 등이 계획 대비 집행률이 저조하였다.

[이전공공기관 '유관기관 협력' 사업비 집행률 현황]

(단위: 개, 억원, %)

구분	기관수	2023			2024		
		계획 사업비(A)	이행 사업비(B)	집행률 (B/A)	계획 사업비(C)	이행 사업비(D)	집행률 (D/C)
합계	105	515	548	106.5	556	716	128.8
부산	11	14	7	51.4	6	6	94.8
대구	8	21	41	194.3	36	28	77.0
광주전남	13	66	7	11.2	12	73	614.5
울산	7	91	44	48.4	17	17	98.8
강원	9	61	56	92.0	116	45	38.3
충북	8	9	9	97.7	13	13	97.2
전북	5	5	26	533.4	1	2	333.8
경북	5	3	3	114.5	3	5	165.6
경남	10	195	142	72.6	147	325	222.0
제주	1	4	1	12.3	0	0	1769.2
세종	19	16	19	122.7	9	13	146.9
개별	9	30	193	639.2	196	189	96.5

자료: 국토교통부 각년도「지역발전 추진실적 및 계획」

또한 국립공원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등 7개 기관은 2년 연속 유관기관 협력 사업비 집행 미달 기관으로 해당 기관은 '유관기관 협력' 계획 이행 목표 달성을 위해 해당 계획을 재점검하고 이행 목표 추진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2년 연속 '유관기관 협력' 사업비 집행 미달 기관]

(단위: 억원, %)

기관명	2023			2024		
	계획 사업비(A)	이행 사업비(B)	집행률 (B/A)	계획 사업비(C)	이행 사업비(D)	집행률 (D/C)
국민건강보험공단	0.85	0.68	79.5	0.63	0.53	83.3
국립공원공단	0.57	0.45	78.2	0.46	0.38	82.2
한국고용정보원	1.43	0.57	39.9	0.70	0.57	81.4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0.90	0.18	20.0	0.20	0.15	75.0
영상물등급위원회	0.06	0.06	94.0	0.10	0.06	60.0
한국원자력환경공단	0.15	0.13	86.7	0.20	0.10	51.0
한국관광공사	46.31	33.39	72.1	88.21	33.30	37.8

자료: 국토교통부 각년도 「지역발전 추진실적 및 계획」

유관기관 협력 사업 주요 사업비 집행 미달 사유는 ① 수요 예측 실패 ② 지원자 감소 ③ 사업 재분류 및 지원대상 축소 ④ 과제 부적정 판정으로 예산 미집행 ⑤ 예산 부족 및 사업 미추진 등이며, 반면 이 중 일부 기관의 경우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비용을 절감한 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영상물등급위원회)도 존재한다. 지원자 감소, 수요예측 실패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사업 관리 및 협력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5) 「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 상 지역생산물품 우선구매 사업 이행 현황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면 이전공공기관은 지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와 관련해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매년 지역생산물품 우선구매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59]

5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5(이전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추진실적의 통보) ①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계획과

지역생산물품 우선구매 사업은 이전공공기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대학, 기업, 지자체 등과 이전공공기관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이전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등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 상 '지역생산물품 우선구매'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지역생산물품 우선구매	• 이전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자료: 국토교통부 「지역발전 추진실적 및 계획」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은, 매년 이전공공기관 지역생산물품 우선구매 사업에 대한 계획과 이에 따른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홈페이지 이행계획 및 실적 자료에 따르면, 매년 지역생산물품 우선구매 사업비 집행 실적을 공표하고 있으며,[60] 전체 구매액(2023년 1조 7,508억원, 2024년 1조 6,126억원) 중 대부분은 광주 전남 지역 이전공공기관에서 발생하고 있다(2023년 1조 984억원, 2024년 9,035억원). 사업비 집행률의 경우 2023년 91.9%, 2024년 95.7%로 2023년 및 2024년 '지역생산물품 우선구매' 사업비 집행을 미달하였다. 사업비 집행률을 미달한 지역은 다음과 같다. 2023년 부산(95.6%), 경북(90.5%), 충북(84.4%), 광주·전남(76.0%)이 사업비를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하였으며, 2024년엔 광주·전남(80.4%) 전북(83.8%), 경남(72.8%), 제주(69.6%)가 계획 대비 집행률이 저조하였다.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3(이전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이전지역의 범위 등) ① 법 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범위는 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이 속하는 광역시·도·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로 한다. 다만, 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혁신도시를 공동으로 건설한 광역시 및 도를 하나의 권역으로 하여 해당 권역을 이전지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범위 및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0) 이행건수 실적은 데이터가 명확하지 않아 제외하였음. 예를 들면 사업비 액수는 있는데 계획 건수와 예산 집행 건수가 0으로 입력된 기관이 다수임

[이전공공기관 '지역생산물품 우선구매' 사업비 집행률 현황]

(단위: 개, 억원, %)

구분	기관수	2023			2024		
		계획 사업비(A)	이행 사업비(B)	집행률 (B/A)	계획 사업비(C)	이행 사업비(D)	집행률 (D/C)
합계	105	19,045	17,508	91.9	16,844	16,126	95.7
부산	11	376	359	95.6	340	339	99.7
대구	8	710	843	118.7	710	1,240	174.8
광주전남	13	14,455	10,984	76.0	11,237	9,035	80.4
울산	7	367	936	254.9	574	723	125.9
강원	9	321	383	119.4	358	629	175.6
충북	8	78	89	114.5	85	99	116.8
전북	5	275	365	132.8	285	239	83.8
경북	5	548	496	90.5	512	556	108.6
경남	10	855	1345	157.2	1367	994	72.8
제주	1	9	8	84.5	9	6	69.6
세종	19	107	142	133.0	144	145	100.3
개별	9	943	1,558	165.1	1224	2,121	173.3

자료: 국토교통부 각년도 「지역발전 추진실적 및 계획」

또한 한국전력공사,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등 24개 기관은 2년 연속 지역생산물품 우선구매 사업비 집행 미달 기관으로 해당 기관은 지역생산물품 우선구매 계획 이행 목표 달성을 위해 해당 계획을 재점검하고 이행 목표 추진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기관 중 한국전력공사는 지역생산물품 구매액수가 타 기관에 비해 높으며, 2023~2024년도 한전의 장기적 재정악화 지속에 따른 예산 긴축 운영으로 나주 에너지밸리 입주기업 배정물량 감소 등으로 구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2년 연속 '지역생산물품 우선구매' 사업비 집행 미달 기관]

(단위: 억원, %)

기관명	2023			2024		
	계획 사업비(A)	이행 사업비(B)	집행률 (B/A)	계획 사업비(C)	이행 사업비(D)	집행률 (D/C)
한국서부발전(주)	108.6	92.3	84.9	119.1	69.7	58.5
한국예탁결제원	16.8	9.8	58.4	15.0	8.0	53.4
국립공원공단	9.0	7.7	85.2	9.0	4.8	53.8
한국남부발전(주)	107.3	88.2	82.2	88.2	50.2	56.9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3.24	2.91	89.8	5.67	3.24	57.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6.7	33.6	71.8	42.0	24.5	58.3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6	2	32.5	5.2	3.0	58.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2.1	30.0	93.6	32.0	21.3	66.6
정보통신산업진흥원	3.0	2.15	72.4	2.7	1.8	66.7
주택관리공단(주)	8.6	5.2	60.9	8.0	5.5	68.1
한국보건복지인재원	7.7	2.4	31.3	3.6	2.4	68.2
한국교육개발원	16.9	12.0	71.1	12.5	8.6	69.1
공무원연금공단	9.2	7.8	84.5	9.0	6.3	69.6
한국장학재단	27.8	16.0	57.4	20.7	14.9	72.1
한국노동연구원	4.0	3.9	95.5	3.9	2.9	73.8
한국전력공사	13,774	10,239	74.3	10,564	8207	77.7
한국부동산원	151.9	86.8	57.2	101.3	83.4	82.3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0.0	6.9	68.6	8.5	7.4	86.9
한전KDN(주)	180.7	164.0	90.7	145.3	126.7	87.2
한국환경연구원	6.2	5.1	83.3	5.0	4.4	87.4
한국산업인력공단	30.0	29.7	98.9	37.2	34.0	91.5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8.8	7.1	81.0	6.3	5.8	92.0
근로복지공단	22.4	11.9	53.1	12.5	11.6	92.5
국민연금공단	46.1	40.6	88.0	43.0	41.6	96.8

자료: 국토교통부 각년도 「지역발전 추진실적 및 계획」

지역생산물품 우선구매 사업 주요 사업비 집행 미달 사유는 ① 예산 및 수요 감소 ② 지역구매물품 조달의 어려움(기관 특성상 용역 중심 입찰 방식 활용, 경쟁 입찰, 한정적인 물품 리스트, 적확한 물품 부재 등) ③ 업무 특수성으로 인해 지역

기술 보유 업체 풀 확보의 어려움 ④ 도전적 목표 설정 ⑤ 지역적 특성(제주도, 충북 오송 등) 상 지역물품 구매의 어려움 등이다. 이 중 기관 다수가 언급한 지역구매물품 조달이 어려운 측면은 지역구매물품의 범위 확대(지역 범위의 확대, 품목 확대) 등을 통해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라. 이전공공기관 지방세 납부 현황

(1) 지방세 납부 현황

공공기관 지방 이전 이후, 이전공공기관이 수도권 지역에 납부하던 지방세수 수입이 지방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전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 누적 현황(2016~2024)은 총 2조 5,072억원이며[61], 이 중 경북 지역에 6,664억원이 납부되어 전체 납부세액의 26.6%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광주·전남 6,172억원(24.6%), 경남 3,245억원(12.9%) 순으로 지방세를 납입하였다. 이는 지방세 납입 규모가 큰 공공기관이 이전한 결과로, 경북은 한국수력원자력(주)(2024년 442.6억원) 한국도로공사(2024년 119.7억원), 광주·전남은 한국전력공사(주) (2024년 50.5억원) 및 자회사(한전KPS(주) [2024년 24억원], 한전KDN(주) [2024년 22.7억원] 등) 및 한국농어촌공사(2024년 698억원), 경남은 한국토지주택공사(2024년 109억원)가 이전하였다.[62]

61) 지방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의 경제활동 등에 따른 지방세 납부 효과는 측정이 어려워 본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62) 부산의 한국예탁결제원의 경우 증권에 대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특별 징수하도록 「지방세법」 개정이 이루어져 부산 남구청 세무과로 납입하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입액이 2024년 5,997.6억원이지만 한국예탁결제원은 특별징수 원천징수 업무를 위탁할 뿐이며, 납입 후 지방소득세액은 개별 증권을 보유한 법인 및 개인이 소재한 전국 단위 지방자치단체로 각각 귀속되어 지방 이전에 따른 부산 지역 지방세수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제외하였고, 외국 소재 증권 이자수익 등의 경우 부산 지역으로 귀속되므로 해당 특별징수분은 지방세액에 포함시켰음

[이전공공기관 지방세 납부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기관수)	2016 (A)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B)	차이 (B-A)	누적합계 (비중)
합계 (104)	2,529	2,626	2,698	2,458	2,682	3,036	3,275	2,914	2,855	326	25,072 (100)
부산 (10)	221.8	184.4	339.0	306.6	309.8	275.8	403.2	344.6	488.4	266.5	2,873.6 (11.5)
대구 (9)	172.5	196.5	197.4	172.8	135.8	145.5	194.3	172.1	157.7	△15	1,545 (6.2)
광주 전남 (13)	578.0	641.8	576.4	565.4	632.8	651.3	861.6	835.0	829.1	251	6,172 (24.6)
울산 (7)	81.4	79.7	78.1	66.8	53.4	53.0	56.6	59.9	58.5	△23	587 (2.3)
강원 (9)	36.2	43.9	46.4	92.7	61.2	163.7	93.0	87.2	117.6	81	742 (3.0)
충북 (10)	25.9	22.2	24.2	30.7	39.0	42.1	42.3	44.3	45.9	20	317 (1.3)
전북 (6)	19.1	37.9	32.6	41.7	46.5	65.1	61.6	54.6	56.9	38	416 (1.7)
경북 (7)	726.5	776.6	673.4	690.2	762.4	847.7	729.1	792.3	665.4	△61	6,664 (26.6)
경남 (10)	220.0	268.8	424.0	283.8	420.7	548.3	615.8	293.1	170.3	△50	3,245 (12.9)
제주 (2)	0.4	2.0	3.4	4.3	5.6	5.9	6.7	6.8	6.8	6	42 (0.2)
세종 (19)	24.4	24.8	28.6	30.5	32.6	43.8	36.1	36.9	41.9	17	299 (1.2)
충남 (2)	422.7	347.8	274.6	172.0	182.0	193.6	174.9	187.0	216.1	△207	2,171 (8.7)

주: 1. 충남의 경우 한국중부발전(주)(보령), 한국서부발전(주)(태안)으로 개별 이전 기관임
2. 해양수산개발원(부산)은 자료 미제출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광역지자체에 이전한 기관이 납부한 지방세 비중은 다음과 같다. 광역지자체 13개[63]의 지방세 합계액은 2016년 32.5조원에서 2024년 50조원 규모로 17.5조

63) 부산, 대구, 광주, 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세종, 충남이며, 광주와 전남은 합산한 금액임

원 증가하였다. 이전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 비중은 2016년 0.82%에서 2024년 0.58%로 0.24%p 감소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이전공공기관이 납부하는 지방세가 전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소폭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소폭 증가한 지방자치단체는 부산(2016년 0.46%→2024년 0.74%, 0.28%p) 강원(2016년 0.23%→2024년 0.38%, 0.15%p), 충북(2016년 0.51%→2024년 0.59%, 0.08%p), 전북(2016년 0.1%→2024년 0.17%, 0.07%p), 제주(2016년 0.0%→2024년 0.01%, 0.01%p)으로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세 납부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지방이전에 따른 세수증대효과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반면, 대구(2016년 0.6%→2024년 0.38%, △0.22%p), 광주·전남(2016년 1.63%→2024년 1.27%, △0.36%p), 울산(2016년 0.46%→2024년 0.24%, △0.22%p), 경북(2016년 4.04%→2024년 2.02%, △2.02%p), 경남(2016년 0.64%→2024년 0.32%, △0.32%p), 충남(2016년 1.49%→2024년 0.42%, △1.07%p), 은 2016년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광역 시·도 지방세 수입 및 이전공공기관 지방세 비중 현황]

(단위: 조원, %, %p)

광역지자체 (이전기관수)	2016 (A)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B)	차이 (B-A)
합계 (104)	32.5 (0.82)	34.3 (0.81)	34.6 (0.79)	37.3 (0.71)	43.3 (0.72)	46.2 (0.7)	50.5 (0.71)	49.1 (0.58)	50.0 (0.58)	17.5 (△0.24)
부산 (10)	4.63 (0.46)	4.95 (0.4)	4.94 (0.69)	5.19 (0.62)	6.20 (0.6)	6.47 (0.44)	6.81 (0.62)	6.57 (0.51)	6.68 (0.74)	2.06 (0.28)
대구 (9)	2.98 (0.6)	3.16 (0.66)	3.23 (0.63)	3.48 (0.54)	3.96 (0.39)	4.25 (0.37)	4.36 (0.46)	4.19 (0.39)	4.40 (0.38)	1.42 (△0.22)
광주전남 (13)	3.92 (1.63)	4.03 (1.64)	4.24 (1.43)	4.74 (1.33)	5.83 (1.33)	6.12 (1.12)	6.89 (1.41)	6.53 (1.21)	6.56 (1.27)	2.64 (△0.36)
울산 (7)	1.95 (0.46)	1.98 (0.41)	1.95 (0.39)	2.04 (0.34)	2.09 (0.26)	2.22 (0.25)	2.46 (0.26)	2.48 (0.24)	2.45 (0.24)	0.51 (△0.22)
강원 (9)	1.86 (0.23)	1.94 (0.24)	2.06 (0.24)	2.17 (0.45)	2.65 (0.28)	2.88 (0.62)	3.22 (0.32)	3.08 (0.27)	3.19 (0.38)	1.33 (0.15)
충북 (10)	2.02 (0.51)	2.11 (0.44)	2.28 (0.36)	2.57 (0.46)	2.77 (0.58)	3.15 (0.53)	3.50 (0.48)	3.40 (0.51)	3.39 (0.59)	1.37 (0.08)
전북 (6)	1.90 (0.1)	2.01 (0.19)	2.04 (0.15)	2.29 (0.18)	2.92 (0.18)	3.06 (0.23)	3.30 (0.2)	3.30 (0.16)	3.34 (0.17)	1.45 (0.07)
경북 (7)	3.57 (4.04)	3.72 (4.1)	3.63 (3.36)	3.92 (3.38)	4.59 (3.33)	4.90 (2.9)	5.41 (2.38)	5.32 (2.4)	5.42 (2.02)	1.86 (△2.02)

(단위: 조원, %, %p)

광역지자체 (이전기관수)	2016 (A)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B)	차이 (B-A)
경남 (10)	4.74 (0.64)	4.82 (0.75)	4.62 (1.14)	5.10 (0.78)	5.73 (1.07)	6.05 (1.19)	6.59 (1.26)	6.43 (0.54)	6.70 (0.32)	1.97 (△0.32)
제주 (2)	1.38 (0.00)	1.45 (0.00)	1.46 (0.01)	1.52 (0.01)	1.60 (0.01)	1.69 (0.01)	1.97 (0.01)	1.87 (0.01)	1.86 (0.01)	0.49 (0.01)
세종 (19)	0.50 (0.22)	0.67 (0.18)	0.67 (0.2)	0.67 (0.21)	0.80 (0.21)	0.88 (0.27)	0.86 (0.21)	0.78 (0.19)	0.85 (0.22)	0.35 (0.00)
충남 (2)	3.12 (1.49)	3.43 (1.11)	3.51 (0.8)	3.56 (0.49)	4.13 (0.51)	4.60 (0.47)	5.13 (0.38)	5.20 (0.36)	5.18 (0.42)	2.06 (△1.07)

주: 1. 괄호안은 이전공공기관 지방세 납부 비중
2. 해양수산개발원(부산)은 자료 미제출
자료: 국가데이터처 KOSIS 통계 및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2) 공공기관 통폐합 시 이전지역 지방세수 영향

한국전력공사와 발전 자회사는 2001년 4월 사업 구조개편의 일환으로 분할되었으며, 제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 추진 대상에 포함되어, 한국전력공사(나주), 한국동서발전(주)(울산), 한국남동발전(주)(진주), 한국남부발전(주)(부산)[64]이 2014년 혁신도시로 이주하였으며, 한국중부발전(주)(보령), 한국서부발전(주)(태안)은 2015년 기관 이전을 완료하였다.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 자회사 지방 이전 현황]

지역	유형	기관명	이주 시기
전남	시장형 공기업	한국전력공사	2014
울산	시장형 공기업	한국동서발전(주)	2014
경남	시장형 공기업	한국남동발전(주)	2014
부산	시장형 공기업	한국남부발전(주)	2014
충남(개별)	시장형 공기업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2015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 자회사의 주요 사업 내역은 다음과 같다. 한국전력공사는 송변전설비 건설·운영(5조 4,422억원), 배전설비 건설·운영(4조 1,752억원) 사

64) 전력산업구조개편 대상으로 민영화 후 매각 계획이었지만, 매각이 무산됨

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자회사는 발전 운영 및 공통(한국중부발전(주) 3,940억원), 발전건설(한국남동발전(주) 8,675억원, 한국남부발전(주) 6,796억원, 한국동서발전(주) 6,074억원, 한국서부발전(주)(8,205억원)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 자회사 주요 사업 현황]

(단위: 억원)

기관명	사업명	주요 사업내용	2026년 예산
한국전력공사	송변전설비 건설·운영	• 송전선로, 변전소 등 건설·보강	54,422
	배전설비 건설·운영	• 배전선로, 변압기, 전주 등 건설·보강	41,752
한국남동발전(주)	발전건설	• 복합화력 및 신재생에너지 건설사업 등	8,675
	설비보강	• 발전설비 취약개소 보강 등	5,622
	투자자산	• 국내외 신재생 및 신사업 출자	2,500
한국남부발전(주)	발전건설	• 안동복합 2호기 등 신규 건설사업	6,796
	설비보강	• 노후설비 보강 및 환경설비 개선 사업 등	4,413
	투자자산	• 신재생에너지 및 해외사업 지분 출자 사업	2,523
한국동서발전(주)	발전설비건설	• 음성복합, 제주 복합 등 신규 발전소 건설	6,074
	발전설비보강	• 발전설비 취약개소 보강 및 설비개선	4,998
한국서부발전(주)	발전건설	• 공주복합, 여수복합, 재생에너지 등 신규 발전소 건설	8,205
	설비보강	• 발전설비 취약개소 보강 및 설비개선	6,347
	투자자산	• 국내외 열병합 및 재생에너지 출자 사업	764
한국중부발전(주)	신규발전건설	• 보령신복합, 함안복합, 제주복합 건설 등	3,940
	발전설비보강	• 계획예방정비공사 및 발전소 설비보강	3,724

자료: 각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의 당기순이익에 따른 지방세 납입 규모는 연간 평균 28.3억원 규모이다.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 지방세 납입 현황]

(단위: 억원)

기관명	이전 시점(N)	이전 이후 시점 (N+1)	지방 이전 이후(N+1) 지방세 지급액	
			합계	연간 평균
합계	-	-	1,922	28.3
한국전력공사	2014	2015	918	83
한국남동발전(주)	2014	2015	171	16
한국남부발전(주)	2014	2015	161	15
한국동서발전(주)	2014	2015	239	22
한국서부발전(주)	2015	2016	216	22
한국중부발전(주)	2015	2016	217	22

자료: 각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발주한 '에너지 전환기 전력 공기업들의 새로운 역할' 연구 용역 제안서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자회사 통폐합이 논의되고 있으며, 통폐합은 이전 지역 지방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마. 소결

국토교통부는 「제2차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2023~2027)」을 수립하면서, 제1차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목표와 그에 따른 성과를 평가하였다. 또한 이전공공기관 관리계획을 수립하며,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사업비 투입과 역량을 관리하고 있다. 추후 지방이전사업 추진을 위해 혁신도시조성 및 이전공공기관 이전 사업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제2차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에서 제시한 성과 목표 중 일부 지표들(미혼 독신자를 포함한 가족동반 이주율, 정주환경만족도, 주민등록인구 전입인원, 공동주택 공급 목표치)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제1차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2018~2022)」에서 제시한 입주기업수, 이전공공기관 임직원수, 고용인원, 지역인재 채용률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다. 반면 일부 지표들(미혼 독신자를 포함한 가족동반 이주율, 정주환경만족도, 주

민등록인구 전입인원, 공동주택 공급 목표치)은 집행률을 미달하였다. 가족동반 이주율은 75% 목표치 중 2025년 71%로 목표치에 미달하였으며, 이중 공동주택 공급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충북과 경북의 경우 직원 정주율 또한 50% 수준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주민등록인구 전입인원은 267,869명 목표치 중 2025년 234,684명, 공동주택 공급 목표치는 92,599호 중 87,313호로 목표치를 미달하였다. 산학연 클러스트[65] 분양률은 2025년 12월 기준 계획 대비 분양률이 81.8%[66]이며 분양 면적 대비 입주율은 56.6%로 추가 입주가 필요한 상황이며, 입주기업수, 고용, 지역인재 채용률 등 혁신도시 조성 과정에 필요한 전반적인 양적 목표는 달성하였지만, 정주환경만족도와 같은 질적 지표는 70점 목표에 2025년 69.4점으로 종합적인 만족도를 소폭 미달하였다.

둘째, 이전공공기관은 대체로 직원 이주 계획목표를 달성했지만 가족동반이주 목표는 다소 미달하였으며, 일부 기관은 최종승인 계획 대비 현원이 감소하였다.

이전공공기관은「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라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이전대상 직원수를 포함한 이전의 규모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있다. 각 기관별 제출 자료에 따르면 전체 계획 인원 41,271명 중 본사에 근무하는 현원은 48,934명(117.2%)으로 당초 계획 대비 초과하였지만 미혼독신을 포함한 가족동반이주의 경우 2025년 71%이며, 2025년 기준 이전 인원 기준 울산 73.3%, 강원 71.8%, 경남 70.2%, 충북 50.5%, 경북 51.3% 5개 지자체는 목표 달성을 미달하였다.

이전공공기관 중 최종승인 계획 대비 현재 본사에 근무하고 있는 현원이 감소한 기관은 감소폭이 가장 큰 한국전력기술(주)의 경우 임직원이 2,172명, 기간제근로자 등 229명, 자회사 179명, 총 2,580명으로 299명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계획 대비 인원은 89.6%이다.[67]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한국광물자원공사(550명)과 한국광해관리공단(186명) 합산 이전 계획인원 736명 중 현재 해외 광물자원 개발 등으로

65) 혁신클러스터 용지 = 이전대상 공공기관 용지 +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66) 이전공공기관 부지 포함

67) 한국전력기술(주)에 따르면, 원전 사업 규모가 축소되면서 원자로설계개발본부 및 협력업체 인원 감소 영향으로 계획 대비 정주율이 100%에 미달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인한 경영 악화로 조직 규모가 축소되어 그 결과 본사 현원이 530명으로 정주 계획 인원을 미달하였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121명 미달), 한국식품연구원(61명 미달), 정보통신정책연구원(33명 미달)은 본사 비정규직 계약 기간 만료 이후 미채용으로 현원이 감소되었다고 언급하였다.

셋째, 이전공공기관 기관장 미이주 기관은 53개이며, 수도권행 셔틀버스를 운영한 기관은 60개 기관으로 2025년까지 총 1,989.9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105개 이전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방이전사업의 시행 ·지원 주체인 기관장[68]의 주소지 이전현황을 조사한 결과 기관장이 미이주한 기관은 53개 기관이며, 이 중 현재 기관장이 공석인 7개 기관을 제외하고 46개 기관의 기관장이 이주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미이전 사유는 임기 3년으로 한시직이어서 현실적으로 거주지 이주에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단신 부임해 관사에 거주하는 경우는 가족 구성원 직장 등 가족 생활권 유지를 위해 단독 부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105개 이전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수도권행 셔틀버스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60개 기관이 수도권행 셔틀버스를 운영하거나 운영한 적이 있으며 이전 기관 중 강원도 혁신도시로 이주한 9개 기관 중 8개 기관이 셔틀을 운영하고 있으며, 충북은 이전공공기관 8개 기관이 합동으로 셔틀을 운영하고 있다. 광주·전남은 13개 기관 중 12개 기관이 이용하고 있다. 전체 지방 이전공공기관 중 수도권행 셔틀버스를 운영하거나 운영한 적 있는 60개 공공기관의 셔틀버스 예산액 총액은 2010~2025년 누적액이 1,989.9억원이며, 그 중 경남 356.4억원, 광주·전남 344.6억원, 강원 286.6억원 순으로 예산 투입액이 많았다. 지역별로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평균 예산액이 높은 지역은 세종(기관당 97.4억원)[69], 경북(기관당 88.6억원), 경남(기관당

---

68) 제4조(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①이전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이전의 규모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이전시기에 관한 사항 3. 이전비용의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이전계획은 수도권에 있는 이전공공기관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 및 그 기능의 수행을 위한 조직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③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7조(이전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등) ①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이주직원에 대하여 이사비용 및 이주수당의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69) 세종의 경우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일부 연구원이 수도권발 셔틀버스를 함께 이용하였음

39.6억원), 강원(기관당 35.8억원) 순이며 충청북도의 경우 이전한 모든 기관이 셔틀버스를 운영하였다.[70]

넷째, 지방이전 전후 이전공공기관의 퇴사율이 높게 나타나며, 장기적으로 수도권 인재가 지방인재로 대체되는 효과가 발생해 특정 대학으로의 채용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도입이 필요하다.

공공기관 이전 전후 퇴사율은 기관 이전 전 2.66%에서 기관 이전 후 3.11%로 증가하였으며 이직을 위해 다양한 직군·연령에서 복합적인 이유로 퇴사자[71]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퇴사인력 충원을 위해 신규인력이 채용되며, 신규채용인재 중 30% 이상은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 정년퇴직 및 지방이전 등 다양한 사유로 퇴사한 이전공공기관 정원은 이전지역인재채용을 통해 충원되며, 퇴사율 또한 이전지역인재 퇴사율 또한 주요 공공기관을 기준으로, 신규채용인재에 비해 낮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전공공기관의 수도권 인재가 지방인재로 지속적으로 대체됨을 알 수 있다. 반면, 지역 특정 대학의 채용 쏠림 현상과 같은 부(-)의 효과도 발생하므로 지역 대학 쏠림 완화 장치 도입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이전공공기관은 수립된 이전공공기관 관리 계획에 맞춰 지역산업육성, 지역인재육성, 지역주민지원, 유관기관협력, 지역생산물품 우선 구매를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은 매년 지역산업육성, 지역인재채용, 지역인재육성, 지역주민지원, 유관기관협력, 지역생산물품 우선 구매 실적을 점검하고 있으며 세부 관리계획별 차질 없이 사업비 집행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관별 수요 예측 및 세부적인 사업관리가 필요하다.

지역산업 육성의 경우 사업비 집행률은 2024년 80.7%로 미달하였으며, 사업비 집행 주요 미달사유는 ① 착공 연기 ② 투자시기 조정 ③ 예비타당성 심사 수행 ④사업계획 변경·낙찰차액 발생 ⑤ 경영상 이유로 예산 집행 조정 ⑥ 지역업체 참여

70) 현재 계약기간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은 2026.3~2026.6월까지 수도권 셔틀버스 운영 종료 예정

71) 퇴사 주요 사유는 기관 지방 이전,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 문제, 경력개발·이직, 무기계약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이직 증가,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명예퇴직자 증가, 고령층 명예퇴직, 저연차 직원 이직 증가 등

저조 및 미선정 등이며, 일부 기관의 경우 역량 있는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역산업 육성 수요 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인재육성 사업의 경우 사업비 집행률은 2023년 24.4%로 미달하였으며, 주요 사업비 집행 미달 사유는 ① 모집 정원 대비 선발인원 미달 ② 청년인턴 등 중도 퇴사 ③ 계획 변경 ④ 예산 확보 어려움으로 미실시 ⑤ 채용규모 감소에 따른 사업비 감소 등이며, 특히 지역인재육성 사업의 경우 모집 정원 대비 선발인원 미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인재 참여를 좀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주민 지원 사업의 경우 사업비 집행률은 2023년 87.4%, 2024년 69.9%로 미달하였으며, 주요 사업비 집행 미달 사유는 ① 사업축소·계획 지연 및 변경으로 인한 경비 감소 ② 경영 위기·수익 감소에 따른 예산 감소 ③ 수요 감소 ④ 타 사업으로 대체 등이며, 일부 기관의 경우 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과정 등을 고려하여 사업이 적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유관기관 협력 사업비 집행률[72]을 미달한 지역은 연도별 지역별 편차가 큰데, 2023년 부산(51.4%), 광주·전남(11.2%) 울산(48.4%), 강원(92.0%), 충북(97.7%) 경남(72.6%), 제주(12.3%)이 사업비를 계획대로 집행하였다. 주요 사업비 집행 미달 사유는 ① 수요 예측 실패 ② 지원자 감소 ③ 사업 재분류 및 지원대상 축소 ④ 과제 부적정 판정으로 예산 미집행 ⑤ 예산 부족 및 사업 미추진 등으로, 이 중 일부 기관의 경우 지원자 감소, 수요예측 실패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사업 관리 및 참여를 좀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생산물품 우선구매 사업비 집행률은 2023년 91.9%, 2024년 95.7%로 사업비 집행을 미달하였으며, 주요 사업비 집행 미달 사유는 ① 예산 및 수요 감소 ② 지역구매물품 조달의 어려움(기관 특성상 용역 중심 입찰 방식 활용, 경쟁입찰, 한정적인 물품 리스트, 적확한 물품 부재 등) ③ 업무 특수성으로 인해 지역 기술 보유 업체 풀 확보의 어려움 ④ 도전적 목표 설정 ⑤ 지역적 특성(제주도, 충북 오송 등) 상 지역물품 구매의 어려움 등이며 이 중 기관 다수가 언급한 지역구매물품 조달이 어려운 측면은 지역구매물품의 범위 확대(지역 범위의 확대, 품목 확대) 등을 통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

72) 전체 사업비 집행률은 달성함

3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후 관리 현황

가. 이전공공기관 수도권 잔류 현황

이전공공기관은 이전지역 본사와 기존 조직 내 지역 본부 및 지사의 형태로 운영되는 기관과 이전 지역 본사로만 운영되는 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부 혹은 지사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전체 105개 중 56개로 53.3%이다. 105개 기관 전체 정원은 2025년 기준 232,465명으로 이 중 본사 현원이 49,241명으로 정원 대비 21.2% 수준이다. 정원에서 본사 현원을 차감한 인원은 183,224명으로 본사 외 인력 규모 비중은 78.8%로 추정된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적십자사 등과 같이 본사 외에 지사 인력 규모가 큰 기관들에 기인한다.

[이전공공기관 지역별 인력 규모(2025년 기준)]

(단위: 개, 명, %)

구분	기관수			본사 현원 (C)	정원(D)	[정원-본사 현원] (E=D-C)	정원 대비 비중	
	계 (A)	지사 有(B)	비중 (B/A)				C/D	E/D
합계	105	56	53.3	49,241	232,465	183,224	21.2	78.8
부산	11	8	72.7	4,106	10,511	6,405	39.1	60.9
대구	8	4	50	3,550	11,194	7,644	31.7	68.3
광주전남	13	8	61.5	6,984	45,866	38,882	15.2	84.8
울산	7	4	57.1	4,121	20,960	16,839	19.7	80.3
강원	9	7	77.8	7,037	44,213	37,176	15.9	84.1
충북	8	3	37.5	3,264	5,074	1,810	64.3	35.7
전북	5	3	60	2,572	15,807	13,235	16.3	83.7
경북	5	4	80	4,032	16,672	12,640	24.2	75.8
경남	10	9	90	5,081	26,086	21,005	19.5	80.5
제주	1	1	100	322	558	236	57.7	42.3
세종	19	2	10.5	4,197	6,400	2,203	65.6	34.4
개별	9	3	33.3	3,975	29,124	25,149	13.6	86.4

주: E=[정원-본사 현원]은 지사 등 지역 본부 현원을 의미함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및 각 기관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이전공공기관 중 지방 이전 후에도 기존 수도권 내 지사와 별개로 수도권 내 잔류인원·시설이 존재하는 기관이 있다. 이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이전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사항으로, 이전 규모 및 범위를 변경하기 위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 후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73] 이전공공기관 중 수도권 잔류인원·시설이 존재하는 기관은 전체 105개 기관 중 강원 4개, 충북 1개, 경북 1개, 대구 4개, 경남 7개. 울산 6개, 부산 6개, 전북 1개, 광주 전남 9개, 제주 1개, 세종 5개, 개별 2개 총 47개 기관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 수도권 내 잔류인원 및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전공공기관 중 수도권 잔류인원 및 잔류시설이 존재하는 기관(2025)]

(단위: 개)

구분	지역	수도권 잔류인원·시설 有	수도권 잔류인원·시설 無
혁신도시	강원 (4)	대한적십자사, 한국관광공사, 국립공원공단, 한국도로교통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광해광업공단, 대한석탄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충북 (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고용정보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소비자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경북 (1)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전력기술(주)
	대구 (4)	한국부동산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가스공사,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신용보증기금,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사학진흥재단
	경남 (7)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주택관리공단(주), 국방기술품질원, 한국남동발전(주)
	울산 (6)	한국석유공사,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동서발전(주)

73) 제4조(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①이전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이전의 규모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이전시기에 관한 사항 3. 이전비용의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지방이전계획을 검토·조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단위: 개)

구분	지역	수도권 잔류인원·시설 有	수도권 잔류인원·시설 無
	부산 (6)	한국자산관리공사,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남부발전(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북 (1)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국민연금공단
	광주 전남 (9)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전력공사, 한전KDN(주),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전KPS(주)
	제주(1)	공무원연금공단	-
세종시 (5)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토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개별 이전	오송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기타 (2)	한국장학재단(대구),한국국제교류재단(제주)	한국수력원자력(주)(경주), 한국중부발전(주)(보령), 한국서부발전(주)(태안), 한국원자력환경공단(경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익산)

자료: 각 기관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이전공공기관 수도권 잔류인력 현황 중 잔류인력이 많은 기관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74]은 잔류인원이 288명으로 본사 현원 대비 102.9%, 정원 대비 31.4% 비중을 차지하며, 한국예탁결제원 267명, 한국인터넷진흥원 174명(본사 현원 대비 28.9%, 정원 대비 21.5%), 한국산업인력공단 135명, 한국전력공사는 133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18명(본사 현원 대비 88.7%, 정원 대비 45.4%), 한국자산관리공사 108명 순으로 수도권 내 잔류하고 있다.

74)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경우 2026년까지 단계별 이전계획을 통해 지방시대위원회 승인인력 150명만 최종 잔류 예정

[이전공공기관 수도권 잔류인력 현황(2025)]

(단위: 명, %)

기관명	지역	수도권 잔류 인원 (A)	본사 현원 (B)	정원 (C)	비중	
					본사 현원 대비	정원 대비
					A/B	A/C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경남	288	280	916	102.9	31.4
한국예탁결제원	부산	267	458	754	58.3	35.4
한국인터넷진흥원	광주전남	174	602	811	28.9	21.5
한국산업인력공단	울산	135	695	1,880	19.4	7.2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	133	1,690	23,682	7.9	0.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광주전남	118	133	260	88.7	45.4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	108	835	2,225	12.9	4.9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광주전남	76.5	511	1,087	15.0	7.0
한국관광공사	강원	74	514	766	14.4	9.6
공무원연금공단	제주	70	322	558	21.7	12.5
대한적십자사	강원	70	146	4,996	47.9	1.4
한국도로공사	경북	56	1,162	9,138	4.3	0.5
한국장학재단	대구	50	493	539	10.1	9.3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광주전남	45	189	296	23.8	15.2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대구(제주)	43	627	715	6.9	6.0
근로복지공단	울산	95	1,105	10,838	8.6	0.9
한국국제교류재단	개별	31	110	189	28.2	16.4
한국부동산원	대구	30	552	1,251	5.4	2.4
한국개발연구원	세종	29	563	540	5.2	5.4
한국전력거래소	광주전남	25	463.5	534	5.4	4.7
한국저작권위원회	경남	24	151	179	15.9	13.4
한국에너지공단	울산	23	503	771	4.6	3.0
국토안전관리원	경남	22	590	1142	3.7	1.9
한국콘텐츠진흥원	광주전남	19	341	564	5.6	3.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17	1,848	10,199	0.9	0.2

(단위: 명, %)

기관명	지역	수도권 잔류 인원 (A)	본사 현원 (B)	정원 (C)	비중	
					본사 현원 대비	정원 대비
					A/B	A/C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충북	15	432	508	3.5	3.0
한국도로교통공단	강원	13	391	3,157	3.3	0.4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대구	10	365	439	2.7	2.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종	9	344	399	2.6	2.3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세종	8	163	179	4.9	4.5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전북	8	31	100	25.8	8.0
한국세라믹기술원	경남	8	160	235	5.0	3.4
한전KDN(주)	광주전남	7	1,156	3,359	0.61	0.21
게임물관리위원회	부산	7	101	172	6.9	4.1
영화진흥위원회	부산	5	112	160.5	4.5	3.1
국립공원공단	강원	5	231	3161	2.2	0.2
에너지경제연구원	울산	5	185	199	2.7	2.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울산	4	604	2,077	0.7	0.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남	4	522	1,473	0.8	0.3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산	4	488	1,117	0.8	0.4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종	1	101	99	1.0	1.0

주: 1. 정원의 경우 소수점 첫 번째에서 반올림함
2. 한국개발연구원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지사 없이 본사 인력만으로 운영되며, 일시적으로 인력을 채용해 현재 정원보다 현원이 많음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및 각 기관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이전공공기관 중 수도권 잔류인력 규모가 큰 주요 기관은 고유 사업 및 해외 사업 수주 등으로 인한 사업량 증가 사유로 잔류인력을 늘리고 있다. 일부 기관의 경우 미승인 잔류인력 규모가 커서 지방시대위원회의 신속한 심의가 필요하며, 잔류인원의 비중이 과도하게 높다면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심의·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전공공기관의 경우 미승인 잔류인력에 관해 가능하다면 원칙대로 이전하고 가급적 지방시대위원회의 승인 이후 수도권에 잔류할 수 있도록 인력 관리방

안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시험검사 승인 업무 수행을 위해 지방시대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인력 150명과 승인 대기중인 미승인 인력 138명이 수도권(서울)에 잔류하고 있다. 주요 분야는 전자파분야, 기계에너지분야, 환경분야, 의료분야, 기타 사업분야(인증, 교육 등), 고객지원 및 건물유지 관리, 경영기획 부문이다. 2024년 12월 승인된 지방이전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수도권 잔류인력을 기존 4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고, 이전인력을 기존 260명에서 340명으로 늘려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따르면 승인분야 업무량 증가와 2014년 이후 2회에 걸쳐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함에 따라 수도권 잔류인력이 증가하였다고 언급하였다.[75]

한국전력공사는 상시 잔류 17명과 UAE원전(49명), 사우디원전(37명), 해외사업 개발입찰(30명)은 지방시대위원회에 승인을 받아 한시잔류 중이다. 특히, 사우디원전건설 잔류인력(37명)은 2024.12 만료 이전, 美 웨스팅하우스사와의 지적재산권 분쟁이 종결되지 않아 잔류기한 연장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나, 2025. 1월 한·미 정부간 MOU체결 및 분쟁해결로 사업지속 추진 여건이 확보되어 부득이하게 잔류기한 종료 후 연장절차가 추진되었다.[76]

그 외에도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잔류인력 55명, HRDK 서울 고객센터 61명 등 승인인력 122명, 미승인 인력 13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은 근로복지연구원 41명이 현재 서울에 잔류중이며 '26년 상반기 중 지방이전이 확정되었다.[77]

---

75) 비정규직 474명 정규직 전환 및 시험검사 접수현황(旣승인분야) : (`09년) 23,970건→(`24년) 56,763건 / ↑2.4배, 보유 KOLAS 규격 : (`09년) 670개→(`24년) 2,418개 / ↑3.6배, 시험품목 : (`09년) 1,048개→(`24년) 3,535개 / ↑3.4배

76)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잔류기한 만료 전·후 지자체 협의부터 지방시대위원회 회의 참석 등 잔류기한 연장을 위해 절차를 준수하며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77)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연구원의 별도 임차 공간이 마련되어 현재 청사계약 등 절차 진행 중

[주요 이전공공기관 잔류인원 현황(2025)]

(단위: 명)

기관명	지역	잔류인원		잔류 인원
		승인	미승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경남	150	138	(승인) 전자파분야(전기전자+정보통신) 25명, 기계에너지분야 25명, 환경분야 40명, 의료분야 20명, 고객지원 및 건물 유지관리 40명 (미승인) 전자파분야(전기전자+정보통신) 48명, 환경분야 42명, 의료 20명, 기타사업분야 17명, 경영기획 11명
한국전력공사	광주 전남	133	0	(승인) 상시잔류 17명(전력빅데이터센터 8명, 아트센터운영 5명, 법률현안대응 4명), 한시잔류 116명(UAE 원전건설 49명, 해외사업 개발 입찰 30명, 사우디 원전건설 37명)
한국산업인력공단	울산	122	13	(승인)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잔류인력 55명, HRDK 서울 고객센터 61명, 인천공항 EPS 서비스센터 6명 (미승인) 국가자격채점센터 13명
근로복지공단	울산	54	41	(승인)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미승인) 근로복지연구원 '26년 상반기 내 울산 이전 확정

자료: 각 기관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주요 수도권 잔류시설의 경우 수도권 내 인프라 지원, 대중공간, 사업 지원조직 잔류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금액 기준 잔류시설의 가치가 높은 상위기관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부설기관인 IoT기술지원센터는 지방이전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013년 본원에 편입되면서 미승인 잔류시설(금액 2,758억원)로 분류되었으며 이후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라 2023년 민간으로 기능이전(한국전파진흥협회)을 완료하였다.[78]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대학로 예술가의집, 아르코미술관,

78)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따르면 현재는 시설에 대한 승인 절차를 관계부처(국토부)와 협의중임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 아르코예술극장, 대학로예술극장 등을 운영하기 위한 인원을 잔류하였으며, 잔존 부동산은 2,088억원으로 추산되며, 아르코예술기록원은 관리비 포함 연간 10억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판교에 교통데이터 관련 시설에 56명(550억원)이 잔류하였으며, 한국전력거래소는 경기도 의왕에 계통운영 시스템 개발용 서울급전소(176억원)에 25명이 잔류하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은 고객지원·기부금 조성 및 인재육성사업(멘토링) 등 사업 운영을 위해 잔류시설(95억원 규모)에 50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다.

[주요 수도권 잔류시설 현황(금액 상위 기준)]

(단위: 명, 억원, m^2)

기관명	지역	인원/금액 (면적)	잔류시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충북	0/2,758 (18,246)	**(인천)** IoT기술지원센터, 2차 지방이전계획 승인(`12.7.20.) 당시 부설기관으로 지방이전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인천 IoT기술지원센터가 기관 조직개편에 따라 본원으로 편입(`13.7)되어 미승인 잔류시설로 분류 → 2023년 한국전파진흥협회로 기능이전 완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광주 전남	118/2,088 (23,327)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집, 아르코미술관,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11.06), 아르코예술극장, 대학로예술극장, 아르코예술기록원(24.12) (아르코예술기록원 연간임차료 10억원[관리비 포함])
한국도로공사	경북	56/550 (15,786)	**(판교)** 교통데이터 관련 국책사업 및 스마트 도로관련 R&D, 업무시설, 특수시설, 기타시설 등
한국전력거래소	광주 전남	25/176 (4,588)	**(경기도 의왕)** 서울급전소, 계통운영시스템 개발 직원용
한국장학재단	개별 (대구)	50/95 (1,981)	**(수도권)** 고객지원·기부금 조성 및 인재육성사업(멘토링)·학자금재원 조달을 위한 재단채 발행 등 금융업무 수행·학생종합복지센터(대학생 연합기숙사) 시공 관리 및 운영·서울센터(창업지원형 기숙사)운영

자료: 각 기관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잔류시설의 면적이 넓은 경우 주로 외국인 대상 관광정보 제공 및 체험·홍보 공간(한국관광공사, 26,418m^2, 종전부동산), 인터넷 관련 고유 사업 운영공간(한국인터넷진흥원 10,131m^2, 임차보증금 100억원/연간임차료 21억원), 국회·전산장비 관리 및 지역밀착 업무를 위한 영업지원공간(한국자산관리공사, 8,277m^2, 종전부동산), 하자심사분쟁조정 업무 등(국토안전관리원 7,489m^2, 국토부 소유 국유재산 무상임차), 교육 공간(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665m^2, 종전 부동산) 등의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주요 수도권 잔류시설 현황(2025, 면적 상위 기준)]

(단위: 명, m^2)

기관명	지역	인원 (면적)	잔류시설
한국관광공사	강원	74 (26,418)	**(서울/수도권)** 종전 부동산 잔류, 외래객 및 내국인 대상 관광정보 제공, 체험 등 한국관광 홍보활동,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광벤처사업 및 관광인력 양성, 국내외 언론을 활용한 한국관광 홍보활동
한국인터넷진흥원	광주 전남	174 (10,131)	**(서울)** 인터넷침해대응(센터), 지식정보보호산업지원(센터), 인터넷주소자원관리(센터), 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 KISA 아케데이 교육(장) 사업, 주요통신서비스사업자 안전진단, IoT 혁신센터 업무,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 점검 (임차보증금 100억원/ 연간 임차료 21억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	108 (8,277)	**(서울)** 기존 본사건물. 영업지원(홍보, 국회, 전산장비 관리 등) 및 지역밀착 업무(기업지원 등)
국토안전관리원	경남	22 (7,489)	**(경기도 고양)** 국토부 소유 국유재산 무상 임차, 하자심사분쟁조정위 20명, 디지털전략실(전산) 2명(한시적 잔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울산	4 (3,665)	**(수도권)** 교육원-교수실- 수도권교육팀, 건설체험·실습 교육과정 운영 및 수도권 교육 수요 충족

주: 수도권 잔류시설 현황 중 금액 상위 기관 일부는 중복으로 제외하였음
자료: 각 기관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후 관리 현황

(1) 지방 이전 이후 지정된 공공기관 현황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완료된 2019년 이후 연도별 공공기관 지정·해제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방 이전을 완료한 국토연구원에서 분리된 건축공간연구원(세종)이 2021년 신규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제주도로 지방 이전한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청으로 통합을 전제로 기관이 해산되어, 조직 일부는 재외동포청으로 흡수되고 그 외 조직은 신규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인 재외동포협력센터(서울)로 배정되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후 수도권에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서울, 2024년 지정), 스포츠윤리센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서울, 2025년 지정) 등이다.

[연도별 공공기관 지정·해제 현황]

(단위: 개)

구분	지정	신규	해제	신규	해제
2020	340	4	3	아동권리보장원, 재단법인 자활복지개발원, (재)축산환경관리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사단법인 한국산학연협회, 의료법인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해산, 정부지원 축소)
2021	350	12	2	건설기술교육원, **건축공간연구원(세종),**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립항공박물관,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한국재료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전엠씨에스(주)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주)한국건설관리공사
2022	350	3	2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아시아문화원, **한국에탁결제원**
2023	347	1	4	한국특허기술진흥원, **재외동포협력센터('23.6월, 서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재외동포재단('23.6월)**
2024	327	3	23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서울),** 한국차산기술협회, (재)한국통계정보원	수자원환경산업진흥(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

(단위: 개)

구분	지정	신규	해제	신규	해제
					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2025	331	4	0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스포츠윤리센터(서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서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서울)**	
2026	342	11	0	한국관세정보원(대전),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부산), **공간정보산업진흥원(경기), 양육비이행관리원(서울),**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인천), **한국스포츠레저(주)(서울), (재)한국통계진흥원(서울),** 한국물기술인증원(대구), **국립농업박물관(수원), 중앙사회서비스원(서울), 전국재해구호협회(서울)**	

주: 매년 초 공공기관 정기 지정 고시를 기준으로 작성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① 재외동포재단(제주) 법인 청산 후 설립된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서울 이전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의 민족적 유대감 유지와 거주국의 모범 구성원으로 성장을 지원할 목적으로 1996년 설립되었다. 동 재단은 2018년 7월 제주도 서귀포시로 지방이전을 완료하였으며, 61명이 제주 본사에서 근무하였으며 14명이 서울사무소에 잔류하였다. 이주지원비 5,800만원, 이사비 2억원 및 숙소 건축 매입비로 34.98억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전 재원은 20억원의 임대보증금과 국비 14.63억원, 외부차입금 14.98억원을 통해 마련하였다.

[재외동포재단 지방이전 세부 현황(2018~2022)]

구분	최종 승인 현황 (2018.09.20)	2022.12.31.
1. 이전시기(YYYY-DD)	2018.07.	2018.07.
2. 이전지역	제주 서귀포시	제주 서귀포시
3. 이전방법	임차	임차
4-1. 이전인원(명)	58(정원)	66(정원)/61(현원)
4-2. 잔류인원(명)	14(정원)	14(정원)/14(현원)
5-2. 이전시설(㎡)	3,205	3,579
업무시설	3,205	3,579
6-1. 이전비용(억원)	44.78	49.61
이주지원비	0.58	0.58
이사비(기관, 개인)	2	2
숙소 건축/매입비	30	34.98
6-2. 재원조달방법(억원)	44.78	49.61
자체보유자금	20(임대보증금)	20(임대보증금)
국비	14.78	14.63
외부차입금	10	14.98
7-1. 이주직원용 숙소		
확보방법(매입/임차)	매입	매입
수용규모(세대수/총면적/인원)	20/702.57㎡/22	17/594.87㎡/19
7-2. 순환근무자용 사택(직원)		
확보방법(신축/매입/임차)	-	매입
수용규모(세대수/총면적/인원)	-	3/107.7㎡/3
7-3. 임원 사택		
확보방법(신축/매입/임차)	임차	임차
수용규모(세대수/총면적/인원)	3/302.79㎡/3	3/244.91㎡/3
8-1. 수도권 잔류 업무	대외협력 및 방문동포 지원 등	대외협력 및 방문동포 지원 등
8-2. 수도권 잔류 시설	서울사무소	서울사무소(임차)
9. 이전계획 변경사유	임차청사 확보 필요 및 정원 증가 등	-

자료: 재외동포협력센터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이후 재외동포재단은「재외동포기본법」공포로 2023.6.4. 해산되었으며, 재외동포협력센터로 신설되었다(2023.6.5.).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19228호, 2023.3.4. 공포, 2023.6.5. 시행)에 따라 재외동포재단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은 재외동포

청이 승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재외동포기본법」(2023.5.9. 공포) 부칙 제4조에 따라 재외동포재단 소속 직원 71명을 재외동포협력센터[79]로 승계하였다. 이후 2023년 8~9월 재외동포청으로 채용된 직원 20명과 정년 및 일반 퇴직 6명을 제외한 현원 45명이 재외동포협력센터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2026년 2월 1일 기준 현원 39명이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체보유자금 20억원, 국비(14.63억원)와 차입금(14.98억원)을 투입하여 이주한 재외동포재단 제주 본사를 활용하지 않고 서울사무소에 전원 이주(39명)하여 근무하는 것은 법인 해산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재외동포협력센터가 재외동포재단의 업무와 인원을 대부분 승계했다는 점에서 서울로의 이전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취지에 다소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80]

②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된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검토 필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5조제5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로 인가하는 경우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령 제25조에 이전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관 설립 및 신규 지정 시 입지와 관련된 법령]

구분	관련 법령
신규·설립 비수도권 입지 우선 고려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5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은 제외한다)을 설립하거나 신규로 인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입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023년 7월 시행)
예외 규정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령 제25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79) 2023년 6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

80) 다만,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센터에 따르면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5조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진행 중임을 언급함

구분	관련 법령
	관"이란 공공기관 중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1. 중앙행정기관 2. 수도권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기관 3.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및 수도권 안의 폐기물 매립지에 있는 기관 4. 수도권에 있는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 지역문화복지시설, 의료시설 등으로서 수도권 주민의 문화생활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기관 5. 수도권에 있는 문화유적지, 묘지, 매립지, 남북한 간 출입장소, 방송시설, 철도역, 공항 및 그 관련 시설 등을 관리하는 기관 6. 구성원 간의 상호부조, 복리 증진, 권익 향상 또는 업무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7. 그 밖에 기관의 성격 및 업무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에 두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기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 개정된 2023년 7월 이후 지정된 신규 공공기관 중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 해당 기관 중 국립농업박물관(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해당)을 제외하고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7호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81)]

또한 이 기관 중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제외하고 소관 부처 모두 비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도권에 두는 것이 불가피한 기관이 아니라면 국정과제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향후 지방이전 대상 기관으로 편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81)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의 특수법인으로, 자살예방 정책수립 지원 및 교육, 홍보,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상담과 지원 등을 위탁수행
국립농업박물관: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5조제5항 시행('23. 7.) 이전 법인 설립,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5조 관련 제외기관 해당,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수도권에 있는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 지역문화복지시설, 의료시설 등으로서 수도권 주민의 문화생활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기관
중앙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사회서비스원법).」에 의해 특수재단법인 형태로 설립(2022 3.25.)되고 공직유관단체 지정(2023.1.1.) .이후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2026.2.12.)되었음. 중앙사회서비스원에 따르면 사회서비스원법에 의해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령 제7조(시도계획의 수립지침 등)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또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련 법령」 예외 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다고 언급하였지만 사회서비스원법 상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에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 정관 변경 여부에 따라 소재지 변화가 가능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 중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연도	신규 지정	소관 부처(소재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
2024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서울)	식품의약품안전처 (충청북도 오송시)	x
2025	스포츠윤리센터(서울)	문화체육관광부(세종특별시)	x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서울)	국토교통부(세종특별시)	x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서울)	보건복지부(세종특별시)	x
2026	공간정보산업진흥원(경기)	국토교통부(세종특별시)	x
	양육비이행관리원(서울)	성평등가족부(서울특별시)	x
	한국스포츠레저(주)(서울)	문화체육관광부(세종특별시)	x
	(재)한국통계진흥원(서울)	국가데이터처(대전광역시)	x
	국립농업박물관(수원)	농림축산식품부(세종특별시)	x
	중앙사회서비스원(서울)	보건복지부(세종특별시)	x
	전국재해구호협회(서울)	행정안전부(세종특별시)	x

주: 매년 초 공공기관 정기 지정 고시를 기준으로 작성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이전공공기관 사후 관리 방안 법령 명시 필요[82)]

현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법령 및 이전공공기관에 관한 지침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전 완료 공공기관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내용은 현행 법령상에는 부재하고, 지침에서만 규정하고 있다.[83)] 현행 법체계에는 이전 완료 공공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절차 및 항목을 규정한 내용이 부재하여, 그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수립)의 절차와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항목을 준용하여 이전 완료 공공기관을 관리하였다.

82) 국토연구원 「지방이전 공공기관 사후관리방안 마련 연구」 (2023). 23~24p 및 68p 인용.

83) 법령에서는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전에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하고 변경하는 절차 및 항목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침에서는 이전 완료 공공기관의 사후관리 방안으로써, 지방 이전 완료 후 지방이전계획 변경 절차 및 항목을 규정하고 있다.

[이전공공기관 관리 법령]

구분	관련 법령
이전공공기관 관리법령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①이전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이전의 규모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이전시기에 관한 사항 3. 이전비용의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이전계획은 수도권에 있는 이전공공기관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 및 그 기능의 수행을 위한 조직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③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지방이전계획을 검토·조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이전공공기관 관리 시행령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②법 제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전공공기관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2. 1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이전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3. 제1항제3호의 이전비용 산정을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이러한 이유로 법령에서 이전 완료 공공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내용이 부재한 탓에, 지침 내 사후관리 방안에서는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을 완료한 이후에도 이전하기 전에 수립한 지방이전계획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1차 지방이전계획이 2019년에 완료되었고 사후 관리 단계인 이전공공기관을 지방이전계획 법령으로 관리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전 완료 공공기관의 사후

관리 방안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추진될 예정이므로, 이전 완료 공공기관과 추후 이전할 공공기관 간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현행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이전대상 공공기관을 "이전공공기관"으로 규정하면서, 개별 조문에서 "이미 이전한 공공기관"을 전제로 한 내용[84]들을 규정하고 있는 바, 명확한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이전공공기관"에 추후 이전할 공공기관(이전공공기관)과 이미 이전을 한 공공기관(이전 완료 공공기관)을 구분하여 포함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다. 소결

이전공공기관 중 수도권 잔류인원·시설이 존재하는 기관은 105개 이전공공기관 중 총 46개 기관이며, 지방시대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 수도권 내 잔류인원 및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추후 공공기관 지방이전기관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이전공공기관은 수도권 잔류인원 및 잔류시설에 관해 이전공공기관계획에 명시된 내용을 가급적 준수해야 한다.

이전을 완료한 이전공공기관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이전공공기관 계획을 수정 가능하며, 수도권 잔류인력 및 시설 등도 심의 과정을 거쳐 변경 가능하다. 이전공공기관의 잔류인원의 비중이 과도하게 높다면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잔류 인력 규모를 심의·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부 기관의 경우 심의 대기중인 미승인 잔류인력 규모가 커서 지방시대위원회의 신속한 심의가 필요하며, 이전공공기관의 경우 미승인 잔류인력에 관해 가능하다면 원칙대로 이전하고 가급적 지방시대위원회의 승인 이후 수도권에 잔류할 수 있도록 인력 관리방안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

84) 지역인재채용(제29조의2), 지역발전기여(제29조의3), 우선구매(제29조의5), 지역기업우대(제45조의5), 국공유재산감면(제46조), 이주직원지원(제47조) 등의 규정에서는 "이전공공기관"이 이미 이전한 이후의 활동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임

둘째, 신규 지정된 수도권 공공기관의 경우 담당 부처 소재 지역 및 관련 법령을 고려하여 지방이전 대상 기관으로 편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85] 제25조제5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로 인가하는 경우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 개정된 2023년 7월 이후 지정된 신규 공공기관 중 일부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7호[86]에 따른 지방이전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며, 담당 부처 또한 비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이전 대상기관으로 편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재 이전공공기관 사후 관리 방안에 관한 법령이 아닌 이전공공기관 계획에 관한 법령을 중심(혁특법)으로 이전공공기관의 사후 관리(수도권 잔류 인력, 시설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행 법체계에는 이전 완료 공공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절차 및 항목을 규정한 내용이 부재하여, 그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수립)의 절차와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항목을 준용하여 이전 완료 공공기관을 관리하였다. 제1차 지방이전계획이 2019년에 완료되었고 사후 관리 단계인 이전공공기관을 지방이전계획 법령으로 관리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전 완료 공공기관의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추후 추진될 예정이므로, 이전 완료 공공기관과 추후 이전할 공공기관 간 법령상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

85) 제25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은 제외한다)을 설립하거나 신규로 인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입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86)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령
제25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공공기관 중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1. 중앙행정기관
2. 수도권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기관
3.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및 수도권 안의 폐기물 매립지에 있는 기관
4. 수도권에 있는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 지역문화복지시설, 의료시설 등으로서 수도권 주민의 문화생활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기관
5. 수도권에 있는 문화유적지, 묘지, 매립지, 남북한 간 출입장소, 방송시설, 철도역, 공항 및 그 관련 시설 등을 관리하는 기관
6. 구성원 간의 상호부조, 복리 증진, 권익 향상 또는 업무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Ⅳ 결론 및 시사점

1 이전 지역·이전공공기관 현황 및 시사점

가. 공공기관 이전 지역 주요 현황 추이 분석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목적은 혁신도시 조성 및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발전하여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이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조에 해당 목적이 명시되어 있다.[87] 이에 따라 이전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사회 및 지역균형발전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지역 내 주요 성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제2차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2023~2027)」을 수립하면서, 제1차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목표와 그에 따른 성과를 평가하였다. 입주 기업수는 1,000개사 입주 목표 중 2022년 2,963개사, 2024년 4,813개사가 입주해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다. 이전공공기관 임직원수는 42,220명 목표치 중 2025년 47,908명이 이주하였으며, 고용도 20,000명 목표 중 2022년 21,441명을 고용하였고, 지역인재 채용률도 38.3%로 법정 목표치인 30%를 초과 달성하였다.

반면, 일부 지표들은 이행률을 미달하였다. 미혼 독신자를 포함한 가족동반 이주율은 75% 목표치 중 2025년 71%으로 목표치에 미달하였으며, 정주환경만족도는 70점 목표에 2025년 69.4점, 주민등록인구는 전입인원 267,869명 목표치 중 2025년 234,684명, 공동주택 공급 목표치 92,599호 중 86,927호로 목표치를 미달하였다. 산학연 클러스터[88] 분양률은 2025년 12월 기준 계획 대비 분양률이 81.8%[89]이며 분양 면적 대비 입주율은 56.6%로 추가 입주가 필요한 상황이다.

87)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을 수용하는 혁신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해당 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88) 혁신클러스터 용지 = 이전대상 공공기관 용지 +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89) 이전공공기관 부지 포함

공공기관이 이전한 혁신도시의 인구 증가율을 전국 단위 인구증가율과 비교해 보면, 혁신도시 10개 중 6개는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이다. 혁신도시가 이전한 자치구별 인구 동향을 보면 부산(영도구, 남구, 해운대구), 대구 동구, 울산 중구, 전북 전주시, 완주군, 경북 김천시, 경남 진주시는 공공기관 대부분이 이전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인구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인구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만 전남 나주시와 강원 원주시, 충북 진천군의 경우 꾸준한 인구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이전한 혁신도시 지역 시군구별 지역내총생산(GRDP)은 2015~2022년까지 대부분 증가추세를 보였다. 다만 전국 단위 GRDP 증가율[90](2015년 대비 2022년 33.5%, 2020년 대비 2022년 12.9%)과 비교하였을 때 일부 지자체의 경우 증감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2015년 대비 2022년 GRDP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지자체는 원주시(30.4%), 전주시(28.8%), 완주군(19.5%)이며, 2020년 대비 2022년 GRDP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지자체는 대구 동구(2.1%), 원주시(12.3%), 전주시(4.8%), 완주군(12.6%), 진주시(10.8%), 제주 서귀포시(11.4%)이다. 이 중 대구 동구와 전주시, 완주군, 경남 진주시의 경우는 인구 감소 추세와 상대적으로 낮은 GRDP 상승률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전한 광역지자체에 이전한 기관이 납부한 지방세 비중은 광역지자체 13개[91]의 지방세 합계액은 2016년 32.5조원에서 2024년 50조원 규모로 17.5조원 증가하였다. 반면 이전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 비중은 2016년 0.82%에서 2024년 0.58%로 0.24%p 감소하였다.

대구(2016년 0.6%→2024년 0.38%, △0.22%p), 광주·전남(2016년 1.63%→2024년 1.27%, △0.36%p), 울산(2016년 0.46%→2024년 0.24%, △0.22%p), 경북(2016년 4.04%→2024년 2.02%, △2.02%p), 경남(2016년 0.64%→2024년 0.32%, △0.32%p), 충남(2016년 1.49%→2024년 0.42%, △1.07%p)은 2016년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또한 혁신도시 중 대구 동구와 경남 진주시의 경우는 인구 감소 추세와 상대적으로 낮은 GRDP 상승

90) 명목지표임

91) 부산, 대구, 광주, 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세종, 충남이며, 광주와 전남은 합산한 금액임

률 추세와 더불어 지역 내 이전공공기관이 납입한 지방세 비중 또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혁신도시 인구 및 GRDP 상승, 지역 내 지방세 납입액 비중 추이(이전공공기관)]

구분		기간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구	혁신도시 인구감소 여부	2015년 대비 2024년, 2019년 대비 2024년	부산(영도구, 남구, 해운대구), **대구 동구,** 울산 중구, 전북 전주시, 완주군, 경북 김천시, **경남 진주시**
GRDP	혁신도시 GRDP 상승 추이	2015년 대비 2022년, 2020년 대비 2022년	**대구 동구**, 강원 원주, 전북 전주시·완주군, **경남 진주시**, 제주 서귀포
지방세	이전공공기관 지방세 납입액 비중 감소 여부	2016년 대비 2024년	**대구,** 광주 전남**,** 울산, 경북, **경남,** 충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이전공공기관 주요 현황 분석

(1) 공공기관 이전 목표 이행률

2005년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작된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당초 2012년까지 107개 기관[92]이 기능군별로 집단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이전이 지연되어 2019년 이전 완료하였다. 이전계획이 평균 2.6회 변경되는 과정에서 평균 28.6개월의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총 6,456억원의 이전비용(기관당 평균 61.5억원)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이 지연된 주요 사유를 살펴보면 ① 빈번한 계획변경 ② 관련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한 사업 연기 ③정부 재정지원 및 종전부동산 매각지연으로 인한 예산 미확보 ④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주체 간 협의 지연 등에 기인한다. 이 중 종전부동산

92)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통폐합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되었으며, 재외동포재단 법인이 청산되어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여 107개 기관이 105개로 축소됨

이 매각되지 않은 사유는 용도제한으로 인한 매각 불가[93], 연기금 자산 편입, 국유재산으로 기부채납 등의 사유 등이다. 기관이전에 따른 지방세수 증가, 고용기회 확대 증대 등을 고려하면 향후 지방이전계획 수립 시 계획 수립에 맞춰 조속한 기관 이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주가 지연될수록 건설공사비 증가로 인한 총 사업비가 증가되어 기관 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이전 계획을 신속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

(2) 이전공공기관 이주 현황 분석

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이전대상 직원수를 포함한 이전의 규모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있다. 각 기관별 제출 자료에 따르면 전체 계획 인원 41,271명 중 본사에 근무하는 현원은 48,934명(117.2%)으로 당초 계획 대비 초과하였다. 다만 미혼독신을 포함한 가족동반이주의 경우 소관 기관 포함 이전 인원 기준 전체 71%, 부산 86%, 제주 83.2%, 전북 77.6%, 광주·전남 76.1%, 대구 75.7%, 울산 73.3%, 강원 71.8%, 경남 70.2%, 충북 50.5%, 경북 51.3%으로 5개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동반이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전체 105개 기관 중 기관장이 미이주한 기관은 53개 기관이다. 이 중 현재 기관장이 공석인 7개 기관을 제외하고 46개 기관의 기관장이 이주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94] 미이전 사유는 임기 3년으로 한시직이어서 현실적으로 거주지 이주에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단신 부임해 관사에 거주하는 경우는 가족 구성원 직장 등 가족 생활권 유지를 위해 단독 부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수도권행 셔틀버스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60개 기관이 수도권행 셔틀버스를 운영하거나 운영한 적이 있으며 이전 기관 중 강원도 혁신도시로 이주한 9개 기관 중 8개 기관이 셔틀을 운영하고 있으며, 충북은 이전공공기관 8개 기관이 합동으로 셔틀을 운영하고 있다. 광주 전남은 13개 기관 중 12개 기관이 이용하고 있다. 전체 지방

93) 한국교육개발원의 경우 매각 부지 일부가 토지규제대상지역(개발제한, 도시계획시설, 토지거허가구역, 비오톱1등급)으로 지정되어 매각 공고 후 42차례 유찰

94) 한국남동발전(주)는 직무 대행이 진주로 이주

이전공공기관 중 수도권행 셔틀버스를 운영하거나 운영한 적 있는 60개 공공기관의 셔틀버스 예산액 총액은 2010~2025년 누적액이 1,989.9억원이며, 그 중 경남 356.4억원, 광주 전남 344.6억원, 강원 286.6억원 순으로 예산 투입액이 많았다. 지역별로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평균 예산액이 높은 지역은 세종(기관당 97.4억원)[95], 경북(기관당 88.6억원), 경남(기관당 39.6억원), 강원(기관당 35.8억원) 순이며 충청북도의 경우 이전한 모든 기관이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3) 「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상 사업 관리 필요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은 이전공공기관 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산업육성, 지역인재채용, 지역인재육성, 지역주민지원, 유관기관협력, 지역생산물품 우선 구매 실적을 점검하고 있으며 세부 관리계획별 차질 없이 사업비 집행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관별 수요 예측 및 세부적인 사업관리가 필요하다.

① 지역산업 육성 사업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등 필요

지역산업 육성의 경우 사업비 집행률은 2024년 80.7%로 낮으며 지역별로 2023년 광주·전남(74.8%) 울산(70.5%), 강원(87.0%), 충북(94.4%) 경북(98.1%)이 사업비를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하였으며, 2024년엔 광주·전남(22.5%) 울산(88.9%), 강원(10.4%), 경남(89.3%)이 계획 대비 집행률이 저조하였으며, 기관별로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전KDN(주) 등 9개 기관이 2년 연속 지역산업 육성 사업비 집행 미달 기관이며, 사업비 집행 주요 미달사유는 ① 착공 연기 ② 투자시기 조정 ③ 예비타당성 심사 수행 ④사업계획 변경·낙찰차액 발생 ⑤ 경영상 이유로 예산 집행 조정 ⑥ 지역업체 참여저조 및 미선정 등이다. 일부 기관의 경우 역량 있는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역산업 육성 수요 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95) 세종의 경우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일부 연구원이 수도권발 셔틀버스를 함께 이용하였음

② 지역인재 육성 사업 참여 활성화 등 필요

지역인재육성 사업의 경우 사업비 집행률은 2023년 24.4%로 낮으며, 지역별로는 2023년 부산(92.3%), 대구(70.6%), 광주·전남(88.3%), 강원(36.5%), 충북(97.5%), 전북(89.4%), 경북(88.7%), 경남(90.7%)이 사업비를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하였으며, 2024년엔 대구(96.2%), 광주·전남(91.2%), 경북(84.7%), 경남(97.4%), 제주(66.9%)이 계획 대비 집행률이 저조하였다. 또한 한국전력공사, 국립공원공단, 한국가스공사, 주택관리공단 등 16개 기관은 2년 연속 지역인재육성 사업비 집행 미달 기관이며 지역인재육성 주요 사업비 집행 미달 사유는 ① 모집 정원 대비 선발 인원 미달 ② 청년인턴 등 중도 퇴사 ③ 계획 변경 ④ 예산 확보 어려움으로 미실시 ⑤ 채용규모 감소에 따른 사업비 감소 등이다. 특히 지역인재육성 사업의 경우 모집 정원 대비 선발인원 미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인재 참여를 좀 더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③ 지역주민 지원 사업 일정 관리 등 필요

지역주민 지원 사업의 경우 사업비 집행률은 2023년 87.4%, 2024년 69.9%로 낮으며, 지역별로는 2023년 대구(84.8%), 광주·전남(33.2%) 강원(79.0%), 충북(14.4%) 전북(57.1%), 경남(42.6%)이 사업비를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하였으며, 2024년엔 광주·전남(80.7%) 경남(28.4%), 제주(96.0%)가 계획 대비 집행률이 저조하였다. 또한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96] 등 16개 기관은 2년 연속 지역주민 지원 사업비 집행 미달 기관이며, 주요 사업비 집행 미달 사유는 ① 사업축소·계획 지연 및 변경으로 인한 경비 감소 ② 경영 위기·수익 감소에 따른 예산 감소 ③ 수요 감소 ④ 타 사업으로 대체 등이다. 일부 기관의 경우 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과정 등을 고려하여 사업이 적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96)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역주민을 위한 SOC시설을 지원하였으며, 사업특성상 관계기관 의견수렴, 설계용역·공사 발주 등 행정절차로 인한 사업일정 지연으로 사업비 집행이 순연됨

④ 유관기관 협력 사업 참여 활성화 등 필요

유관기관 협력 사업비 집행률[97]이 낮은 지역은 연도별 지역별 편차가 큰데, 2023년 부산(51.4%), 광주·전남(11.2%) 울산(48.4%), 강원(92.0%), 충북(97.7%) 경남(72.6%), 제주(12.3%)이 사업비를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하였으며, 2024년엔 부산(94.8%), 대구(77.0%), 울산(98.8%), 강원(38.3%), 충북(97.2%) 등이 계획 대비 집행률이 저조하였다. 또한 국립공원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등 7개 기관은 2년 연속 유관기관 협력 사업비 집행 미달 기관이며, 주요 사업비 집행 미달 사유는 ① 수요 예측 실패 ② 지원자 감소 ③ 사업 재분류 및 지원 대상 축소 ④ 과제 부적정 판정으로 예산 미집행 ⑤ 예산 부족 및 사업 미추진 등이다. 이 중 일부 기관의 경우 지원자 감소, 수요예측 실패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사업 관리 및 참여를 좀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⑤ 지역생산물품 우선구매 사업 물품 구매 어려움 해소 등 필요

지역생산물품 우선구매 사업비 집행률은 2023년 91.9%, 2024년 95.7%로 사업비 집행을 미달하였으며, 지역별로 2023년 부산(95.6%), 경북(90.5%), 충북(84.4%), 광주·전남(76.0%)이 사업비를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하였으며, 2024년엔 광주·전남(80.4%) 전북(83.8%), 경남(72.8%), 제주(69.6%)가 계획 대비 집행률이 저조하였다. 또한 한국전력공사,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등 24개 기관은 2년 연속 지역생산물품 우선구매'사업비 집행 미달 기관이다. 이 중 한국전력공사는 지역생산물품구매액수가 타 기관에 비해 높으며, 2023~2024년도 한전의 장기적 재정악화 지속에 따른 예산 긴축 운영으로 나주 에너지밸리 입주기업 배정물량 감소 등으로 구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주요 사업비 집행 미달 사유는 ① 예산 및 수요 감소 ② 지역구매물품 조달의 어려움(기관 특성상 용역 중심 입찰 방식 활용, 경쟁입찰, 한정적인 물품 리스트, 적확한 물품 부재 등) ③ 업무 특수성으로 인해 지역 기술 보유 업체 풀 확보의 어려움 ④ 도전적 목표 설정 ⑤ 지역적 특성(제주도, 충북 오송 등) 상 지역물품 구매의 어려움 등이며 이 중 기관 다수가 언급한 지역구매물품 조달이 어려운 측면은 지역

97) 전체 사업비 집행률은 달성함

구매물품의 범위 확대(지역 범위의 확대, 품목 확대) 등을 통해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이전공공기관 지방세 납부 현황

공공기관 지방 이전 이후, 이전공공기관이 수도권 지역에 납부하던 지방세수 수입이 지방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전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 누적 현황(2016~2024)은 총 2조 5,072억원이다. 부산, 광주·전남, 강원, 충북, 전북, 제주, 세종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액은 2016년 대비 2024년 증가하여 이전공공기관이 지역에 납입하는 지방세액이 증가하였다. 반면, 대구, 경북, 울산, 경남, 충남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액은 2016년 대비 2024년 감소하여 이전공공기관이 지역에 납입하는 지방세액이 감소하였다.

2 향후 개선과제

가. 이전 단계 고려 사항

(1) 종전부동산 매각 관련 고려 사항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과정에서 종전부동산 매각 지연, 국비 지원 지연 등으로 신규 청사 건립비 및 이주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이전비용을 차입한 기관은 16개이며 차입금 4,735억원에 대한 이자 비용은 343억원 발생하였다. 이 중 한국교육개발원은 현재 종전부동산이 미매각되었으며 총 151억원의 이자비용이 발생하였으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68억원의 이자비용이 발생하였다. 종전부동산 미매각 시 차입금과 출연금 등을 통해 이전비용을 마련해야 하며 특히 차입금의 경우 이자비용이 발생하므로, 지방이전계획 수립 시 기관의 종전부동산 매각이 지연되지 않도록 계획 단계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비용 관련, 총 이전비용 9조 1,549억원 중 종전부동산 매각액(평가액)은 총 16조 8,641억원[98]으로 지방이전의 주요 재원으로 종전부동산 매각분이 주로 활용되었다. 또한 발전공기업 및 연기금 등과 같이 사업 여건이 양호한 기관의 경우 자체보유재원으로 이전비용을 충당하였다. 반면, 자체재원 없이 종전부동산 매각을 통해 이전비용을 확보해야 하는 기관은 종전부동산이 미매각되어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한국자산관리공사[99]가 이전공공기관으로부터 종전부동산을 매입하고,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는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해당 위탁 건수는 7건[100]에 불과하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이전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매각 활용 실적은 없다는 점에서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았고 이전공공기관이 위탁 없이 직접 종전부동산을 매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체재원이 미비한 기관 중 종전부동산 매각이 지연되고 있는 기관에 한해 매각 위탁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

98) 한국전력공사 삼성동 부지 10조 5,500억원 포함 및 미매각 종전부동산 포함

99) 국토교통부 장관의 매입 요청이 전제되어야 함

100) 국토부 장관의 매입요청에 따라 '11.11월부터 총 7건의 종전부동산을 매입하여, 현재 6건 매각 및 정산 완료, 고양시 덕은동 소재 국방대학교 종전부동산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인허가 진행 중

하면 이전비용확보가 용이해져 사업진행속도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확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101]

[한국자산관리공사 이전공공기관 종전부동산 매입 후 매각 위탁 업무 수행 현황]

(2025.12월말 기준, 단위: 억원)

구분	대상물건	소재지	부지면적(㎡)	매입금액	매각금액	매입일	매각일
현상 매각 (4건)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안양시	6,612	234	280	'11.11	'15.11
	농림축산 검역본부	안양시	6,078	216	251	'11.11	'16.09
	국립종자원	안양시	5,424	190	221	'11.11	'15.11
	국세청주류 면허지원센터	마포구	1,799	117	182	'12.09	'16.01
도시관리 계획반영후 매각 (2건)	우정사업 정보센터	광진구	29,026	1,673	2,558	'11.11	'20.06
	농식품공무원 교육원	수원시	40,396	612	693	'11.11	'21.11
소 계				3,042	4,185		
개발후 매각(1건)	국방대학교	고양시	296,507	3,652	-	'13.08	-
총 계				6,694	4,185		

주: 해당기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이 아님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이 외에도 종전부동산 매각의 경우 제1차 지방이전기관의 사례를 참고하여, 매각이 지연될 시, 다양한 방식의 재원마련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기부채납 후 국비 지원, 연기금 자산 편입, 일시적 차입금 활용 등).

101) 연기금의 경우 공단 등이 보유한 종전부동산(본사)을 연기금 자산으로 편입하여 임대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음

(2) 임대차 계약 정리 문제

공공기관 중 수도권에 본사를 임차한 기관 중 최근 장기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기관의 경우, 계약 만료 시기까지 지방 이전이 어려울 수도 있으며, 계약 종료를 위해 위약금을 제시해야 할 수도 있다.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 중 수도권에 본사를 장기간 임차한 기관은 다음과 같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광진구 보건행정타운에 본사를 임차하고 있으며, 해당 건물은 보건복지부(위탁개발 및 관리 한국자산관리공사[102]) 소유로 계약만료연도는 2051년으로 장기간 임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예금보험공사는 자회사인 민간법인 KR&C[103]와 2035년까지 장기 계약을 2025년에 체결하였으며,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는 여의도 IFC와 2034년까지 장기 계약을 2025년에 체결하였다. 이 외에도 본사 임차 기관 중 민간 부문과 장기 계약을 체결한 기관은 이전대상공공기관으로 선정될 시 임대차 계약 정리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2030년 이후 공공기관 본사 임차계약 만료 기관]

(단위: 억원, 년)

기관명 (건물주)	기관유형	연 임대료 (2025 기준)	최근 재계약 시점	계약 만료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건물 보건복지부 소유)	기타공공기관	8.75(부가세별도)	2025.12	2051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건물 보건복지부 소유)	기타공공기관	12.8(부가세별도)	2025.12	2051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건물 보건복지부 소유)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45.9(부가세별도)	2025.12	2051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건물 보건복지부 소유)	위탁집형형 기타공공기관	12.0(26년 기준) (부가세별도)	2026.1	2051
세종학당재단 (아리랑tv 국제방송 건물)	기타공공기관	5.23	2024.10	2036
예금보험공사 (KR&C)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47.1	2025.10	2035

102)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최근 재계약 시점 일자는 관리비 조정시점으로, 계약의 경우 최초계약 후 변동사항 없음

103) 예금자 보호 및 부실금융기관 정리를 목적으로 2009년 11월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로 설립, 요 업무는 부실금융기관의 영업 또는 계약의 양수, 예금 등 채권의 지급, 대출 등 채권의 회수 정리, 예금보험공사 등으로 부터 위임받은 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임

(단위: 억원, 년)

기관명 (건물주)	기관유형	연 임대료 (2025 기준)	최근 재계약 시점	계약 만료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민간, IFC)	기타공공기관	15.1 (26년 기준)	2025.4	2034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민간, NH농협)	기타공공기관	3.28	2023.2	2033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민간,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기타공공기관	5.6 (26년 기준)	2025.3	2032
한국재정정보원 (민간, 이지스자산운용)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61.9	2024.7	2031
시청자미디어재단 (민간, KC소프트)	기타공공기관	7.83	2025.7	2031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가부 소속, 민간, 펀드)	기타공공기관	16.75	2025.12	2030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민간, T타워(T Tower))	기타공공기관	23	2025.6	2030
(재)우체국시설관리단 (국가, 우정사업본부)	기타공공기관	3.02	2025.11	2030

자료: 각 기관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제1차 이전공공기관의 경우 본사 건물을 수도권 잔류인원이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는 수도권 잔류인원 증가로 남용될 여지도 있는바, 국정과제로서 지방 이전의 취지에 저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공사 설립법에 본사를 수도권으로 명기한 공공기관 법령 개정 문제

기관 설립근거법상 본사 소재지가 수도권으로 명시된 공공기관의 경우 지방 이전을 위해 설립법을 개정해야 한다. 해당 기관을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에 편입시키기 위해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등은 설립법상 본점 혹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해야 한다.[104]

104) 금융위원회는 서울에 있으며 해당 기관들은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이거나 직·간접적으로 금융위원회와 연관되어 있지만,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 중 한국자산관리공사(부산), 한국예탁결제원(부산), 신용보증기금(대구)은 제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이전공공기관에 포함되어 이전하였던 사례도 존재함

[기관별 설립 근거법 본사 소재지 조항]

구분	관련 법령
한국산업은행 (기타공공기관)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본점 및 지점 등의 설치) ①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한국수출입은행 (기타공공기관)	「한국수출입은행법」 제3조(본점 · 지점 · 출장소 · 대리점) ① 수출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중소기업은행 (기타공공기관)	「중소기업은행법」 제4조(본점, 지점, 출장소, 대리점의 설치) ① 중소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예금보험공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예금자보호법」 제5조의2(사무소)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공공기관 사례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설립법상 본점 소재지를 정관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사회 의결을 통해 정관상 소재지를 변경하여 지방 이전을 수행하였으므로, 설립법 개정 시 참고할 만한 사례로 볼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설립 근거법 본사 소재지 조항]

구분	관련 법령
한국토지주택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정관」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공사의 주된 사무소는 경상남도에 두고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나. 사후 관리 단계 고려 사항

(1)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준수 및 사후관리 법령 개선 필요

이전공공기관 중 수도권 잔류인원·시설이 존재하는 기관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이전공공기관 계획을 수정 가능하며, 수도권 잔류인력 및 시설 등도 심의 과정을 거쳐 변경 가능하다. 이전공공기관의 수도권 잔류인원의 비중이 과도하게 높다면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잔류 인력 규모를 심의·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부 기관의 경우 심의 대기중인 미승인 잔류인력 규모가 커서 지방시대위원회의 신속한 심의가 필요하며, 이전공공기관의 경우 미승인 잔류인력에 관해 가능하다면 원칙대로 이전하고 가급적 지방시대위원회의 승인 이후 수도권에 잔류할 수 있도록 인력 관리방안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 법체계에는 이전 완료 공공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절차 및 항목을 규정한 내용이 부재하여, 그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수립)의 절차와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항목을 준용하여 이전 완료 공공기관을 관리하였다. 제1차 지방이전계획이 2019년에 완료되었고 사후 관리 단계인 이전공공기관을 지방이전계획 법령으로 관리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장기적으로 이전 완료 공공기관의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추후 추진될 예정이므로, 이전 완료 공공기관과 추후 이전할 공공기관 간 법령상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2) 신규지정기관 지방이전 대상기관 편입 검토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5조제5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로 인가하는 경우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 개정된 2023년 7월 이후 지정된 신규 공공기관 중 일부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지방이전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며, 담당 부처 또한 비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이전 대상기관으로 편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재직자 퇴사 및 신규채용에 따른 지방인재 비중 확대

공공기관 이전 전후 퇴사율은 기관 이전 전 2.66%에서 기관 이전 후 3.11%로 증가하여, 정원 증가 추이보다 퇴사자 증가 추이가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즉,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자발적 퇴사자 비율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시 퇴사자 비율을 관리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관 이전 전후로 퇴사율이 증가한 지역은 대구(1.98%→2.34%), 울산(3.44%→3.81%), 강원(3.68%→5.38%), 경남(2.61%→3.6%), 제주(2.87%→6.08%), 개별(1.46%→1.87%)이다.

퇴사의 주된 사유는 이직을 위해 다양한 직군·연령에서 복합적인 이유로 퇴사자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며, 퇴사 주요 사유는 기관 지방 이전,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 문제, 경력개발·이직, 무기계약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이직 증가,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명예퇴직자 증가, 고령층 명예퇴직, 광산 폐쇄로 인한 조직 규모 축소, 저연차 직원 이직 증가 등이다.

퇴사인력 충원을 위해 신규인력이 채용되며, 신규채용인재 중 30% 이상은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지방이전을 완료한 지역의 주요 공공기관의 채용 규모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568명(부산), 한국토지주택공사 2,232명(경남), 신용보증기금 1,090.5명(대구), 한국도로공사 1,765명(경북), 한국전력공사 7,494명(광주·전남), 국민연금공단 2,285명(전북), 한국가스안전공사 628명(충북) 등이며, 향후 지역인재채용[105] 비중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즉 정년퇴직 및 지방이전 등 다양한 사유로 퇴사한 이전공공기관 정원은 이전지역인재채용을 통해 충원되며, 이전지역인재 퇴사율 또한 주요 공공기관을 기준으로, 신규채용인재에 비해 낮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전공공기관의 수도권 인재가 지방인재로 지속적으로 대체됨을 알 수 있다. 반면, 지역 특정 대학의 채용 쏠림 현상과 같은 부(-)의 효과도 발생하므로 지역 대학 쏠림 완화 장치 도입 등을 통해 제도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

105) 지역인재채용 비중은 2018년 18%에서 2024년 30%까지 비중이 확대되었으며 채용된 지역인재 규모는 2018년에서 2024년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178명(부산), 한국토지주택공사 357명(경남), 신용보증기금 239.5명(대구), 한국도로공사 357명(경북), 한국전력공사 959명(광주·전남), 국민연금공단 326명(전북), 한국가스안전공사 174명(충북)임
현재, 지역인재채용 비중을 50%로 확대하기 위한 법안이 계류 중임

제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 성과와 시사점

발간일 2026년 4월 29일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지동하

편 집 예산분석실 공공기관평가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 · 2070 · 3114)

인쇄처 ㈜디자인여백플러스(tel 02 · 2672 · 1535)

내용에 관한 문의는 국회예산정책처 공공기관평가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tel 02 · 6788 · 3782)

ISBN 979-11-6799-247-5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26

국민을 지키는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 간 등 록 번 호
31-9700488-002221-01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